

인도의 식민지화와 독립 후 사회경제 구조변화*

박종수 · 김용환 · 백좌흡 · 이상진

인도에서 영국 지배의 파괴 작용은 자본에 의한 세계적 사회변혁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파괴적 작용의 거대한 파도를 정면에서 받은 인도 사회는 지역적으로 불균등한 경제발전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농업을 기본으로 하는 카스트 공동체적 규제가 강한 전통적 사회였다. 영국의 인도 정복은 이러한 인도 사회가 서서히 그 봉건적 겹데기를 벗어버릴 즈음 영국이 이를 세계 자본주의 틀 안으로 폭력적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인도 식민 지배는 영국이 중상주의 단계에서 산업자본주의 단계로 이행함에 대응해서 변화해 갔으며, 세포이 혁명 종식을 계기로 영령 인도의 외연적 확대를 일단락 짓고, 동인도회사 대신 영국 정부의 직접 통치에 의해 정치적 지배 체계를 완성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인도를 종전의 영국공업제품에 대한 시장으로서의 역할 외에 공업 원료, 식량의 공급지 역할을 난당하게 함으로써 보다 강도 높은 정치적, 경제적 예속을 바탕으로 한 전형적 식민지 인도 사회가 전개되어 갔다.

이 논문은 1700년대 중반 이후 영국의 식민정책의 전개 과정에 조응한 인도 경제 사회의 동태 분석 및 독립 후 1960년대까지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진 사회주의형 사회건설과정에서 야기된 사회경제 구조변화를 구명해내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선 동인도회사의 전개과정, 토지제도 개혁과 조세제도, 영국의 산업 혁명과 대외무역, 자본 수출과 철도 건설, 상업적 농업의 전개과정 및 양차 세계대전과 공업화 등을 중심으로 독립 이전까지의 사회경제 변동에 대해 알아본다. 아울러 1947년 독립 후 국가에 의한 계획적 공업화과정과 외국자본의 유입 및 독점 재벌의 경제력집중 현상을 중심으로 독립 후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를 추적해본다.

I. 들머리

인도에서 영국 지배의 파괴 작용은 자본에 의한 세계적 사회변혁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파괴적 작용의 거대한 파도를 정면에서 받은 인도 사회는 지역적으로 불균등한 경제발전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농업을 기본으로 하는 카스트 공동체적 규제가 강한 전통적 사회였다. 영국의 인도 정복은 이러한 인도 사회가 서서히 그 봉건적 겹데기를 벗어버릴 즈음 영국이 이를 세계 자본주의 틀 안으로 폭력적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영국의 인도식민지배는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것 이었으며 인도 사회를 그 토대로부터 붕괴시켜 나갔다. 그 지배 체계는 영국이 중상주의 단계에서 산업자본주의 단계로 이행함에 대응해서 변화해 갔으며, 1857년 대반란

* 이 글은 교육부의 지역연구 지원사업에 따른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된 것임.

(Mutiny) 진압 후 비로소 완성단계에 들어섰다. 즉 1857년 대반란을 계기로 영령 인도의 외연적 확대를 일단락 짓고, 동인도회사 대신 영국 정부의 직접 통치에 의해 정치적 지배체제를 완성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인도를 종전의 영국공업제품에 대한 시장으로서의 역할 외에 공업원료, 식량의 공급지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보다 강도 높은 정치적, 경제적 예속을 바탕으로 한 전형적인 식민지 인도 사회가 전개되었다.

인도 민중은 미처 해체되지 않은 전근대사회와 강제된 근대사회가 접합된 죄악의 착취 관계를 경험했다(芝原拓自, 1972:283-284). 그러나 영국의 지배는 전통적 사회를 격렬히 파괴, 변용시키고 또한 재편, 유지하는 한편 근대사회의 물질적 기초를 가져오는 부의식적인 도구로서 역사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같은 물질적 기초 위에 영국 지배의 충격이 가져다준 파괴적 사회변혁의 황폐 속에서 그 다음의 변혁, 즉 인도의 진실한 변혁을 노리는 중심 주체가 되는 프롤레타리아를 불가피하게 창출해 온 경제 사회가 형성되었다. 식민지 인도 경제에 관한 분석은 이와 같은 기본적 관점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칫 영국 자본에 종속되어 이것과 첨예한 모순 관계를 지니면서 형성된 인도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성숙되지 못하고 동시에 제국주의 비판이 결여됨으로써 야기되는 아시아적 정체 사관으로 빠질 우려가 있다(小谷汪之, 1979:11-22). 따라서 우리는 현대 인도에 접목되는 근현대 인도 경제사의 총과정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시각이 필요하다(近藤治, 1972:12-14).

인도 대륙에 대한 영국의 식민지 지배는 1765년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무굴 제국으로부터 동부벵갈 지방의 재정권을 박탈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영토적 지배를 시작한 이래 1947년 독립 때까지 거의 200년에 걸쳐 전개되었다. 그 지배 면적도 1935년 식민지 인도로부터 분리된 베마(현 미얀마)를 제외하고라도, 약 400만km²에 달했다. 물론 이같은 광대한 대륙이 일거에 식민지화된 것은 아니다. 인도 전역이 영국 지배하에 들어간 것은 19세기 중반이었다. 그후 인도 영토의 55%는 영국의 직접 지배를 받게 되었다. 나머지는 무굴제국령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영국의 식민지 정책이나, 식민지에 대한 영향도 그 시기나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식민지 인도 경제의 전개과정은 영국에 의한 자본주의의 발전의 단계인, 소위 상업자본주의단계, 산업자본주의 단계, 금융자본주의 단계에 조응하는 대외적 식민지정책의 전개에 의해 주도된 과행적 발전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제 2차 대전 이후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구조에도 위기가 닥쳐오고 인도 민중들의 독립투쟁 열기가 고조되어 감에 따라 영국 제국주의도 서서히 통제력을 상실해 갔다. 또한 인도의 민족해방투쟁이 사회주의적 색채를 띠어 감에 따라 그 대책 마련에 부심 하던 영국은 1947년 8월 15일을 기한 인도와 파키스탄 분리 독립을 통해 식민주의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 인도는 정치적 독립을 획득함으로써 외형상 영국 제국주의의 지배로부터는 탈피하였으나 사회 경제의 식민지적 성격은 그대로 온존되고 있었다. 당시 인도 경제의 성격은 첫째, 극히 낮은 수준의 공업 발전과 공업 구조의 과행성, 둘째, 국내 독점 재벌의 성장과 외국자본의 지배, 세째, 농업부문에서 생산성 정체로 요약된다.

이러한 배경과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우리의 연구는 1700년대 중반 이후 1960년대까

지의 영국의 식민정책의 전개과정에 조응한 인도 경제 사회의 동태 분석 및 독립후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진 '사회주의형 사회' 건설과정에서 야기된 사회경제 구조변화를 구명해내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리에 이어 Ⅱ장에서는 영국 동인도회사의 전개과정, 토지제도 개혁과 조세제도, 영국의 산업혁명과 대외부역, 자본 수출과 철도 건설, 상업적 농업의 전개과정 등을 중심으로 인도의 식민지화 과정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 변화를 추적해 본다. Ⅲ장에서는 양자세계대전의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발전한 공장제공업의 상황을 살펴보고 영국의 경영대리제도에 의한 인도 기업의 통제 및 외국자본의 진출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Ⅳ장에서는 독립 직후의 사회경제 상황을 간략히 개관한 후 국민회의과 정권의 경제정책노선과 산업 정책에 대해 정리해 본다. 아울러 1951년부터 1966년까지 세차례에 걸쳐서 추진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정책수행 과정에서 야기된 정치 경제적 모순들을 밝혀 낸다. 이어서 Ⅴ장에서는 대규모의 원조와 외국자본의 유입 및 재벌의 경제력 집중 현상을 중심으로 독립 후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를 추적해본 후 Ⅵ장에서 마무리하기로 한다.

II. 인도의 식민지화와 사회 경제 변동

1. 동인도회사

영국의 인도 진출은 1600년에 엘리자베드여왕의 칙허장을 얻은 동인도회사가 1612년에 서해안 수라트에 최초의 상관(商館)을 개설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후 1858년, '대반란'이 진압되면서 명실공히 인도의 무굴제국이 정복되고 인도가 영국 국왕의 통치 하에 놓이기까지의 시기를 일반적으로 '동인도회사 시대'라 부른다. 즉 이 시기는 단순한 상업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진출한 동인도회사가 1757년의 프랑시전투 승리를 계기로 식민지 확대라는 목표로 크게 전환해가는 동시에 다음에 오는 제국주의 시대의 기반을 확립한 시기였다.

영국의 지배가 인도 사회에 던진 충격은 3세기 동안 일정 불변한 하나의 동기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1750년부터 1850년 사이에 걸쳐 나타났다. 18세기 중엽까지 영국인은 동인도회사를 중심으로 상업과 약탈에 종사했으며 직접 지배 지역은 인도의 일부 지역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세기 중엽에 이르면 인도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며 관료제를 도입하여 국정을 통제하게 된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영국인이 인도에 왔던 동기는 보험심, 상업 활동, 약탈행위 등에 국가적 이유까지 뒤섞여 있었다. 이것은 또한 중세 기독교 문명의 타락과 새로운 운문명의 도래로 인해 전 유럽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에너지의 폭발에 의한 것이었다. 영국인은 인도에서 상당한 부를 얻을 수 있었지만 얼마 안 가서 근거지의 필요성이 명백해졌다. 즉 향료나 염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사모으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가격이 하락

할 때를 기다려 구입하고 이를 다음 배가 올 때까지 모아 두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항구와 하물적 치장 등이 마련되었으며 영국인은 농촌 지역으로 깊이 들어가 인디고(indigo), 아편, 황마(jute) 등의 가격을 마음대로 조종하며 사모았다. 그러나 토착지배세력의 태도는 예측하기 힘들만큼 변덕스러웠으므로 실질적인 정치권력까지 장악하고 싶은 욕구를 느꼈던 것이며, 또한 인도 현지에서 경쟁 상대가 되었던 프랑스나 포르투갈 등의 다른 유럽 국가들을 인도로부터 추방하려는 의도도 매우 강했던 것이다.

사실 인도에 처음 침입한 첫번째 유럽국가는 1498년 바스코다가마가 이끄는 포르투갈이었다. 포르투갈인은 인도내에서 최초로 식민지 정복과 약탈을 자행한 민족이다. 1510년 포르투갈인은 인도 서해의 고아지방을 점령하고 약탈해갔으며 그 지방의 원주민이 거의 멸절되다시피했다. 그러나 포르투갈인이 인도내의 많은 영토를 지배한 것은 아니었으며 다만 고아(Goa)지방과 다만-디우(Daman and Diu)지역을 1961년까지 지배했을 뿐이었다. 또한 이들은 외국무역 분야에만 관여하면서 17세기 초엽까지 인도의 생산물에 대한 독점부역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 이들이 가졌던 인도경제 전체에 대한 영향력은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약한 것이었으며 정치적 영향력도 매우 낮았다.

네덜란드와 영국의 무역권이 확장되는 17세기에는 프랑스도 이를 세력에 동참함에 따라 그 영향력은 눈에 띄게 약화되어 갔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상인이 인도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초엽의 일이었다. 17세기 중엽에 네덜란드는 쿨롬보를 장악하고 말라바르(Malabar)해협의 몇몇 영토를 차지했으며 18세기 초엽엔 실론섬을 수중에 넣었다. 인도 생산물에 대한 포르투갈의 독점권 행사는 끝나고 그대신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시장을 놓고 극한 대립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1757년 프랑시 전투를 계기로 영국의 인도통제권이 서서히 구체화 되기 시작했다.

영국이 인도시장에서 프랑스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데는 그후로도 몇년이 더 소요되었다. 프랑스의 7년전쟁 패배는 북아메리카와 인도에서 식민지 통치권 상실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도를 둘러싼 식민지 생활전은 19세기까지도 이어졌다. 사실 영국이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으로부터 카모린 곳에 이르는 인도의 전영토를 지배하게 된 것은 1848년 편집의 통치권이 확립된 이후에서야 가능했던 것이다. 당시 인도에 대한 식민지정책 시행권은 동인도회사에 집중되었다.

사실 초기 동인도회사의 목적은 인도 생산물의 교역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하고 이 독점으로부터의 이익을 누리는 데 있었다. 그래서 당시 동인도회사는 인도의 상품을 사서, 그것을 해외에 내다 파는 무역만을 담당했다. 동인도 회사는 인도 상품에 대한 대가로 금이나 은을 지급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관행은 오래가지 못했다.

동인도 회사는 서서히 ‘인도 상품 교역’에서 ‘인도 영토의 점령과 약탈’로 그 주임무를 전환했다. 당시 인도에 대한 수탈은 주로 군사상, 무역상의 약탈로 요약된다. 정복자들은 인도의 성채를 약탈하고 사원과 도시 전체를 황폐화시켰다.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인도의 금도 영국의 상인계급과 귀족의 손으로 훌러가 버렸다. 특히 프랑시 전투 이후 동인도회사는 벵갈의 통치권을 장악하고 족장(Nawab)을 허수아비로 세웠다. “당시 나

왕의 재산은 동인도회사의 조치에 의해 쉽게 징발되기 일쑤였다. 한편 동인도회사의 직원들은 회사의 비호 아래 면세로 무역을 했으며 원가 이하로 물건을 사들여 비싸게 판매함으로써 부당이익을 착복했다"(Panikkar, 1954:195).

또 동인도회사는 지방의 민중을 수탈하는 방법으로 고리대 방법을 많이 사용했다. 여기서 이들은 인도의 상인과 고리대업자를 이용했다. 많은 수공업자들은 동인도회사에 종속된 노동자로 전락하고, 그들의 노동 생산물은 지방 상인을 통해 회사의 잉여로 축적되었다. 수공업자들은 오로지 회사만을 위해 일할 것을 서약하고 시장에 독자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같은 강제노동은 너무나 가혹하여 어떤 노동자는 그들의 "손가락을 잘라냄으로써" 처절한 노역으로부터 벗어나려 했을 정도였다(Dutt, 1990:19).

정복된 영토 내에서 토지도 주된 수탈 대상이 되었다. 동인도 회사의 직원들은 양여 받은 토지를 팔거나 빌려줌으로써 수입을 획득하였다. 이 경우 대부분의 새로운 토지 구매자는 투기자나 고리대금업자였으므로 그들 역시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대중을 착취해 나갔다. 이에 따라 민중들의 삶은 극도로 피폐해지고 아사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당시 동인도 회사의 추정에 따르면, 1770년초 기아로 사망한 뱅갈주민은 1,000만에 달했다(Dutt, 1990:31).

동인도회사는 식량의 독점배분권을 가짐으로써 이같은 기근을 그들의 치부 수단으로 이용했다. 인도의 생산력은 파괴되었으며, 농촌은 피폐되었고 전통적인 경제 제도는 붕괴되고 상품-화폐관계의 발전도 지체되었다. 어떤 발전의 쪽도 즉시 말라버렸다. 인도 민중의 고대 문화도 서서히 말살되어 가고 찬란했던 인도의 예술도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요컨대 봉건적 사회구성체의 태내에서 그 인도적 특수성에 의한 제약을 받으면서 새로운 발전의 맹아를 준비하고 있던 인도 경제는 영국의 침입에 의해 그 발전과정이 억압되고 중단되었으며 세계 자본주의 경제를 구성하는 식민지형 사회로 변질되었다. 프랑시전투 이후 8년이 지난 1765년, 영국은 뱅갈, 비하르, 오르사 지방의 징세, 재정권을 획득하고 실질적 식민 통치권을 차지하게 된다. 영국은 이것에 의해, 동인도회사의 무역독점권을 활용하고, 수공업제품이나 농·광산물등 1차 산품의 무역과 약탈, 지세 수취에 의해 막대한 이윤을 취득했다. 이렇게 경제, 사회의 자연적 발전의 길을 저해받은 인도는 영국 산업자본의 위력에 의해 그 사회의 토대가 급격히 무너졌으며, 그 결과 "옛 세계를 잊었지만, 새로운 세계를 찾지 못한"결과를 초래했다. 인도는 역사적, 인위적인 상대적 후진성 속으로 몰락했으며 그 후진성은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위해 온존되었다. 반면 인도에 대한 식민지적 약탈은 유럽 제국에서 자본의 원시적 축적에 가장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인도로부터 앗아간 거대한 부는 유럽 특히 영국 자본주의의 발전의 엔진으로서 기능했던 것이다.

2. 토지제도 개혁

인도에서 영국 관료제의 정착에 따라 상호 연관된 세 가지의 결과가 나타났다. 그것

은 첫째, 토지제도 개혁과 조세제도 확립을 통한 농업의 상업화(*commercialization of agriculture*), 둘째, 농촌 수공업의 붕괴, 세째, 영국의 지배를 벗어나려는 최초의 대규모 투쟁인 1857년 대반란(Mutiny)이다. 이 세 가지는 근대 인도의 기본 골격을 이루어 놓았다.

18세기말이 되면 식민지 인도의 영국인 관리들 간에는 대체로 재빨리 한 밤천 짊아 본국에 돌아가려는 생각은 사라진다. 또한 얼마 안 가 인도도 ‘제 2의 영국’이 될 것이며 영국 상품의 거대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타났다. 무조건 쥐어짜 기만 하는 정책은 서서히 지양되기 시작했다. 그들이 계속 인도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머무를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했으며 이 근거가 바로 토지제도의 개혁을 통한 조세 징수였다(Moore, 1987:343-44).

18세기말부터 19세기 전반에 걸쳐 영국 동인도회사는 인도에서 자민다리제, 라이아트 와리제, 마할와리제라고 하는 토지제도를 제정, 실시했다. 이러한 토지제도 개혁을 기점으로 하는 사회변동과정에서 근대 인도를 규정하는 사회구성의 틀이 형성되어 갔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점은 ‘인도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 과정에서 토지제도가 차지하는 위치’이다. 토지제도 및 조세제도의 개혁은 인도 농촌 사회 변화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냄과 절서 및 토지 소유권이 강화되었고 그것은 기생 지주(parasitic landlord)의 문제를 크게 부각시켰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토지 및 조세 제도가 정착됨으로써 영국인과 토착 지주 및 고리대금업자가 농민의 경제적 잉여를 수탈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제도가 확립되었다는 점이다.

(1) 자민다리제도

최초의 새로운 토지제도이자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토지제도는 1793년 뱅갈에서 실시된 영구 세틀먼트(permanent settlement)인 자민다리제도(zamindari system)이다. 영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제도는 조세 수입을 안정된 수준으로 확보하려는 시도였으며, 동시에 거의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복잡했던 과거 무굴 시대의 토착 조세 제도를 그대로 운영하는 고역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였다. 그리고 이 제도는 당시 영국 농촌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진취적인 지주상을 인도 사회에 이식하려는 노력이기도 했다.

당시 인도에서는 지배자와 농민 간의 중개자인 토착 정세관리, 즉 자민다르를 이용한 무굴의 토지 행정 제도가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무굴 체제가 제대로 가동될 때에는 자민다르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재산가가 아니었다. 무굴 제국이 점차 통치력을 약하게 되면서 자민다르는 20세기 중국의 군벌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다. 자민다르는 영국 치하에서 안정의 약속인 재산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는 동시에 정세 청부인의 지위에 계속 남아있게 된다. 영국 식민지당국은 영구 세틀먼트에 의거하여 자민다르가 정수하는 조세의 9/10를 받았으며, 나머지 1/10은 자민다르가 가졌다(Baden-Powell, 1892:401-402, 432-433).

식민지 당국은 이 제도 시행의 초기 단계에서 과세액을 높이 책정하고, 해당액을 징

수하지 못한 자민다르를 파면시켰다. 그 결과 많은 자민다르가 토지를 잃게 되었으며 영국에 의해 선정된 소위 ‘협력자’(collaborator)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게 된다(Cohn, 1960:424-431). 재산을 잃은 자민다르는 세포이 혁명의 중심세력이 되었던 반면, 새로운 자민다르는 영국 세력을 옹호하는 강고한 지지세력으로 되었다. 또한 이 새 자민다르는 대부분 19세기 후반 고정된 지세 하에서 인구 증가로 지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기생지주로 변신하게 되며 이들은 농촌의 고리대금업자(moneylender) 역할도 아울러 담당하게 된다. 인도농촌에서 고리대금업자는 영국식민지시대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고리대금업자는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중개의 카스트를 구성하고 있었다. 고리대금업자는 전통 경제에 대해 두 가지의 유용한 기능을 담당했다. 그것은 첫째 기근의 시기와 풍요의 시기에 균형을 취해주는, 평형바퀴로서의 역할이었으며, 두번째 역할은 조세납부시 필요한 화폐의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이었다. 이러한 역할은 고리대금업자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이는 수행될 수 없는 것이었다. 한편 전통적인 촌락 공동체는 고리대금업자의 부당한 이의 추구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었다. 그러나 촌락 공동체의 이러한 역할은 후기에 오면서 약화된다. 영국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고리대금업자의 추구 대상은 일반적으로 토지가 아니라 농산물이었다. 그 이유는 당시 토지는 얼마든지 있었으며 더구나 경작자가 없는 토지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법정을 통한 재산권의 보호가 광범위하게 자리잡기 시작하게 되자, 고리대금업자는 그들의 전통적인 방식을 바꾸어 토지 자체를 정악하여 이를 소작제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Moore, 1987:363-370).

(2) 라이요트와리 제도

1820년대에는 남부 및 중부 인도에 라이요트와리 제도(Ryotwari system)가 도입된다. 이 제도에서는 경작지가 토질에 따라 9등급으로 분할되며 각 토지 등급에 따른 조세의 기준도 각각 달랐다. 토지는 촌락 사회의 지배계급 및 농민들에게 영구 임대되었다. 라이요트(ryot)는 원래 경작자란 의미이며 이것은 조세가 중개자를 통하지 않고 농민으로부터 직접 징수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마드拉斯 지역에서 라이요트와리제도가 실시된 중요한 이유는 이 지역에는 조세 징수를 담당할 자민다르와 같은 계급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드拉斯지역에 자민다르가 없었던 것은 이 지역의 수장들이 영국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봉괴되었거나 혹은 겨우 연금으로 연명하는 처지로 몰락했기 때문이다(Baden-powell, 1892:11-22).

토지분배 과정에서, 대부분의 토지는 소수 귀족들에게 편중되었으며 일반 농민들에게 분배되는 토지는 극히 제한된 범위에 그쳤고 비정규적 촌락 구성원(non-full member)과 하인 계급들에게는 아예 분배되지 않았다. 한편 모든 라이요트들은 그들의 토지를 팔거나, 임대해주고 저당잡히는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세금을 내는 한 영속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당시 부과된 세율은 35%내지 50%정도에 달하는 엄청난 규

모였다. 더트 (Dutt, 1990:492)는 “이같은 과중한 세금이 농사에서 거둔 초과 생산물을 모두 삼켜 버렸다”고 주장한다. 그의 추계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한 농가에서 잉여 생산물의 가치는 연간 12파운드를 넘지 못하며, 경작 비용은 7-8파운드, 지세는 4파운드 정도에 달했다. 조세는 30년에 한번씩 생신되었으며 국가와 라이요트간에 직접징세가 시행되었다.

영국은 라이요트와리제도의 도입을 통해 조세 수입을 증대시키고, 라이요트계층을 안정적인 지위로 끌어 옮겨 줌으로써, 그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렸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목초지나 목장, 기타 촌락에서 공동 이용하던 토지의 많은 부분이 국유재산으로 변했으며, 농촌 인구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비정규 촌락인과 하층계급들은 토지소유권을 뺏기고 소작인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한편 1820년대 토지 세제 개혁 제도는 북부 인도에서, 마할와리제도(Mahalwary System)로 나타났다. 원래 마할와리란 토지 소유권이 부여됨과 동시에 납세의무를 지는 촌락공동체였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수장을 통해 조세를 납부했다. 조세의 총액은 그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매겨졌으나 농민들은 개인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납세를 담보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재산을 저당 잡혀야 할 의무가 부여되었다.

원칙적으로 토지세의 규모는 공동체의 순이윤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되었다. 이같은 이윤의 크기는 농민이 지방 영주들에게 납부하는 지대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잉여생산물의 크기에 맞먹는 액수이다. 실제로 1840년대에 그 세율은 약 50%정도였으니 조세를 통해 잉여생산물의 반이상을 착취해 가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사실 순이익이라는 개념도 징세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상례였으므로 착취의 정도는 그 이상이었다. 더트에 의하면 조세율이 농민 수입의 95%에 달한 예도 있다고 한다 (Dutt, 1990:139). 이 마할와리제도는 지세납입에 관한 연대책임체제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여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이미 자민다리제와 거의 구분할 수 없게 된다.

(3) 토지제도 개혁의 결과

여기서 자민다리제도와 라이요트와리제도라는 두 토지제도 개혁의 본질은 무엇이고 이 개혁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사회적 변동이 야기 되었는가 하는것이 문제된다. 이러한 토지제도의 개혁은 결코 인도에만 특유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후진 제지역이 자본주의에 편입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나타났다(예컨대, 일본의 지조개정, 러시아의 농노해방). 그렇다면 자민다리제도와 라이요트와리제도는 어떤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어떠한 역사적 역할을 수행했나에 대해 알아보자.

자민다리제도에서는 세습적 토지점유권을 가지고 있던 농민이 그것을 탈취당하여 자민다리가 배타적 토지소유자, 즉 지주가 된 것이고 라이요트와리제도에서는 미라스다르나 자기르다르등의 영주층이 상급 토지소유권을 빼앗기고 국가(동인도회사) 대 농민이라는 직접적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8세기로부터 19세기 까지의 인도에서 ‘영주적 계층 대 농민’ 관계야말로 현실적으로 주요한 생산관계를 이

루고 있었다는 사실인식을 전제로하여, 자민다리제도에서는 농민적 토지점유권이 박탈되고 그것이 영주적 계층의 상급소유권에 병합되었으므로 자민다르계층이 배타적 토지소유권자, 즉 지주가 된것임에 반해 라이요트와리제도에서는 영주적 계층이 보유하고 있었던 상급소유권이 처분되어 직접 생산자인 농민이 국가, 즉 동인도회사의 소작인이 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小谷汪之, 1979:186-187).

요컨대 양 제도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토지 위에 다양한 토지소유권이 쟁쟁적으로 겹쳐있는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변경하여 어느 한 계급에 대해 배타적인 근대법적 토지소유권을 귀속시키려고 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단 근대법적 토지소유권을 어느 계급에 귀속시켜야 하는가라는 점에 관해서는 영국의 지주제적 이념에 입각한 자민다리제도와 산업자본의 입장에 선 라이요트와리제도는 정반대의 방향을 취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양제도의 본질적 목적은 역시 효과적인 식민지 수탈을 위해 실시된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이 양제도에 의해 배타적, 근대적인 사적토지소유가 법적으로 성립되었다. ‘효과적 식민지수탈’과 ‘사적토지소유의 범인(法認)’이라는 두 계기는 노대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사적토지소유의 범인’은 바로 ‘효과적인 식민지수탈’의 필수불가결한 수단이었다는 점을 놓쳐선 안된다. 즉 이 조치는 이미 빈궁화하여 더이상 지세를 지불할 수 없는 농민의 토지를 보다 지세부담능력이 나은 상인계급 등 부유계층의 손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의해 최대한의 지세수탈을 도모하는 최선의 방책이었던 것이다(小谷汪之, 1979:189).

자민다리제도에서는 자민다르라고 불리는 종래의 영주계층에 대해 배타적 소유권이 부여되어 그들은 지주의 입장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자민다르가 지세를 체납한다면 바로 토지를 몰수해서 경매에 부치게 된다. 그 결과 19세기 초까지 약 2/3의 전통자민다리가 경매에 의해 새로운 상인계급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소유권의 이동이 야 말로 동인도회사의 효과적 지세수탈을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공헌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

이 토지제도 개혁의 결과 창출된 것이 기생지주적 토지소유이다. 인도에서는 사적 토지소유자로 된 자민다르층이나 농민층은 무거운 부담때문에 몰락, 궁핍화하여 가고 최대한의 지세가 식민지정부에 확보되었다. 근대인도에서 기생지주적 토지소유의 중심은 새로이 형성된 지주적 토지소유이며, 과거의 자민다르층은 몰락한 것이다.²

1 이상과 같은 양 제도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지조개정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며 ‘자수리치의 편지에 대한 회답의 초고’에서 마르크스의 러시아 사회론도 그러한 인식틀을 공유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나 러시아 뿐만아니라 일반적으로 식민지에서 실시된 일련의 토지제도 개혁에 공통적인 역사적 성격이라 할 수 있다(小谷汪之, 1979:190).

2 이 기생지주적 토지소유는 법적으로는 배타적인 근대적 토지소유인 데 반해, 그 경제적 본질은 봉건제의 재편 강화이다. 이러한 기생지주적 토지소유의 형성조건은 무엇인가. 小谷汪之는 이를 레닌의 농업이론, 특히 「1905-1907년의 러시아혁명에 있어서의 사회민주당의 농업강령」에 의거하여 후진국 식민지형의 농민층분해론에 의하여 설명한다. 세계시장에 종속적으로 편입된 지역에서는 농민

새로운 토지제도의 도입은 영국 산업자본에 의한 인도 수탈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개혁은 인도에 존재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를 급속히 침식해 나갔으며, 촌락 사회의 봉과를 조장하고 인도를 원료 공급지로 기능하도록 유도되었다. 이같은 개혁은 단지 조세나 농업관계적 의미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자민다르제도의 실시로 말미암아 토지에 대한 권리가 종전의 세금징수자, 즉 자민다르에게 이전되었으며, 세습적이었던 농민의 경작권은 없어지고 농민은 소작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결국 자민다르와 영국식 민지당국의 관계는 소위 징세관(fiscal clerk)과 정부의 관계로 정착되었다. 자민다리제도의 실시로 영국 식민지 정부는 조세 수입이 증가되었으며, 또 영국으로부터 토지를 받은 자민다르의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되었다. 이같은 자민다르제도의 확립은 영국으로 하여금 아무런 비용 없이 인도 식민지를 다스려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즉, 양제도에 의한 토지제도의 개혁은 봉건적 토지소유 관계를 국가적 규모로 재편하여 자본의 원시적 축적을 위해 최대한의 수탈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³

이같은 식민 권력에 의한 토지제도 개혁은 농민의 대규모 궁핍을 초래했으며 인도 촌락 공동체 조직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농민의 대부분은 국유지나 자민다르의 소작인으로 전락하거나 혹은 지주, 고리대업자, 식민지 관리들에 의한 강제 노역을 감내해야 했다. 독립적이었던 공동체 사회는 붕괴되고, 영국의 명령에 따라 인디고나 아편, 면화 등의 수출용 1차 생산물을 재배하는 소농민집단으로 변했다. 토지 경작자들과 수공업자 간의 오랜 연계는 끊어져 버렸고 공동체 사회는 자급자족의 기회를 잃게 되었다.

3. 영국의 산업혁명과 무역에 의한 수탈

지세 수탈을 기초로 한 중상주의적 식민지 지배는 소생산자층에 흡착한 상인이나 고리대업자본의 경우와 동일한 역할을 했고 식민지 인도 경제는 전반적으로 폐폐되었던 반면, 영국에서는 식민지로부터 거둬들인 상업이윤이 산업혁명의 축매가 되었다.

18세기 말 영국의 급속한 산업 발전은 산업 부르주아의 정치 경제적 지위를 강화시키

충분해가 완전한 자본, 임노동관계를 창출하지 못하고, 빈동=반프롤레타리아층을 구조적으로 재생산하고 축적하여 가는 형태로 진행되며, 이 빈동층은 가혹한 조건하에서 지주의 토지를 소작함과 동시에 임노동에도 종사하여, 노임수입에 의하여 고율의 소작료부담을 견딜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생지주적 토지소유는 세계시장에 종속적으로 편입된 후진 제3지역에 특유한 토지소유이며, 그 본질은 봉건적이나, 그것이 자본주의에 의하여 창출되었다는 의미에서 반봉건적 토지소유이다(中村哲, 1991:149-151).

³ 그러나 이 제도개혁은 '영국 상품을 위한 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19세기 중엽이 되면 원시축적기를 마친 영국 산업자본가는 가혹한 지조수탈이 인도로 하여금 '영국의 상품시장'으로써 기능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인도회사의 토지정책을 공격하게 된다. 이는 본원적 축적을 위한 토지제도의 개혁이 상품을 위한 시장 창출과는 보순적인 조치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동인도회사의 '사적 토지소유의 범인'은 근대적 토지소유제도의 확립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것은 小谷汪之(1977) 참조.

는 역할을 했다. 산업 부르주아의 의회전출을 가능케한 1832년의 의회개혁 이래 영국의 해외 및 국내정책은 주로 이들 산업 부르주아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 이같은 영국 자본주의에서의 새시대 도래는 산업 부르주아의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게 되었으며 인도에 대한 식민착취의 방법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영국귀족과 고리대업자, 상인집단의 이익을 대변했던 동인도회사는 인도를 단순한 수탈 대상으로서 값싼 상품의 생산원천으로 취급해 왔던 반면, 산업 부르주아는, 인도가 영국 산업생산물에 대한 최대의 시장이자 산업에 필요한 공업원료의 제공지로서 기능해주길 원했던 것이다.

이에 영국의 산업자본가들은 상인계급들과의 길고 험난한 투쟁과정에서 인도에 대한 식민착취의 기반을 넓혀 갔다. 급기야 1813년에는 동인도회사의 무역독점권이 폐지되고 1833년에는 무역업무가 폐지되었으며, 1858년에는 ‘대반란’의 책임을 묻는 형태로 동인도회사 그 자체가 해체되었다. 이후, 식민지 인도는 인도정부를 통한 영국의 직접지배를 받게 된다. 영국 산업자본의 영향이 커져 나가면서 식민지 지배정책에도 변화가 있었다. 특히 산업혁명이 거의 완성기에 접어든 1833년에는, 중앙정부에 총독이 임명되었고 전국에 지방장관(정세관)이 배치되었으며 식민지 관료의 양성을 위해 1835년부터 영어를 사용하는 영국식 교육제도가 수행되었다.

그렇다면 산업자본에 의해 도입된 인도에 대한 식민착취구조의 새로운 요소는 무엇일까? 이는 우선, 무역을 통한 착취정책으로서 영국의 값싼 산업생산물의 수출에 의해 진전되었다. 1794년 인도의 영국제 면상품수입은 단지 156파운드 어치에 불과했으나, 20년후인 1813년 총수입액은 거의 109,000파운드로 증가했다. 마르크스에 의해 인용된 수치에 따르면 영국으로부터 수입된 꼬실은, 1813년부터 1836년 사이에 5,200배나 증가했으며 1824년 영국의 면 수출량은 기껏 100만야드에 불과했으나, 1837년에는 6,400만 야드로 증가했다(Marx, 1978:38).

19세기 중반에 이르면, 인도는 수세기 동안에 걸쳐 전세계에 면제품과 유리, 금속제품을 수출하던 세계의 주요 수출국의 지위에서 영국상품 수출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국으로 전락하고 만다. 면제품의 가장 거대한 생산지인 인도가 영국 면제품의 홍수를 만나게 되면서, 인도의 수공업자는 철저히 몰락의 길을 걷는다. 낡은 수공업 생산방법은, 그것을 대체하는 새 기술 없이 그냥 몰락해 버리고 인도는 영국의 값싼 공산품에 대한 거대한 시장으로 전락해 버렸다. 영국제 증기기관과 과학은 인도의 전지역에 걸쳐서 농업과 수공업의 결합을 단절시켰다(Marx, 1978:39).

모제품이나, 철금속, 비철금속제품, 유리, 세라믹 등도 모두 영국에서 수입되었다. 인도의 국내시장은 단시간내에 영국산업의 재화에 의해 장악되었다. 인도의 외국무역을 독점하면서 영국 식민통치자는 인도지방의 산업으로부터 그것의 전통적인 해외시장마저도 앗아가 버렸다.

그러나 영국 상품시장에 대해선 막중한 관세장벽으로 이를 보호해 나갔다. 19세기초 인도의 면과 실크제품은 영국제품보다 50-60% 낮은 가격으로 팔릴수 있었으나, 영국인들은 그들의 산업을 보호해주기 위해 인도상품에다 70-80%의 관세를 매겼다. 일부 상

품의 경우엔 400%까지 관세를 부과했다. 반면 영국의 제조업 상품은 거의 무관세로 인도에 수출되었다. 1820년 영국의 공산품은 캘커타항에 단지 2.5%의 관세로 수출되었다. 영국의 역사가 월슨은 “만약 이와같은 영국상품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었다면,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맨체스터의 공장들은 가동조차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Dutt, 1990:187, 209).

한편 인도가 영국에 수출하는 원료인 원면, 실크 원단, 인디고 등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했다. 1820년말에 이르러 인도의 원료 수출은 급속히 증가했다. 그외에도 인도는 영국에 대해 차, 아편 등을 공급해 주었다. 이에 따라 영국은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원료공급지로 전락했다. 1813년 아래 꾸준히 증가했던 무역량은 1850년대 들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무역구조도 1810년대 전반까지는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공업제품 수출—금, 은의 수입형’에서, 1850년대에 와서는 완전히 ‘원료 및 식량 수출—공업제품 수입형’으로 변했다. 쌀이나 보리 등 식량 이외에도, 중요한 농산물 수출로는 아편, 인디고, 원면, 황마 등을 들 수 있다. 식민지 인도의 무역구조를 보면 우선 눈에 띠는 특징이 전기간에 걸쳐 수출초과 상태를 이루고 있는 점이다(Chaudhuri, 1982:820-25). 이것은 독립 후의 인도가 만성적인 무역수지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으로 미뤄볼 때 매우 놀라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차수입으로 인한 영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메꾸기 위해 인도에서 아편을 개발시켜 중국에 수출하고, 19세기 후반으로 유럽제국이나 미국에 대한 영국의 수입 초과를 식민지 인도의 상품수입으로 대체하거나 보전하는 다각적 무역구조가 형성되었다는데 그 주요 원인이 있다. 이 같은 의미에서 볼때 식민지인도의 무역수지의 혹자는 영국의 지배에 의해 강제된 것이라 할 수 있다(Chaudhuri, 1982:844-77).

요컨대 이 시기는 영국산업자본이 인도시장을 정복하는 과정이었다. 영국 공산품에 대한 시장으로 전락하면서 촌락에 존재했던 인도의 수공업과 농업 간의 연계도 단절되었다. 또한 도시와 촌락에서 제조업 생산에 대한 아무런 생산력 증가 없이 수공업이 몰락해 버리고 이러한 배경에서 인도의 농촌인구는 끊임없이 증가하게 되니 이것은 결국 인도경제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4. 영국의 자본수출과 철도건설

(1) 금융자본과 자본수출

19세기 중엽 이후 영국의 인도수탈정책에는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1850년대에 국가행정은 중앙집중화되었으며 전신제도가 확립되고, 철도건설도 시작되었다. 화폐제도가 더욱 단일화되었으며 외환은행도 그들의 위치를 강화해갔다. 사실 이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영국 금융자본에 의한 인도착취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제국주의 시대에서 식민지 착취의 가장 기본적 특성은 자본수출이다. 해외투자는 금

용자본에 의한 이윤착취의 근간을 제공한다. 그러나 인도의 경우는 매우 특수해서 인도 내 투자자본은 대부분이 인도 식민정부로부터 약탈된 부로 염출되어졌으며, 실제 영국으로부터 투입된 자본은 극히 적었다. 19세기 중엽 영국의 투자는 오로지 철도건설과 몇몇 황마 및 면화공장의 건설에 치중되었다. 요컨대 영국의 인도내 투자성격은 애초부터 기생적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할 수 있다.

국채(national debt)의 형성도 인도의 경제발전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뤄졌다. 그 비용은 영국의 인도 통치기간 중의 경비로 충당되었으며, 식민정부의 행정유지나 심지어 인도와는 거의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되는 경비마저도 모두 인도에서 끌어내다 충당했다. 이러한 것들은 전혀 비생산적인 것일 뿐 아니라 식민주의적 약탈 그 자체임은 두 말 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1792년 인도의 대외채무는 70만파운드였는데, 1829년에는 300만파운드, 1890년에는 1억 400만 파운드, 1900년에는 1억 3,300만 파운드를 기록했으며 그 후에도 계속 불어나기만 했다(Dutt, 1990:292). 그로드코의 대략적 추산에 의하면, 인도의 대영채무총액은 1909-1910년까지 3억 6,500만 파운드에 달했으며 세계 1차대전 전까지 4억5천내지 4억7,500만 파운드를 기록했다(Grodko, 1970:271).

결과적으로, 인도의 대외채무는 주로 해외투자로 연결되었고, 그래서 자본수출의 형태를 띠게 된다. 자본은 가장 기생적인 형태를 띠게 되고, 인도자본주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그 어느 것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동시에 초기에는 국채의 성격을 띠었던 영국의 자본투자는 해외투자를 식민착취의 중요한 측면으로 부각시켰다. 이에따라, 인도로부터의 착취액중, 영국산업자본가에 의한 이윤수탈액은 서서히 감소되었다. 데닌이 지적했듯이, 이같은 금융자본의 지배현상은, 제국주의와 제국주의적 기생주의의 본질인 것이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면 인도는 주로 영국의 금융자본수탈의 주 대상이 된다.

제국주의 시대에서 인도수탈의 기생적이고 약탈적인 본질은 몇가지 특징으로 나타난다. 무역을 통한 수탈은 국가의 궁핍화와 피폐를 야기하고, 원재료의 기아수출은 인도의 경제조직의 기본을 취약하게 만들었으며 영국의 자본수출은 인도로 하여금 영국의 요구에 맞는 경제구조로 전환하게 만들었다. 결국 인도의 경제는 기형화되었고 식민지적 특수형태로 전환되어갔다.

(2) 철도 건설

인도의 부존자원을 개발하고 수탈하기 위해 영국이 가장 먼저 손대야 했던 분야는 역시 철도였다. 영국공장에 대한 원료공급이 영국 식민지 당국의 당면과제로 대두되자, 영국관리들은 인도에서 철도건설을 위해 영국내 기업들과 협의를 시작했다. 맨 처음 철로는 1853년 개통된 봄베이에서 타나 간의 20마일에 이르는 철도였다.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철도건설은 자유무역정책의 일환으로 급히 진행되었다. 캘커타, 봄베이, 마드리스 등의 식민지 지배를 거점으로 해서 건설된 항만도시로부터 철도건설이 개시되고, 1870년대 초까지 위의 세 도시를 포함하는 주요도시와 각지의 농, 광산물 주산지와 연결되었다. 또 영국해로와 연결된 항만도시를 중심으로 철도체계가 성립되었다. 19세기

말부터는 민간의 철도회사가 서서히 국유화되고 제 1차세계대전 전까지는 현재의 인도 국유철도의 기초가 구축되었다. 이후 20세기 초엽까지 24,000마일의 철도가 부설되었으며 1차대전 전까지는 무려 34,600마일이 건설되었다(Hurd, 1982:749-750).

〈표 2-1〉 식민지 인도에서 철도의 발달

	1861	1881	1901	1921	1941
영업거리(km)	2,555	15,897	40,834	59,998	65,168
여객(백만명)	-	54.8	194.7	569.7	623.1
수송화물(백만톤)	-	13.1	43.4	90.1	97.0
조수입(백만루피)	9.9	143.2	336.0	928.9	1446.9

자료: Gov't of India(1953:187-89)

인도의 철도건설은 전형적인 식민주의적 방법으로 건설되었다. 즉 인도의 국익은 무시된 채, 인도인의 회생으로 건설되었던 것이다. 영국의 민간 건설회사는, 식민지 행정 당국과의 사이에 총 투자액의 5 %의 이윤을 보장받았다.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투하된 자본액이 클수록 이윤이 커지게 되므로, 영국인들은 투자의 효율성 등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건설의 비용이 커질수록 인도국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더욱 늘어났다. 철도 건설 비용은 인도인의 어깨를 더욱 짓눌렀으며, 식민지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거의 연간 천만 파운드 정도의 돈이 철도비용 명목으로 영국에 지급되었다.

여기서 지적해 두어야 할 점은 영국의 자유무역정책과 더불어 철도도 영국의 필요에 의해 도입된 것이고 그 목적도 정치, 군사적으로는 식민지 확장과 치안유지를 위해서, 경제적으로는 식민지 인도의 '상업적 개발'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나(松井 遼, 1974: 178-79). 따라서 〈표 2-1〉에서 철도의 급속한 발달은 식민지 지배, 착취 강화의 지표일 뿐 식민지 인도의 경제발전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식민지 인도의 철도 개통을 논하면서 철도는 식민지 인도의 근대공업의 선구자가 될 것을 예측하고 있다.

"영국의 자본가들이 오로지 자신의 제조업을 위한 면화와 기타 원료를 보다 적은 비용으로 얻을 목적으로 인도에 철도를 제공하여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철과 석탄을 갖고 있는 나라의 교통에 기계를 일단 도입한 뒤에는, 그 나라가 기계를 제작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광대한 나라 전면에 철도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도교통이 직접적이고 일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공업공장을 도입해야만 한다. 이것을 도입하면 철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그러한 공업 부문에도 기계를 사용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인도에서는 철도제도가 실제로 근대 공업의 선구자가 될 것이다. 철도건설로부터 생겨나는 근대 공업은 인도의 진보와 인도의 힘에 대한 결정적 장애물인 인도의 카스트제도가 의지해 있는 바의, 대대로 내려오는 분업을 해체시킬 것이다"(Marx, 1978:84).

당시 철도건설은 식민지 인도에 대한 영국 투자의 최대부분을 점했을 뿐 아니라 본

국의 철강업 및 기계공업에 중요한 시장을 제공했다. 19세말 아래 고급공무원직이나 행정직에도 서서히 인도인의 참가가 허용되긴 했으나, 철도의 경우 관리직이나 전문기술을 요하는 직종은 모두 영국인이 독점하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볼때 철도개발이 가져온 공업발전의 과급효과는 뭄시 한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Hurd, 1982:750). 철도건설에 자극받은 1870년대 영국회사들은 뱅갈과 비하르에서 석탄채굴을 시작했으며 19세기말에 이르면, 철광업도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영국계회사인 뱅갈철강회사(Bengal Iron and Steel)가 설립되었고 년간 35,000톤의 철을 생산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석탄 및 철광생산이 인도 산업 발전에 미쳤던 비중은 극히 미미한 형편이었다. 20세기초에는, 마드라스와 중앙 인도지역에서 망간 원광이 발견되면서, 전량 수출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인도경제의 기초를 결정해주는 중공업분야의 발전이라고 해석하면 곤란하다. 석탄과 철강의 생산은 인도경제발전을 위해 시행된 것이 아니고 영국이 인도수탈의 비용을 줄이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행한 것이다.

5. 상업적 농업의 전개와 기아수출

식민지 인도에서 철도가 가져다준 영향은 ‘산업혁명 없는 산업혁명’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영국을 위해 ‘농촌’의 역할을 짊어졌던 인도는 영국 본토 경제의 도약대로서 세계자본주의에 깊이 편입되었다. 그 결과 농업 생산의 패턴도 자가 소비가 목적이 아닌 해외시장 판매를 주목적으로 한 상업적 농업이었고, 소위 상업 작물의 생산이 확대되었다. 1853-1856년 간의 크리미아 전쟁으로 러시아산 ‘아사’가 공급 곤란에 빠지자 불이 일기 시작한 인도산 황마에 대한 수요라든지, 1861년-65년의 미국 남북전쟁이 가져온 인도산 면에 대한 수요 급증은 그 좋은 예이다. 또 19세기말 독일에서 화학 염료가 개발되자 쇠퇴하기 시작한 ‘인디고’의 생산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수출 상품으로 개발된 ‘아편’도 그 한 예이다. 여기서 우리는 세계 시장의 동향에 따라 식민지 인도의 농업 생산이 좌우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 상업적 농업의 전개와 동시에 농작물 생산의 지역적 특화가 나타났다. 변화는 편집주와 구자라트주에, 황마는 동벵갈에, 인디고는 뱅갈주와 비하르주에서 주로 경작되었다. 또한 농업 생산의 중요한 변화의 하나로 토지가 상품화되고 소유권이 유통화되면서 농민층의 분화, 분해가 진행되었고 동시에 자급적 성격이 강했던 농촌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농촌에 상품 경제가 침투된 것과 동시에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했다. 따라서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었던 토지 소유에 한층 경제적 가치가 부여되게 된다.

소규모 영세 농민의 소유지는 대지주나 상층자영농민, 고리대 상인의 손으로 넘어가고 기생 지주제가 확대되었다. 이같은 과정에서 상인, 고리대충이 지주층과 함께 농촌 경제를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민의 몰락 과정은 부채로부터 시작된다. 부채를 변제치 못하면 저당지의 소유권이 박탈되면서 소작농으로 전락하든가, 혹은 경작권조차도 없는 농업노동자로 되어서 농촌 사회의 최하층으로 퇴적된다. 1880년 당시의 기근 조사위원회는 토지 소유자의 2/3가 부채를 지니고 있으며 그 반수는 빵을 갚지

못할 형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빚을 갚지 못하는 부채 농가는 점차 신분적 속바이 강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1901년의 국세 조사에 의하면 부양 인구를 포함한 농업 총인구의 1/4이 농업노동자총임을 알 수 있다(〈표 2-2〉참조). 물론 이들 농업노동자총이 모두 영국 지배하에 형성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같은 급속한 팽창은 식민지 지배의 모순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며 〈표 2-2〉의 내용은 이를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

〈표 2-2〉 농민층의 구성과 변화

(단위: 100만명, 팔호는 %)

	1891	1901	1911	1921	1931
지 대 취 득 자	-	-	7.7 (3.4)	3.7 (3.7)	4.2 (3.8)
경 작 자	175.4 (87.3)	152.7 (74.8)	167.0 (74.1)	74.7 (70.3)	28.4 (25.6)
소 작 농	-	-	-	-	36.2 (32.6)
농업 노동자	25.5 (12.7)	51.4 (25.2)	50.5 (22.5)	27.8 (26.2)	42.2 (38.0)

자료: Patcl(1952:14)

몰락한 농민은 같은 경우에 처한 적인충과 마찬가지로 본국의 '세계의 공장'으로 흡수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식민지 인도의 도시 부문에서 새로운 고용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그저 농촌에서 반실업 상태로 체류할 수 밖에 없었다.

아시아 대륙에서 관개농업의 역사는 무척 오래된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천수(天水)에 의존하고 비료를 쓰지 않으며 나무 쟁기와 가축이 사용되는 전통적 농법이 식민지 시대에 와서도 주류를 이뤘다. 따라서 생산성이 낮았을 뿐 아니라, 수확량이 기후 조건에 의해 몹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농산물 원료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식민지 정부가 관개시설개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19세기말에 들어와서였다. 당초에는 철도와 마찬가지로 이자보증제도에 의해 민간 관개회사에 맡겼으나 1860년대부터는 정부가 직접 용수로 등의 인공관개시설을 건설, 관리했다. 그러나 아무래도 관개시설의 개발 등은 철도 건설에 비해 뒷전에 밀려 있었던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1901-1903년의 관개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용수로, 우물, 저수지 등 관개시설에 의한 관개면적은 영국령지역의 총경지면적의 20% 남짓이었으며, 토후국 영토의 10%정도였다.

더군다나 관개시설의 개발은 주로 인더스강, 갠지스강, 카베리강 유역에 집중되었으며 지역에 따라 관개면적의 분포는 극단적으로 편중되어서 편집, 연합주, 마드拉斯 지역이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압도적 다수의 농민은 천후의 지배를 받았

다. 일단 기후 조건이 안 맞아서 흉작이 되면 지주나 고리대, 상인의 지배하에 있었던 농민들은 식량을 자급할 수 없었으므로 대규모 식량난이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식민지 인도의 곡물 수출은 계속되었으니 이는 “기아수출”이 아니고 무엇이랴?

철도 건설에 의한 식민지 인도의 상업적 개발과 동시에 기근 대책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관개시설 개발에 의한 농업의 증산, 세수 증가와 함께 기근 방지가 그 목적으로 대두되었으나, 광범위한 기근의 발생을 피할 수 없었다. 실제 19세기 말에 이르러 기근 현상이 자주 발생되었고 특히 1870년대 아래 철도의 영향으로 그 기근의 성격이 몹시 변하여, 이제까지와 같은 국지적 절대적 식량 부족이 아닌, 상대적인 식량 부족에 의한 가격 등귀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가난한 민중들이 생명을 잃을 정도로 기아가 극심해졌다(Bhatia, 1967:7-10).

식민지 인도에서 자본주의적 산업 발전의 중요한 결과는 역시 ‘노동자계급의 탄생’이라 말할 수 있다. 1911년 현재, 플랜테이션 노동자들을 포함한 인도의 총노동자수는 200만명을 상회할 정도였다. 그러나 대부분 노동자들은 공장에 고용된 것이 아니고, 소규모 영세업체의 노동자였다. 당시 인도의 도시 인구 구성을 보면, 매우 특이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도시 인구는 대부분 원료나 식량이 수출되는 항구도시에 밀집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같은 인구 성장은 인도 산업 발전과 연결되지 못했던 것이며, 단지 영국에 의한 착취구조에 걸맞게 변형된 것에 불과하며, 나아가 강화되어온 착취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가드길(Gadgil, 1924:172)의 말대로 “무역 요소가 산업 요소를 능가”했던 것이다.

당시 인도 산업발전과정은 식민지적 특색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었다. 이 시기에 중요한 산업 발전이라면 주로 경공업 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 특히 원면과 숙련노동이 필요한 섬유 산업의 발전이 팔목할 만한 분야였다. 초기의 면화 산업은 전통적 인도 산업으로 발전되었다. 맨처음의 인도 회사는 봄베이제사공장(Bombay Spining and Weaving Company)으로 1851년 설립한 것이다. 면화업의 급속한 발전은 1870년대에 와서야 이뤄진다. 1870년대 초반에는 인도에 겨우 20개 정도의 공장 밖에는 없었지만, 10년후에는 60개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1890년대에는 150개 이상이 생겼다. 아울러 인도는 면화 생산물을 중국과 인도에 수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1890년 중엽부터 제 1차세계대전 전까지 인도 산업의 성장은 식민지적 제약과 내수 시장의 협소로 인해 매우 지체되었다. 특히, 초기 인도 면화산업의 중요한 특징은 대부분의 공장에서 실っぱ는 일에만 중점을 두었다는 사실이다. 인도 공장에서는 가는 실만 생산했으며 이는 거의 중국이나 동남아의 다른 나라로 수출되었고, 극히 일부만이 인도 자체의 수직제품(手織製品) 수요에 대응하였다. 또한 그나마도 대부분 인도의 가난한 수요층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굵은실을 사용한 천은 주로 영국 런던지방에서 수입되었다.

또다른 섬유업분야인 황마 산업의 경우는, 영국 자본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19세기 중엽까지는 뱅갈지역에서 독점했으며 이것은 타지방의 수공업 황마 산업을 침체시켰다. 19세기 중반, 세계 시장에서 황마 상품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했는 바, 이는 크리

비아 전쟁의 결과 황마의 주요한 대체재인 러시아산 ‘대마’ 수출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에서의 황마 공장 건설을 촉진시켰다. 매크로미엄 공장이 1854년 세워진 이래 19세기 말까지 캘커타지역에 29개 공장이 세워졌다. 이 숫자는, 1913-14년까지 2배로 되었고 모두 20만명 정도의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었다. 철강산업은 세계 1차대전 전에 생겨났지만, 그것도 기계 분야나 중공업 분야는 아니었다. 또한 인도에서 19세기 중후반에 시작된 자본주의적 관계는 경제의 전분야에 걸쳐 침투한 것은 아니었다.

농업 분야에서도 자본주의적 관계가 어느 정도 발전했지만, 이것은 전자본제적 특성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또한 다른 유럽의 독립 국가의 경우에서처럼 지주 계급의 자본축적이 산업적 생산에 재투자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자본이 봉건 지대의 형태로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토지 구매에 투자되었다. 그래서 농촌 지방에서는 아주 작은 토지를 소유한 자의 비중이 매우 많이 늘었다.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 인도 농민은 철저히 착취당했으며 그들의 ‘옛 세계’를 잊어버렸다. 토지세는 농민 수탈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인도를 영국에 더욱 종속되게 하였다. 영국은 조세제도를 이용해서 인도를 원료공급지로 전화시키려 기도했으며 인도 농민들로 하여금 황마나 면화, 인디고 등의 농산물과 기타 원료를 생산도록 하고 이를 자신의 산업혁명에 이용했던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진행된 상업적 농업과 특용작물 생산 등은 자본주의의 발전의 결과라기 보다는 영국의 인도 착취 결과로 해석된다. 1860년부터 1890년 사이의 시기에는, 소위 지역 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된다. 그러나 앞에서 밝힌 바 있듯이 이같은 상업적 농업은 세계 자본시장의 취향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으며, 인도 국내 시장의 발전에 정체 요인이 되었을 뿐이다. 더욱이 농민층은 세계시장과의 연계가 없었으므로, 모든 계약이 고리대금 업자나 지주들의 손에 의해 이뤄졌다. 결국 농민은 실제 시장과는 거리가 멀어졌으며, 상품의 형태로가 아닌 웨нт나, 고리대금업자에 대한 이자의 형태로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 즉, 농민의 생산물이 상품으로 되는 것은 지주나 고리대금업자의 손에서 였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업적 농업의 형태는 인도에 대한 제국주의적 착취를 도왔고 국내 자원의 고갈을 초래했으며, 한편으로는 인도 국민의 궁핍화를 가져왔던 것이다. 제국주의 시기에 식량(특히 밀)의 수출은 빚주린 인도 국민을 더욱 비참한 기아의 높으로 빼뜨렸다.

1841년부터 1890년 사이 50년도 채 안되는 기간 동안 밀수출은 43배나 증가한 반면 동기간중 밀 수확량은 무려 64%가량이 하락했다. 이같이 영국인에 의해 강제된 식량 수출은 수백만명의 인도인을 아사 상태로 몰아내 버렸다.

19세기 중반부터, 그렇게 장구한 농업의 역사를 가진 풍요로운 인도의 농업은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경험하기 시작했으며, 이같은 결과는 오늘날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식민지 정부에 의해 부과되는 지세나 대출금에 대한 이자압력 등에 의해 대부분의 농민들은 소유했던 토지의 많은 부분을 처분해야 할 처지에 놓였으며, 전통적인 자급 자족적 농가경영 형태는 자취를 감춰버렸다.

농촌 지방의 농업노동자는 급증해 갔으며, 식민지적 착취의 결과는 광범위한 ‘기아의

발생'으로 귀착되어 갔다. 봉건적 지주의 강화와 제국주의적 착취의 심화는 농촌 지역의 계급모순을 심화시켰다. 1857년 대반란도 농민봉기의 형태를 띠면서 발전해 갔으며, 이에 따라 식민지 정책도 서서히 변모되어 갔다. 1880년대 들어와 인도에서 농민투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에 따라, 영국은 새로운 농업 관계 법안의 시행으로써 국민의 투쟁 열기를 침혀 나갔다. 1885년에는 새로운 농업 법안이 마련되었으며, 전자본주의적 착취의 기본 원칙을 고수하는 법위 내에서 토지 임차인에게 확실히 보장된 경작권을 인정해 주었다. 또한 촌락에서의 상품-화폐관계 발전에도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법안의 정비를 시도해 나갔다(Rothermund, 1978:139-50).

더욱이 토지소유권의 유동화와 농민총의 전반적 하강 분화, 분해가 진행되면서 농업 생산이 불안정해지고, 농민투쟁이 격화되었기 때문에 식민 정부 측에서는 농민보호입법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영국에 의한 자민다르제도와 라이요트와리제 도입후 두번째로 시행된 농촌관계법안의 개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맨처음 나타난 제도적 개선안은 1859년 채택된 뱅갈 소작법(Bengal Rent Act)인데, 이는 1857년 대반란 후 바로 채택된 것이다. 1859년법은 뱅갈에서 영구적인 경작권을 확립하고, 농민으로 하여금 지주에 의한 임의적인 착취와 토지로부터의 추방, 임대료 등의 증가를 막자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이 법은 이후, 인도 토지법의 모범이 되었다. 이 법안을 두고 인도의 부르주아 경제학자나, 식민지 옹호자들은 “뱅갈 농민들의 권리장전(Great Charter of Bengali)”이라고 묘사한바 있지만, 과연 이 법안이 실제로 농민에게 도와준 바는 무엇인가에 대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Medovoy, 1984:77-80).

1879년 네칸지방 농민구제법은, 1875년에 발생한 세포이 혁명의 원인이 고리대에 의한 농민 수탈과 토지소유권의 박탈 등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고리대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다. 동일한 현실 인식에서 편집에서는 1900년에 농민의 토지가 비농업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토지양도구제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소작 입법, 고리대 규제법, 부채 농민 구제법이 다른 주에서도 실시된 것은 제 1차대전 후의 일이므로 수익자도 일부 농민총에 한정되어 있었다.

한편, 상인 계급이나 고리대업자들에 의한 농민 수탈을 막기 위해 1879년 고리대 금지법을 발효시키고 채무자의 토지를 몰수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게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거두지 못했다. 요컨대 식민주의자들의 신토지법안은 주로 인도에서의 농민혁명을 방지하고 농업에서 자본주의의 식민주의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에서 채택된 것이다.

어떤 법안에서도 진정으로 농민계급의 삶을 개선하거나 지주나 제국주의자의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는 찾아볼 수 없다. 즉 대부분의 농민 법안은 과시적 홍보 목적에서 이뤄졌으며, ‘농민 투쟁의 김을 빼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해서 인도는 1914년 제 1차 대전 시작 때까지 전형적인 식민지로 남아 있었으며, 영국에 대한 원료공급지, 상품수요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던 것이다.

III. 양차 세계대전과 인도의 사회경제적 변화

1. 1차 세계대전과 공장제 공업의 발달

20세기 전반 양차대전의 시기는 모든 인류의 세계사에 중요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시기에 자본주의가 맨처음 전반적 위기를 경험했고 공황이 발생했다. 제국주의 정치 경제적 세력은 약화되기 시작하고, 러시아의 10월 혁명으로 노동자, 농민의 국가가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19세기의 마지막 사분기에 일정한 발전을 이룬 인도 면공업은 1890년대에 간헐적으로 일어났던 가뭄, 특히 1899-1900년 간에 면작지대를 집중적으로 업습하여 이재민 2,800만 이상을 낸 대기근의 타격과 중국시장에서의 후퇴에 의해 1905년경까지 정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Dutt, 1990:529).

중국시장에서의 후퇴에는 적어도 두가지의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청일전쟁 이후 특히 현저해진 일본의 진출이었다. 중국시장에서 인도 면제품은 일본 방직사(紡績絲)와 격렬한 판매 경쟁을 거치면서 제 1차세계 대전 이전까지 완전히 밀려나고 말았다. 또 하나의 요인은 외환제도의 개혁에 의한 불이익이었다. 1878년 아래 하락을 계속하고 있던 루피화에 대해 영국은 1893년 1파운드를 15루피로 하는 새로운 환율을 설정함과 동시에 은본위제를 폐지하고 경파조치로서 금은 복본위제를 실시하였으며, 1899년에는 은본위제를 최종적으로 폐지하고 환률을 1893년의 것에 고정시킨 채로, 대외결제에는 모두 파운드화의 사용을 강요하는 금본위제를 실시하였다. 루피를 실질가치 이상으로 정하여 파운드에 결합시킨 이 제도는 은본위제를 취하는 중국과의 무역결제에서 커다란 불이익을 초래하였다(Medovoy, 1984:54-55).

중국 수출시장에서 후퇴한 인도 면공업자본은 자연히 국내시장 개척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이는 불가피하게 영국 면공업자본과의 경쟁을 격화시켰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고양된 인도 민족주의의 경제적 배경에는 이러한 문제가 놓여 있었다(Chandra, 1966:133, Levkovsky, 1966:335).

영국면제품의 인도 수입은 면포가 압도적으로 많아 19세기 후반에는 전체 면제품 수입량의 8-9할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당시만 해도 방직사에서는 가는 실은 영국제, 짚은 실은 인도제라는 일종의 분업체제가 형성되어 있어 경쟁을 꾀할 수 있었지만, 인도 면업자본은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국산 수입면사에 필적하는 방직사를 수출할 정도로 성장하였고, 곱고 가는 실의 생산 및 방직에서 직포분야로의 방향 전환도 점차 이루어 져 갔다. 1905년에는 맹갈분할령에 반대하는 민족운동이 고양되었으며 영국 제품의 배척과 국산품애용을 내용을 권장하는 스와데시운동(Swadeshi Movement)이 전개되었다. 이 운동에 편승하여 인도 면업자본은 인도산 방직사를 이용하는 직포업에 진출하였다. 스와데시운동의 한 중심지가 근대적 면공업 빛 새래의 면 수공업이 발달한 봄베이였다 는 사실도 그러한 사정을 말해준다. 그리하여 스와데시 운동기에 영국 면제품의 수입이 반감된 결과는 대조적으로 인도 면공업은 다시 활력을 되찾아 생산을 확대하여 갔다

(Levkovsky, 1966:130-135).

<표 3-1>에서는 세계 제 1차 대전까지 식민지 인도의 공장제공업의 발달수준을 업종별로 예시하고 있다. 영국자본과 인도자본이 짐하는 비중을 공장수나 고용자수로 보면 영국자본의 경우는 쥬트공장, 쥬트 압축공장, 철도수리, 기계, 조선, 항만 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19세기적 식민지 개발의 특색을 엿볼 수 있다.

<표 3-1> 공장제공업과 영국계 회사의 지배비중(1915)

업 종	공장수	영국계공장수	고용자수	영국계회사고용자
방직	278	34	273.5	56.4
제당	30	8	7.8	3.5
쥬트공장	72	72	250.8	250.8
모직물, 카펫 등	23	2	11.9	5.2
조선, 항만시설	9	9	12.4	12.4
철도수리공장	83	(a)	79.6	(a)
기계, 철, 주조공장	94	(b)	39.4	22.8
타일, 기와	205	27	28.2	8.9
쥬트압축공장	112	(c)	26.3	(c)
제지	7	2	4.7	3.6
인쇄	102	17	16.7	4.6
정미공장	158	-	10.5	-(d)
유지공장	152	-	4.1	(d)
전 체	1,335(e)		772.6(천명)	460.6(e)

1) (a) 암도적 외국기업 (b) 철, 주조공장은 인도계 기업이 지배적임.

(c) 공장의 반수가 이상은 외국기업 (d) 근소 (e) 근사치

자료: Myers(1958:20)

한편 인도의 자본은 면공업, 모직물, 카펫공장, 기타 식품공장 등이 지배적이었다. 철주조공장에는 후술하는 타타(Tata) 철강회사가 포함되었는데 그 본격적인 발전은 1차대전 후에서나 보게 되었다. 1911년 센서스에 의하면 식민지 인도의 총인구는 약 3억 8천만이었는데 반해 공장수는 1335개, 고용자수는 77만 정도였으니, 공업화의 정도가 얼마나 빈약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⁴

4 이에 관해 베버(M. Weber)는 “인도에서 공장제 성립은 영국의 지배하에서 외래적으로 유입되었으며 그 범위도 무척 좁았다. 인도 자본주의는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수입 발전된 자본주의이다. 또 인도의 종교인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초세속적 가치관과 전통 고수주의의 카스트제도가 올바른 자본주의 정신의 형성을 저지했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이론체계는 소위 ‘베버의 인도론’으로 정식화되었고, 이후의 인도 경제사를 비롯한 많은 인도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수탈적인 식민지 체제의 와중에서도 조로아스터교나 힌두교, 보슬렘교를 믿는 인도 기업가의 손에

양차 대전간의 시기는 인도에서 영국 제국주의 약화시기로 이해할 수 있다. 제국주의 국가간의 군사적 대결은 제한적이나마 인도 산업의 발전계기로 작용했다. 유럽으로부터의 수입은 줄었으며 인도의 국내시장에서 생산되는 산업생산물수요는 급증했다. 인도는 전쟁 수요품인 황마, 텅스텐, 우모(mica), 초석(saltpetre), 원목 등 원료를 생산, 판매했다. 1918년까지 인도의 군수용품 총경비는 2억 5000만 파운드에 달했다. 이같은 군수용품 수요와 일본 및 미국자본의 인도시장 진출은 인도 국내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한편 1916년에는 인도 경제개발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인도산업위원회(Indian Industrial Commission)를 발족시키고 이어서 1917년에는 군사위원회(Council of Armaments)도 성립되었다.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모두 군사위원회의 통제를 받았으며 납품계약 및 철도수선 등도 동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면공업에서는 가는 실의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됨과 동시에 직포생산에서도 수입제품 및 국내 수공업제품을 능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군수품경기에 힘입어 고이윤을 올리는 것은 섭유공업이나 신흥 철강업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인도산업위원회는 이 점에 관하여 화학, 기계공업의 미비를 지적하고, 기존의 기업에 대한 보호와 금융적 위조를 정부에 요망했다(Medovoy, 1984:56-62).

그러나 1920년 전시 및 전후 호황의 반동으로 떨어닥친 불황은 약 2년 반에 걸쳐 인도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으며, 원료, 반제품 위주의 인도 상품에 대한 해외시장 수요감퇴와 영국제품의 수입증가가 루피화 시세의 하락을 초래했으며 인도 공업은 정체를 거듭했다.

한편 이 무렵 간디(M.Gandhi)에 의해 주도되는 제 1차 비폭력적 저항운동인 사트야그라하운동(Satyagraha Movement)이 전국적으로 전개된다. 당시까지 수차례에 걸친 정치적 파업을 경험한 바 있는 노동자계급은 이러한 민족적 저항운동의 고양기 속에서 1920년 최초의 전국조직인 전인도 노동조합회의를 결성하였지만 아직 부르조아적 지도체계를 극복하기에는 시기상조였다.

이어서 1922년 인도 최초의 본격적 공장법이 제정된다. 1881년의 제 1차 공장법 아래 1891년, 1911년에 제정된 인도 공장법은 노동자에게 극단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제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이 해의 공장법도 예외는 아니어서 불황기에 영국제품의 수출증가를 피하려는 의도에서 제정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한 법제화의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 공장법은 적용범위를 노동자 20명 이상을 고용하고 농력기계를 사용하는 공장에까지 확대하고, 1일 6시간 노동의 아동연령을 12-15세로 높였으며, 성인 남녀에 대해서는 1일 11시간, 주 60시간제를 제정하였다. 동시에 당시까지 미적용대상이었던 철도관계 노동에도 적용되었으며 광산업에도 일부 적용되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전국적 조직화와 본격적 공장법 제정의 움직임은 인도에서 근대적 산업의 일정한 보급과 노동자계급의 성장을 반영하는 것이었다(Tomlinson, 1975:337-77).

영국은 불황이 절정에 달했던 1921년 인도정청에 대하여 영국의회의 직접적 승인을

의해 면공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Weber,1983:147,448-449).

반지 않고 재정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재정자주권을 부여했다. 이에 입각하여 같은 해 인도정부는 영국, 인도 양국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정정책에 관한 자문을 의뢰했다. 이 위원회의 답신 보고서는 다음 해에 발표되었는데, 인도측 위원 5명은 그 보고서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인도 공업에 대한 더욱 강력한 보호정책의 실시를 요망했다. 재정위원회 보고서에서 요구된 상설 관세국의 설치와 19세기 말 아래의 면제품 내국소비세의 폐지는 각각 1923년과 1925년에 실시되었다.

재정위원회의 인도측 위원이 강력히 요구한 보호정책은 수정된 형태로서 철강생산에 대하여 취해졌다. 타타 철강회사는 1924년 및 1927년의 제 1차, 제 2차 철강보호법에 의한 보호관세와 보조금의 적용을 받은 결과, 1930년대 초에 철강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섰으며, 제 2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대규모 독점체로 부상했다. 이어서 면공업, 성냥제조업, 제당업, 시멘트업 등 11개 업종이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보호법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 보호정책에는 세계자본주의에서 그 상대적 지위가 저하된 영국 제국주의가 자국제품의 인도 수출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조치를 취함으로써 미국, 일본의 인도 진출을 배제하려는 목적이 있었으며, 또한 그것은 인도지배의 유지를 위한 기준질서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는 영국 식민지당국과 인도 부르주아간의 타협의 산물이었다고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이 보호정책은 이미 어느 정도 이상 성장하여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산업부문에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실제 보호대상이 되는 일부 부문의 공업과 미발전된 공업부문 간의 격차를 증대시키고 결국, 인도의 전 공업분야에 걸친 자본주의적 발전을 저해하였다. 더욱이 보호법 적용을 받는 부분의 공업에서도 실질적으로는 대기업만 보호를 받아 그 생산과 자본의 집중화를 촉진하게 되었기 때문에 인도 자본주의의 기형적, 편향적 발전을 야기했던 것이다.

1929-33년의 대공황이 인도 공업에 준 영향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편이었다. 그것은 인도기업이 면제품 등의 공업제품 판로를 국내시장의 재확대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또한 대공황기에는 제 2차 비폭력 저항운동이 전개되어 국산품 장려운동이 전개되었다. 뱅갈투쟁과 결합된 스와데시운동에서나 1919-22년의 제 1차 비폭력적 저항운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도경제, 특히 근대적 공업이 곤란에 직면한 시기에 그러한 민족운동이 전개되었다는 것은 실로 주목할 만 하다(Gadgil, 1942:114-15).

그러나 수출총액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농산물 등 1차상품의 국제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농민이나 농업노동자들은 심한 타격을 받았다. 또한 공황기인 1932년에 열린 오타와회의에서는 제국특혜관세제도를 채택하여 차별적 보호관세를 급격하게 강화하였으나, 그것은 영국을 중심으로 한 블럭경제 속으로 인도가 깊이 편입되어감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했다.

2. 경영대리제도

중화학공업, 기계공업 등 생산재 생산부분의 취약성이라는 문제를 내포한 채 편향적

발전을 이루한 인도자본은 대공황기를 분수령으로 하여 자본의 집중화현상을 강화하면서 초기적 독점단계로 나아갔다. 여기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앞에서 말한 보호정책 이외에도 경영대리제도(Managing Agency System)가 있었는데, 이는 영국이 인도 자본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기 위하여 창출한 것으로서 결국 인도의 대자본도 그것을 모방하여 채택한 것이었다.

경영대리제도의 내용은 극히 복잡하고 그 기능도 다양하다. 경영대리회사는 주식회사와 소정의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경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인수하여 그에 대해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영수탁기관이다. 경영대리인은 위탁회사에 대한 주식 출자를 통하여 주주총회의 주도권을 장악할 뿐 아니라 당해 회사에 대해 어느 정도의 규율조달도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위탁회사 그 자체는 완전히 이의 배당을 기대하는 주주의 단순한 집단으로 전락하고 사실상 경영대리회사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경영대리회사는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회사 창립을 위한 주식증보나 회사 설립후 은행에서 받는 금융도 주로 경영대리회사 자신의 신용에 기초해서 비로소 가능했다(小池賢治, 1979:1-5). 이같이 경영대리회사는 영국자본을 인도에 수출하고 인도 주식회사를 경영하며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당시 인도의 은행제도는 조직화되지 않았으며 주로 경영대리회사를 통해 신용이 유통되었다. 그러나 보니 경영대리회사의 증개를 통해 이뤄진 대부분이자는 직접 은행대부보다 약 1-2% 정도 높기 마련이었다. 또 설사 자금 수요기업이 직접은행을 찾아가더라도 경영대리회사의 보증 없이는 대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영대리회사는 이렇게 기업의 모든 활동을 장악했으며 해외 판로에 대한 무역도 통제했다. 인도의 회사들은 독자적으로 그들의 상품을 팔 권리도, 기계나 장비를 구입할 권리도 없었다. 모든 회사의 활동은 경영대리제도의 손을 거쳐야만 이뤄졌다. 때문에 경영대리회사는 이를 빌미로 삼아 회사로부터 자연스럽게 커미션을 취할 수 있었으며 총판매량 혹은 총이윤에 대해 일정 비율 만큼을 수취했던 것이다.

이렇게 영국은 경영대리제도라는 독특한 채널을 통해 독점금융자본의 독특한 형태를 인도에 정착시켰다. 인도 대자본가들은 이같은 수탈구조에 쉽게 융화되었으며 무역이나 고리대업을 통해 자본을 축적한 지방 부르주아들도 경영대리제도를 큰 저항없이 수용했다. 경영대리제도는 인도의 기업가와 고리대 자본가에게 나름대로의 자본축적 기회를 제공했으며, 나아가서 이는 영국 제국주의의 직접 지배로부터 나오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무마시키는 역할을 했다(小池賢治, 1979:15-48).

지방에서는 인도인 소유의 경영대리회사가 속속 설립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타타(Tata), 비를라(Birla), 달미아(Dalmia), 싱하니아(Singhania)그룹의 경영대리회사를 들 수 있다. 그들의 역할도 영국의 경영대리제도와 다를 바 없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것들이 영국 경영대리회사에 종속되어 있었다는 점일 것이다(Rungta, 1970:65-86). 인도의 기업을 통제했던 경영대리회사는 인도에서 토착자본과 해외자본을 묶는 독점기업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자본의 집중이 심화되었다. 이같은 경영대리제도를 통한 집중과정은 특히 1930년에 급속히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독점은 자본의 집중뿐만 아니라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를 높이는 생산의 집적으로 나타

난다. 그러나 인도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녹점은 생산의 집중을 기본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경영대리제도에 종속된 주식회사를 기초로 이뤄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주로 화폐의 유동영역에 국한된 자본의 집중이며 생산의 집적을 수반하지 않은 특수한 식민지적 형태를 지닌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본의 규모가 증가한다는 것은 결코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가 고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경영대리제도에 의해 통제되는 기업 수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다(Basu, 1958:25-30).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독점이 높은 생산집중도를 가지고 전개되며 각 독점그룹마다 특화하는 업종이 있었던 반면 인도 독점기업에는 그같은 특화업종이 존재하지 않음이 그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즉 독점기업 계열회사 업종이 너무나 다양해서 독점체 안에서 협력과 발전의 가능성이 사실상 배제되었다. 예를 들어, 비를라그룹에 의해 주도된 경영대리회사는 8개 섬유회사, 은행, 신문-힌두스탄 타임즈지, 리더(The Leader)지, 바라트(Bharat)지—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인도의 가장 큰 재벌인 타타그룹은 철강, 기관차, 농기구, 섬유, 전력발전소, 시멘트, 페인트, 석용유, 비누, 운수회사, 방송국, 호텔 등 다양한 업종에 손을 뻗치고 있었다(Sengupta, 1974:122-45).

유럽과 미국에서는 독점이 생산의 자본주의적 방법의 결과로 나타난 반면 인도에서는 자본주의의 발전이 시작될 무렵 생겨났던 것이다. 경영대리제도는 독점의 한 형태로서 인도산업의 생산력 발전에 대한 중요한 장애요소가 되었으며, 영국자본에게 많은 이윤이 돌아가게끔 운용함으로써 인도의 자본축적을 저해하고 독립적인 경제개발을 억제했다(金田近二, 1960:12).

이렇게 형성된 인도의 대부분주의는 그 자본축적의 원천에 있어 초기적 독점화라는 자신의 계급적 성격상 영국 제국주의와의 타협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 계급적 이해는 제국주의와 일치하지 않았다. 대공황기 이후 인도 부르주아가 장악한 기계제 대공업을 주도세력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제도가 확립된다.

3. 파행적 산업 발전

1차 세계대전의 결과 인도에는 일부 특정산업에서 대자본가가 생겨났으며 제한적이 나마 자본의 집중과 집적이 이루어졌다. 1921년 센서스에 의하면 인도에는 11,000개의 공장과 260만명의 노동자가 있었는데 이는 1911년과 비교해서 공장수는 약 8배, 노동자 수는 약 3배 늘어난 수치이다. 단 여기서 공장이라 함은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을 의미하므로 대부분 영세규모였다. 그러나, 전쟁기간 및 전쟁 후 기간에도 인도산업구조에서 근본적인 질적 전환은 없었다. 소규모생산은 계속되었고 본격적인 중화학 공업의 발전은 존재하지 않았다. 산업의 식민지적 구조는 바뀌지 않았으며 제국주의는 여전히 면에서 산업발전을 저해하였다.

찬드라(Chandra, 1982:518-20)의 추계에 의하면 식민지 인도의 국내순생산은 <표 3-2>와 같으며 20세기초의 5년간과 식민지 시대 최후의 5년간의 연평균치를 비교해보면 68.0% 신장되고 있으며 제 2차 산업 구성비도 1920년대 이후 눈에 띠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2차산업중 제조업 분야만을 살펴보면 <표 3-3>과 같다. 동 기간중 공업생산은 122% 상승하고 특히 공장제 공업은 5배 정도 상승했으며 제2차 세계 대전기에는 소규모 가내공업 생산량을 상회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독립 후 인도공업화 속도에 비하면 무척 완만한 것이지만, 국내 순생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의 상승도 농업생산의 정체적 경향에 의해 증폭되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으며, 이는 중요한 경제구조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표 3-2> 1900년대 이후 국내 순생산의 변화(1900-1947)

	연평균국내순생산 (100만 루피)	부문별구성비(%)		
		제1차산업	제2차산업	제3차산업
1900-01 ~ 04-05	1,502	63.6	12.7	23.7
1905-06 ~ 09-10	1,575	61.7	13.5	24.8
1910-11 ~ 14-15	1,730	60.1	13.9	26.0
1915-16 ~ 19-20	1,766	59.6	13.7	26.7
1920-21 ~ 24-25	1,844	57.4	13.4	29.2
1925-26 ~ 29-30	2,050	52.1	14.9	33.0
1930-31 ~ 34-35	2,131	51.4	15.8	32.8
1935-36 ~ 39-40	2,250	49.9	16.4	33.7
1940-41 ~ 44-45	2,501	47.8	16.7	35.7
1942-43 ~ 46-47	2,524	46.0	16.9	37.1

주: 1) 생산액은 1938-39년 가격기준이며 2차산업에 광업, 건설업이 포함됨.

자료: Chandra(1982:519)

<표 3-3> 1900년대 이후 부문별 공산품 산출액 추이 변화(1900~1947)

(백만루피, %)

	공장제공업(1)	소규모가내공업(1)/(2)	
1900-01 ~ 04-05	453	1,364	33.2
1905-06 ~ 09-10	593	1,401	42.3
1910-11 ~ 14-15	621	1,631	38.1
1915-16 ~ 19-20	678	1,572	43.1
1920-21 ~ 24-25	733	1,589	46.1
1925-26 ~ 29-30	967	1,908	50.7
1930-31 ~ 34-35	1,073	2,133	50.3
1935-36 ~ 39-40	1,531	2,162	70.8
1940-41 ~ 44-45	2,279	1,532	148.8
1942-43 ~ 46-47	2,480	1,553	159.7

주: 1) 생산액은 1938-39년 가격기준이며 5년간의 평균치를 나타냄.

자료: Sivasubramonian(1977:491-92)

〈표 3-4〉 주요 공장제 공업의 산출액의 일종별 구성(%)

(1938-39년도 가격기준)

	순생산량			고용자수		
	1913-14	1938-39	1939-40 ~46-47	1913-14	1938-39	1946-47
면공업	36.2	29.0	23.2	28.3	23.8	18.4
황마공업	15.0	8.0	5.3	23.5	15.9	11.8
제당	1.6	3.4	4.1	-	-	-
제지	0.4	0.5	0.6	0.5	0.5	0.8
시멘트	-	1.0	1.1	-	0.7	1.0
모직물	0.3	0.3	0.5	0.4	0.6	0.7
철강	0.8	4.4	3.6	0.9	1.1	0.8
성냥	-	1.2	0.8	-	0.9	0.7
소세	54.3	47.8	39.2	53.6	43.5	34.2
기타산업	45.7	52.2	60.8	46.4	56.5	65.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생산액 1)	635	1,701	2,259			
고용자수 2)				92	185	265

주: 1) 백만 루피 2) 만 명

자료 :Morris(1990:641-43)

한편 〈표 3-3〉과 〈표 3-4〉를 통해서 공업화의 진행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1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생산량과 고용자수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던 면공업과 황마공업은 2차 대전기를 고비로 그 비중이 저하되었으며 특히 황마공업의 쇠퇴는 주목할 만하다. 반면 철강, 제당(製糖), 시멘트, 제지, 성냥공업 등이 번성했다. 당시 인도 국내시장은 매우 좁았기 때문에 면직물이나 제당, 성냥공업은 이미 자급수준에 도달해 있었으며, 시멘트공업은 이미 과잉생산의 기미마저 보일 정도였다. 이외에도 독립시까지 합금, 비철금속 등의 금속공업 및 공작기계공업, 디젤엔진, 면업기계, 기관차 제조 등의 기계공업, 의약 및 화학공업, 자동차공업분야 등에서 새로운 진전이 있었지만 전체의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조짐은 인도 독립 후 공업화과정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제한적이나마 이같은 공업화 촉진요인중의 하나로서 작용한 것은 1, 2차대전 및 양차 전쟁중에 시작된 바이 브리티쉬(Buy British)정책의 완화, 1920년대 아래의 특혜 보호관세등을 들 수 있다. 이같은 요인들에 의해 식민지 인도에 대한 영국의 경제적 지배가 약화되기 시작했으며 인도기업가의 적극적 활동의 기회가 왔던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같은 일련의 변화는 '적극적 공업화정책으로의 전환'이라기보다는 '공업화 억제정책의 완화'라고 표현함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인도는 고유한 기계산업을 갖지 못했으며 기타 중요한 중공업분야에서는 이

령나 할 발전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같은 낮은 단계의 산업 발전수준에서는 상인자본과 고리대자본이 지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규모 생산업자들은 시장과 직접 연계되지 못하고 중간상인이나 고리대업자의 손아귀에서 조정되기 일쑤여서 독립된 판로를 가지지 못한 채 중간이윤을 착취당하곤 했다.

한편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인도 산업성장의 과실은 일차적으로 영국 부르주아 계급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인도의 새로운 공장들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또 인도 주식회사의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산업중 특히 발전한 분야는 황마, 철광, 석탄, 금광 등 영국자본이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분야이다. 특히 황마공장은 1913년에서 1920년사이에 64개에서 76개로 늘었으며 황마 상품의 수출량도 두배로 늘었다. 석탄의 생산도 동 기간중 1,620만톤에서 2,260만톤으로 증가했으며, 망간, 은, 납, 아연, 철광 생산도 급속히 증가했다. 한편 인도 특산인 차(茶)의 수출도 늘어났다. 전쟁시기중 영국자본가는 무의 축적을 가속화했으며 영국의 투자액은 급증했다(Gadgil, 1942:203-13).

전쟁기간중 인도자본의 지위도 일정 정도 강화되었으며 국가산업의 발전도 이뤄지고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커졌다. 또한 국내 자본의 지위도 강화되기 시작했으며 국내시장에서 영향력을 서서히 넓혀 나갔다. 특히 면제품 시장에서 영국의 탕카서는 더이상 인도의 시장에 면제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되었다. 인도의 면제품 수입은 1913 - 1919년 간에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고, 반면에 생산은 27% 가량 증가했다.

철강산업의 경우도 전쟁 특수로 말미암아 큰 성장을 이뤘는데, 특히 타타그룹은 철강업종에서 인도의 주요 재벌로 부상하게 되었다. 철강생산은 1913년 19,000톤에서 1918년 124,000톤으로 급증했으며, 그것의 2/3를 타타그룹에서 생산하고 있었다. 또 시멘트 공업도 급속히 육성되었으며, 황마 및 차산업도 발전되었다. 오늘날 타타그룹과 쌍벽을 이루는 비를라(Birla)그룹의 창시자인 비를라(G.D.Birla)가 쥬트무역에서 축적자금을 이용해서 영국자본의 독부대였던 쥬트공업에 참가한 것은 1919년의 일이었다.

제 1차 대전 후의 경제환경의 변화에 인도기업기축은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투자활동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해외시장에 대한 수출산업과 무역, 선박, 금융업 등은 여전히 영국자본의 지배를 받았으나 인도자본은 국내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수입대체적 공업이

〈표 3-5〉 민족계열별 회사의 자본금 총액비율(%)

	영국계회사	인도계회사	합자회사
1914	65.4	20.9	13.7
1920	59.2	24.9	16.0
1930	44.1	32.8	21.1
1940	41.1	30.8	28.1
1947	26.3	51.6	22.1

자료: Ray(1979:52)

나 쥬트공업, 차산업 등의 수출산업에도 일정 부분 진출했다.

〈표 3-5〉에 나타난 각 민족별 지배회사의 자본금 총액비율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14년부터 1947년까지 영국계회사는 65.4%에서 26.3%로 대폭 저하된 데 비해 인도 계회사는 20.9%에서 51.6%로, 합작회사는 13.7%에서 22.1%로 상승했다(특히 독립 직전 영국자본의 퇴조를 보라).

식민지 인도에서 인도 대기업 형성의 특징은 영국 지배하의 상업적 개발과 함께 진행된 상품경제의 확대와 함께 자본축적을 한 상인이나 고리대입자층이 주도했다는 점이다. 때문에 근대공업에 진출했어도, 상업이나 금융업을 같이 경영하는 경우가 많았고 상업자본으로서의 성격이 여전했다. 비교적 빨리 산업자본으로서 성장한 타타그룹의 경우도 이같은 성격을 아주 빛은 것은 아니었다. 공업화의 초기단계에서는 각 기업들이 시장의 협소화에 직면해서 가격 카르텔이나 신디케이트 등을 형성하여 1930년대에는 일련의 독점적 조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양차대전 과정에서 인도 자본가계급은 자본의 집중과정을 가속화했다. 1000만 루피이상의 자본을 소유한 대기업의 경우 종주식자본이 1939년 20%에서 1945년 61%로 증가했다. 주식회사수도 1945년에 거의 15,000개로 되었으며 그들의 납입자본도 1939년 30억 루피에서 1945년 40억루피로 증가했다(Government of India, 1956:436).

전쟁기간중 인도는 과기 200여년간에 걸쳐 영국에 진 부채를 거의 탕감하게 되었다. 1939년 인도의 대 영국부채는 47억루피(3억 5천만 파운드)였으나 1944년 이것은 3,800만루피(28만 파운드)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영국은 인도의 원재료 공급에 대해 직접 결제를 하지 않고 식민지 착취의 결과 축적되어간 인도의 대 영국 채무를 탕감해 나가는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결국 인도인에 의한 일방적인 원료제공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45년 8월에 가서 인도는 영국에 대한 채권국으로 바뀌었으나 이는 인도경제 착취의 대가였으며, 민중의 민관과 자원 및 인력의 가혹한 수탈, 치솟는 인플레, 생산력 발전의 정체 속에서 진행되었던 것이다.

4. 외국자본과 금융지배

전쟁의 와중에서도 인도의 주요 독점자본들은 해외자본과의 결속을 강화해 나갔으며, 소위 합작회사의 형태로 발전되었다. 가장 처음 나타난 합작회사는 힌두스탄 모터스(Hindustan Motors) 기업인데, 이는 비를라그룹과, 스튜데바커사(Studebaker Cooperation)의 합작으로 이뤄졌다. 퍼미에르 자동차사(Permier Automobile)는 브로찬드 히라찬드사(Vlochan Hirachand)와 크라이슬러사(Chrysler Corporation)의 합작으로 이루어졌다(Bagchi, 1972:25-47).

미국자본도 190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인도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1920년에는 이미 미국 국제은행위원회 (American International Banking Cooperation)와 포드사, 제너럴 모터스사 등은 인도에서 그들의 지사를 가지고 있었다. 1948년까지 인도에 대한 미국의 총자본 투자액은 1억 8천만 루피에 달했고 미국자본은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차관과 위

조의 경로를 통해 인도 국민경제에 침투해 갔다. 전쟁 전까지 미국이 인도의 수입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0% 및 8.0%였는데 이것이 전쟁 후에는 급속히 증가해서 1945년에는 인도의 해외무역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5%에 육박하게 되었다(Melmen, 1963:65-70).

인도 국내시장에 대한 지분을 노리고 진출을 시도했던 나라는 미국만은 아니었다. 동기간중 영국은 일본, 독일 등에 의해서도 인도시장을 서서히 잠식당하기 시작해서 1929년에서 1932년 사이에 인도의 해외무역중 영국이 차지했던 비중은 42.8%에서 32.5%로 하락했다. 특히 일본은 면제품분야에서 영국의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데 성공했다. 1913년 당시 영국과 일본의 면제품시장 점유율은 각각 97.0% 및 0.3%였는데, 1932년에 들어오면서 일본의 비중은 47.3%로 크게 증가했다. 독일도 역시 그들의 시장점유율을 높여 나갔다. 이에 대해 영국은 자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하고 비 영국산제품에 대해서는 과중한 보호관세를 부과했다. 결국 인도는 양차대전간의 짧은 기간 안에 실질적 산업화를 이루하기는 불가능했고, 더우기 전쟁 중에 축적된 인도 부르주아의 막대한 이윤마저도 생산적 산업분야에 투하되기보다는 차 재배라든가, 토지 등의 비생산적 분야에 투하되었다(Mcdovoy, 1984, 130-35).

또한 인도자본의 투자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엔 해외자본이 지배하고 있었다. 특히 수송분야, 해외무역, 규융, 신용 분야에서는 영국이 독점적 지위를 계속 유지했다. 1926년에는 819개의 해외기업이 인도에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들 회사의 총 자본이 74억 루피(554백만 파운드)였던 반면 5,311개 인도회사의 총 자본규모는 27억루피에 불과했다. 이같은 수치로 미뤄 볼 때 외국자본의 지배적 비중 뿐 아니라, 인도회사의 상대적 소규모성을 알 수 있다.

전쟁기간 중 많은 부를 축적한 일부 인도 부르주아 계층은 민족해방운동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영국행정부로 하여금 인도상품 보호정책을 폄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영국당국은 1921년 기존의 인도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화시켜 주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영국제품의 국제경쟁력에 손상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 한정되었음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인도 내에서도 차츰 반영의식이 자리잡아 나가게 됨에 따라, 영국자본의 인도 지배 양상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즉 영국-인도 합작회사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인도내에서 짹트고 있는 저항의식을 누마시키는 새로운 통제방법을 도입하게 되었다. 영국은 이러한 합작의 방법을 통해 인도의 부르주아계층을 좀 더 확실히 그리고 눈에 안 띠게 제국주의의 손아귀에 묶어 두려는 의도를 꾀했던 것이다(Bose, 1965: 504-8).

1927년은 인도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해였다. 영국의 힐튼 영 위원회(Hilton Young Commission)의 권고에 따라 루피화의 대 파운드화 환율이 루피당 16펜스에서 18펜스로 평가절상됨에 따라 인도상품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영국제품의 수출은 급격히 늘게 되었다. 산업성장 속도는 눈에 띄게 정체되었으며 무역수지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1929년의 대공황의 여파는 인도에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영국은 공황의 사회 경제적 부담을 인도의 회생으로 반감시키려 했다.

대공황기간 중 대부분의 자본주의국은 외채에 대한 상환 지불정지를 선언한후 외채 상환을 중단했으나, 인도는 계속 영국에 대한 빚을 갚아 나가야만 했다. 식민지 기간중 인도가 축적했던 금은 거의 영국으로 빼져나갔으며 이러한 인도의 금은 공황기간중 영국의 본위제도를 지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Narain, 1934:102). 또한 당시 인도의 수출품은 1차 원료중심이었으며 또 대부분 농촌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경제공황은 주로 농촌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영국은 새로운 국제적 여건과 인도 민족의 동향에 대처하면서 식민지 통치에 필요한 여러 정책을 수행하여갔다. 그 전형적인 것이 영국 금융자본에 의한 인도 은행제도의 재편이었다. 1920년 캘커타, 봄베이, 마드拉斯의 세 관구은행을 합병하여 자본금 900만 파운드의 ‘인도제국은행’(Imperial Bank of India)의 설립이 결정되고 1921년에 문을 열게 되었다. 당초 이 은행은 통화발행과 일반 상업은행 기능을 겸한 중앙은행으로 구상된 것이었으나 1931년 이후 금본位제에서 이탈한 영국이 1935년에 ‘인도준비은행’(Reserve Bank of India)을 별도로 세우고 중앙은행으로서의 권한을 준비은행에 이관하였다. 그 결과 ‘인도제국은행’은 상업은행기능을 중심적 업무로 하면서 인도 전체 은행 예금액의 3분의 1정도를 보유하는 거대 은행으로 유지되었다. 한편 ‘인도준비은행’은 통화의 발행과 관리, 외환업무, 정부의 은행 등의 권한을 갖는 중앙은행으로서 영국 정부의 통제를 강하게 받았다(Reserve Bank of India, 1970:3-39).

위의 두 은행 이외에 본점을 외국에 둔 몇개의 외국환은행이 있어 주로 무역상의 금융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전체 은행예금총액의 약 5분의 1을 장악하였다. 한편 준비은행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밋형의 은행체계에서 저변에 위치한 것으로서 인도 주식은행이 있다. 인도자본이 은행자본으로서 활약할 수 있는 여지는 이런 종류의 은행에 국한되었으며, 그러나 대부분의 은행은 외국자본의 영향력 내에 있었다. 또한 인도자본으로 이루어지는 은행은 매우 불안정하고 도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예금유치액도 빙약할 수 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영국의 금융자본은 인도경제의 중추부인 은행을 완전히 지배하였다. 인도 국내자본은 양차 세계대전 사이에 크게 발전하였지만 그것은 학정된 부문에서의 부분적 발전이고, 은행자본으로서 그 성장은 매우 뒤떨어졌다. 영국은 이러한 은행지배를 통하여 식민지수탈을 관철하고자 하였다.

한편 당시 인도에서는 외국자본이 전반적 산업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었으며 1933년에는 901개의 해외회사가 110억 루피의 납입자본을 가지고 있었다(이는 약 8억 파운드였으며 인도주식회사 납입자본의 4배). 한편 당시의 인도내 해외자본 투자액은 133억 루피(11억 파운드)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해외자본의 실제 크기를 나타내는 데엔 적당치 않다. 왜냐하면 인도 바깥에 등록한 회사만이 외국회사로 등록되어 있을 뿐, 인도 내에서 위장등록하여 ‘000인도주식회사(000 India Ltd.)’등의 이름을 붙인 회사는 전혀 추적이 안되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자본은 계속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인도 회사들은 영국 금융자본의 영향력을 떨쳐내지 못했다(Melmen, 1963:80-92).

제 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영국의 경제적 지배는 완화되었으며 이는 인도 국내자본

의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되었으며 인도자본의 상대적 발전과 생산, 자본의 집중화가 더욱 진행되었다.

전쟁 특수의 증대 및 영국제품 수입 감소에 의한 국내시장 확장을 배경으로 하여 면제품, 황마, 석탄, 철강 등의 공업생산이 급격히 상승함과 동시에 새로이 조선, 항공기, 전차 등의 군수관련 기계공업 및 화학공업이 발전하여 당시까지 낙후되어 있던 중화학공업부문의 개발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도 부르주아지는 제 1차 세계대전기에 놓지않은 마대한 이윤을 손에 넣었다. 그러나 서구로부터의 기계수입이 금지된 결과 많은 공장이 구식의 기존설비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2차 대전 빌기부터는 오히려 생산이 저하되는 공업부문이 많았다(Medovoy, 1984:86-96).

한편 2차 대전 말기부터 시작되어 전후에 과열된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노동자나 농민, 수공업자에게 견디기 어려운 생활난을 강요하였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절적 고양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 정부의 정치권력은 부르주아지가 지도권을 갖는 국민회의파에 이양되었다.

5. 농업의 정체와 농촌 사회 변화

양차 대전 기간중 상품-화폐관계와 자본주의는 비교적 활발히 발전되어 나갔으나 이와 동시에 농업부문에서 자본주의와 봉건제 간의 모순도 심화되어 갔다. 인도 농촌에서 봉건제의 산재는 여전히 강고히 남아있었고 또한 이는 영국 제국주의의 도움을 받으면 존재해 왔다. 인도자본주의의 발전은 왜곡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농촌부문에서 봉건적 착취관계를 없애기보다는 오히려 봉건제도와 뒤섞인 채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농민에 대한 착취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많은 농민이 토지를 잃게 되고, 식민지당국의 옹호아래 진행된 지주계급의 끊임없는 착취는 농업생산력을 파괴시켜 농촌에는 빈곤과 절주림이 만연되었다. 당시 인도의 가장 중요한 생산단위인 토지는 소수의 지주나 고리대업자, 부역업자의 손아귀에 집중되어 있었다. 양차 대전 기간중에 농민의 토지상실은 놀랄만한 비율로 증가했다. 인도의 곡창지대라 불리는 편집과 뱅갈지역만 해도 1930년대에 70%이상의 농민이 토지를 잃고 빈곤에 허덕였으며 이같은 사정은 봄베이, 마드拉斯 등의 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더군다나 농민소유토지는 대부분 소규모단위로 흩어져 있어서 대량생산이 어려웠다. 이같은 소규모 경작으로 말미암아 생산력은 떨어지고 노동의 사회적 형성은 저지되었다. 자본의 사회적 집중과 과학의 응용 등은 불가능했으며 생산수단의 분화, 인력의 낭비, 생산조건의 악화현상이 만연되었다. 1931년 센서스에 의하면 식민지 인도의 농촌인구는 89.9%, 도시인구는 11.1%이며, 유업자의 구성비는 농림 및 목축 75.2%, 광공업 및 건설업 9.8%, 상업, 운수, 통신, 기타 서비스업이 14.9%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표 3-6>에서 보듯이 토지 소유자층은 지주 3.6%, 경지규모 2ha 이상 자작농 16.3%, 영세 토지소유자 9.0%인 반면 토지소유권을 갖지않는 농민층은 영세소작농 9%, 분의농이 24.3%, 토지없는 농업노동자는 37.8%로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농민은 전체 농촌인구의 71.1%에

(표 3-6) 식민지 인도 농촌사회의 계층구성(1931)

	인구수(백만)	%
I 농업취업인구	111	100.0
II 지대취득자	4	3.6
III 2헥타 이상 농지소유자	28	25.3
(a) 자작농	18	16.3
(b) 소작농	10	9.0
IV 2헥타 이하 영세경작자	37	33.3
(a) 영세토지소유자	10	9.0
(b) 분익농	27	24.3
V 토지없는 농업노동자	42	37.8
(a) 예속 노동자	3	2.7
(b) 불완전고용노동자	35	31.5
(c) 상용 자유노동자	4	3.6
VI 토지소유권 없는 농민총 1)	79	71.1

1) 소작농, 분익소작농, 농업노동자를 합한 결과임.

자료: Patel(1965:31)

답했으며 결국 대부분의 농민들은 최소한의 생계유지도 힘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같은 농촌의 대중적 빈곤은, 지주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지주층이 3.6%임에 반해 소작농 및 분익농은 33.3%로 자작농비율인 16.3%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농민총 구성에서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전체 농업인구의 37.8%에 달하는 대규모 농업노동자의 존재이다. 농촌부문의 농업노동자는 20세기 초엽 자본주의적 발전의 여파가 농촌에 밀려 들어옴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데, 1919년 농업노동자는 전체 농업부문 종사인구의 13%에 불과했던 반면, 1921년에는 그 비율이 26.2%, 1931년에 37.8%로 증가했다.

당시 농업노동자는 대부분이 반실업상태로 있으면서 영세 빈농과 함께 소작지주나 상층 자영농민에 고용되거나, 지역에 따라서 자본제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농장에 고용되기도 했다. 부재지주의 비중은 갈수록 증가해 갔으며 1930년대 말에 오게 되면 농지소유가 다음의 세가지 형태로 나뉘어지게 된다. 우선, 첫번째 그룹은 토지가 소작농에 의해 경작되지만, 종자는 지주계급으로부터 제공되는 경우이며, 두번째 그룹은 주요한 생산수단과 종자를 지주가 제공하고 소작인은 농사만 짓는 경우로서 비록 소작인이 고용된 농업노동자는 아니지만 자본주의 임노동자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경우이다. 한편 세번째 경우는 지주가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동시 농업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인데 이는 완전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이들 세 형태는 서로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식민지인도에서 지주계급에게는 소작을 내줌으로써 지대를 취하는 것이 직접토지를 경

작하는 것보다 유리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영농방식을 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지주들은 많은 경작지를 가졌기 때문에 자본가적 영농의 성장에 적지 않은 저해요인이 되었으며 또 자본가적 영농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자본투자보다도 과거의 기초 위에서 잉여생산물의 축적을 더욱 대규모로 하는 것이었다. 더우기 토지가격과 지대는 매우 비쌌기 때문에 토지를 빌려주는 것이 매우 수익성 있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발달해 온 상품—화폐관계와 자본주의 확산과 더불어 종래의 소작인은 임금노동자로 전락해 갔으며 그들의 주된 수입원도 노임이 되었다. 이같이 급속한 농업노동자 증가로 말미암아 임금은 하락하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농기계의 사용은 상대적으로 비싸지게 되어 결국 농촌의 값싼 임금이 인도 농업 생산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식민지 인도 내부에 존재하는 이같은 특징을 고려하면 장기에 걸친 인도의 농업정책 현상도 쉽게 이해가 간다. <표 3-7>에 나타난 1900~46년 간의 농업생산량 변화를 보면 동기간중 전체 생산량 증가율은 불과 21% 정도에 불과하며 특히 식량작물의 경우 4.6% 정도에 그치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식량작물의 생산성이 저하현상이다. 반면 면화, 황마, 사탕수수, 차, 인디고 등의 기타작물, 즉 상업작물의 생산량과 생산성이 각각 80.2% 및 36.9% 만큼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 3-7) 농업생산량과 생산성의 추이

	생 산 량(백만루피)			생 산 성(루피) 1)		
	식량작물	기타작물	합 계	식량작물	기타작물	합 계
1900~04	863	237	1,100	47.8	62.4	50.2
1905~09	864	253	1,094	44.7	57.6	47.2
1910~14	911	291	1,202	46.6	63.3	49.9
1915~19	925	309	1,233	46.9	67.2	50.8
1920~24	865	320	1,185	43.9	69.4	48.7
1925~29	837	380	1,217	42.8	70.6	48.8
1930~34	887	390	1,277	42.6	73.7	48.9
1935~39	869	440	1,309	41.7	78.6	49.4
1940~44	898	448	1,345	40.7	82.7	49.0
1942~46	903	427	1,331	39.7	85.4	47.8

1) 에이커당 생산량이며 각 수치는 5개년 평균으로 1924~29년 가격기준임.

자료: Sivasubramonian(1960:120)

이는 당시 농민들이 현금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식량작물의 생산을 회생시켜서라도 상업작물의 재배에 치중하지 않으면 않되었던 농촌의 빈곤과 농업기술의 정체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다. 또 상업작물의 생산성이 식량작물의 그것보다 높았던 이유는 당시 영국 식민지인 농업기술이나 농촌관개개발의 우선순위를 수출용 상업작물이나 공업

용 원료작물 재배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업작물재배로부터의 이익은 대부분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공장경영자나 중간상인, 지주계급 등에 귀속되었으며 농민의 생활수준은 더욱 악화되어 갔다.

농업생산력의 저하는 곧 식량수입으로 이어졌는데 세계 2차대전 직전, 인도는 무려 200만톤의 곡물을 수입해야 할 형편이었다. 이같은 농촌 경제의 파탄은 농민들을 비참한 곤궁의 늪으로 몰아갔으며 그 폐해는 2차 대전 전에 가장 극심했다. 이같은 상황은 곧 농촌지역에서 계급갈등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한 끊임없는 농민투쟁이 이어졌다. 특히 1936년에 설립된 전 인도농민연맹 (All-India Peasant Alliance-Kisan Sabha)은 당시 농민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다. 또, 이는 당시 인도에서 대부분의 투쟁을 주도했으며 정치역량의 성숙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에 따라, 영국 당국에서도 고조되어가는 농민운동을 무마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농업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이것이 식민지 인도에서 '제 3차 농업입법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소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는 영세지주들의 권리와 확장시켜 주면서 식민주의자들에 대한 저지기반을 넓혀 나가고 동시에 농민의 정치적 동맹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1939년의 토지법에 따르면 소작인에게 영주상속권이 주어졌으며 소작인들이 그들의 토지에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는 것이 허용되었다.

1939년 영국이 선전포고를 하고 2차대전의 당사국으로 깊숙히 관여하게 되면서 인도 경제발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가장 먼저 인도에 닥쳐온 문제는 식량부족이었다. 전쟁전 인도는 평균 5,200-5,300만톤의 곡물—쌀, 밀, 기장 등—을 생산한 반면, 국내의 수요는 적어도 5,500만톤 정도였다. 그래서 항상 200만톤 정도의 곡물을 버마나 타일랜드로부터 수입해오던 형편이었다. 그러나 1942년 버마가 영국에 의해 점령당하게 되자 인도는 곡물 주수입원을 잃게 되었고 인도지나 국가(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나 타일랜드로부터의 곡물수입도 중단되었다. 반면 전쟁에 깊숙히 개입된 인도는 자체군대 및 영국, 미국병력에 대한 100만톤 정도의 곡물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기근현상은 더욱 심하게 되어 인도의 거의 대부분 지역에 만연되었으며, 특히 인구가 많이 밀집된 벵갈, 마드拉斯, 비하르, 오르사, 아삼지방의 1억 2천 500만 민중은 배고픔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 와중에서도 곡물 중개상들은 농민들로부터 모아들인 곡물을 암시장을 이용하여 비싼 가격으로 매도함으로써 중간이윤을 착취하는데 급급했다. 정부의 불가인하 노력도 허사에 그치고 국가실시 배급제도 겨우 200만명 정도의 국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갔을 뿐이었다. 전쟁중 물가는 급상승하게 되고 국민의 생활은 더욱 빙곤해져 갔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자 농촌 고리대업자들은 현금으로 빌려준 돈에 대해 곡물로 되받음으로써 인플레를 피하는 방법을 쓰면서 부를 축적했다. 그 결과 농촌의 빈부 차는 더욱 벌어져 갔다. 또한 생산력 발전과 생산의 자본주의적 발전은 늦어지게 되었으며, 착취의 자본주의적 형태와 봉건형태가 뒤섞인 채로 발전되었다. 인도농업의 정체는 결국 경제의 전반 영역에 걸쳐 적지 않은 장애가 되었으며, 국내시장의 발전을 가로 막았다. 이에 따라 일어난 농민운동의 폭발은 새로운 '농업개혁'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Medovoy, 1984:96-120).

돌이켜 보면 대 인도 자본주의는 그 발생의 초기성에도 불구하고 발전양상은 지극히 과정적이었으며 전체 산업의 영역에서 보면 완만하고 규모도 매우 빈약한 것이었다. 그리고 영국의 산업자본 및 금융자본의 압도적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제국주의적 지배력이 일시적으로 후퇴한 제 1차, 제 2차 세계대전에 발전의 길을 발견하는 변칙적 과정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차대전 사이에 인도 산업자본은 제한적이나마 성장을 이룩하였고, 특히 대공황기 이후에 자본주의적 경제구조가 부차적인 여러 경제구조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으로 확립된다. 그 배경에는 제국주의 단계에 있어서 불균등발전에 의한 영국의 지위의 상대적 저하, 두번에 걸친 세계공황, 블락 경제체제에 의한 인도자본의 보호 등 국제적 요인 및 제 1차세계대전기의 자본축적, 민족운동의 고양, 타협적 산업 보호 정책 등 인도 국내적 요인이 있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제 2차 대전이후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구조에도 위기가 닥쳐오고 인도 민족들의 독립투쟁 열기가 고조되어 감에 따라 영국제국주의도 서서히 통제력을 상실해 갔다. 또한 인도의 민족해방투쟁이 사회주의적 색채를 띠어감에 따라 그 대책 마련에 부심하던 영국은 1947년 8월 15일을 기한 인도와 파키스탄 분리독립을 통해 식민주의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

마운트바тен 계획(Mountbatten Plan)에 의해 인도의 독립은 허용되었고, 인도는 둘로 갈라졌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독립은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요인이 앞섰다. 이는 정치적인 분할지배를 통해 영국의 안정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계획이었으며, 이로 인해 인도의 중요한 두 지역인 البن갈과 편집은 각각 두 나라의 영토로 나뉘어졌다. 인도, 파키스탄의 분리독립에는 수많은 민족의 학살과 희생이 동반되었다. 750만의 힌두교도들은 동 البنغال과 동편집에서 인도로 피난했으며 또 580만명의 모슬렘교도들은 파키스탄으로 피난했다. 영국 식민지 낭국은 양국의 분리 독립에 따른 혼란을 이용해서 반제국주의적 투쟁경로에 쐐기를 박을 수 있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할은 민족운동의 추진체로서 국민회의파가 갖는 종파적 성격에 그 중요한 원인이 있다. 제국주의는 이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다. 종교를 정치적 분리의 유일한 기초로 한 이 해결은 인도 민족의 나민족적 성격이 갖는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방식은 아니었으며, 한편은 회의파, 다른 한편은 회교도 연맹이라는 민족부르조아 지도자와 제국주의의 타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인도 부르조아지는 영국 지배하에서 인도경제의 지도적 세력이 되었으며 민족운동에서도 기존의 국민회의파에서 혜개모니를 장악했다. 부르조아지는 인도 민족운동을 자신들의 방향으로 조직하려 했고 그들의 주도하에 국민회의파에게로 정치권력이 이양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본원적 축적의 주요과정이 미완결적인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 당시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인도·파키스탄 분리독립의 결과 양국경제는 악화일로의 과정을 경험했다. 파키스탄의 경우, 총 인도지역의 14.9%, 인구의 17.7%를 차지했는데 이 지역중 주로 농산물 재배지가 많은 결과, 인도 밀생산의 35%, 쌀의 32%, 삼마의 80%, 면화의 35%를 지역내에서

산출하고 있던 반면, 공업시설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더욱기 둥, 서로 양분된 파키스탄은 양 지역간의 거리가 1300Km나 떨어져 있어 자국내의 운송에도 큰 불편을 겪었다(西口章雄, 兵口恒夫, 1990:18-24).

인도는 석탄산업, 철강, 섬유, 사탕정제, 시멘트, 홍차, 철로, 항만 등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심각한 식량난에 허덕이게 되었다. 결국 분리독립으로 인해 각 지역간에 전개되었던 경제적 연계는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세계자본주의 시장체계로 깊숙히 편입되어 나갔다.

IV. 인도의 독립과 계획적 공업화

1. 독립 직후 사회 경제 상황

1947년 8월 15일, 인도의 독립과 함께 국가의 권력은 국민회의파에 의해 장악되었다. 독립 초기 인도는 영국의 지배적 정치기구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다. 입법, 사법, 행정, 관료제, 경찰, 군대, 외교 및 대외조약 등 전반에 걸쳐 제국주의적 제도가 그대로 이어졌다. 노동조합과 농민조직에 대한 탄압은 독립 후 특히 1년 동안 격렬히 진행되었다. 수많은 노동자와 농민운동의 지도자가 체포 사살되었고, 대다수 토후국⁵의 인도연방 통합은 회의파 내 지주세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50년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고 1951년~52년에 걸쳐서 인도 최초의 총선거가 실시되면서 회의파는 압도적인 국민 지지 하에 지배 정당으로 자리잡게 되었다(Dutt, 1970:320-25).

그러나 200여년에 걸친 영국의 식민지 지배 하에서 전체 경제는 매우 침체되어 왔으며, 왜곡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독립 당시 인도의 국민소득은 865 억루피였으며 1인당 소득수준은 246.9루피(미국 달러화 기준 50달러)에 불과했고 평균 수명도 32-33세에 지나지 않았다. 후진국의 모든 정후가 인도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취업인구중 공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9%정도였고, 농업취업자는 7할(1951년)에 달했다. 산업 부문별 국민소득 분배율을 보면 농업소득이 49.1%, 제조업 및 광업부문이 17.1%, 철도, 운송및 기타 서비스부문이 33.8 %로 역시 1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Bettelheim, 1968:20-25).

5 이것은 영국의 직접적인 지배 하에 들어가지 않았던 지역이다. 영국의 지배가 활발히 확대되고 있던 19세기 전반까지는, 영국은 쇠퇴하고 있던 토후국을 점차 영국지배 하에 흡수해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했으나 1857년 세포이 반란을 계기로 영국은 이 지역의 봉건지배권력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독립 당시 영국은 토후국의 자치령 귀속문제를 토후국 의지에 맡기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되었던 것이다. 토후국을 인도 연방에 통합하는 문제는 1952년에 가시야 거의 모두 해결되었다. 565개의 토후국중 파키스탄에 귀속한 것은 12개국으로 그 인구는 분한 전 인도 전 인구의 4%, 인도에 귀속한 토후국은 550개로 그 인구는 인도 전 인구의 25%에 달했다.

또 농업생산은 기생적 지주에 의해 생산력의 발전을 방해받았다. 구 지주층은 농업생산의 혁신에 의한 생산력 확대에 대한 관심이 희박했으며 그들이 수취한 소작료는 농업생산에 환류되지 않았으므로 농촌은 폐폐해져갔으며 영세 소작농민이 광범위하게 펴져갔다.

식민지적 경제구조는 무역구조에도 현저히 나타났다. 1950년 전후의 부역구조를 보면 수출은 면직물과 황마제품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식품(홍차류)과 원재료(피혁) 등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수출공업제품중 황마제품의 생산, 무역은 대부분 영국자본의 지배 하에 있었다.

이같은 식민지적 후진성 속에서 성립되어온 인도자본주의는 독립시에 일방으로는 독점대기업의 형태로 발달되어온 인도 대자본의 확립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영토적 통일의 미완성—군사, 외교 이외에 상당한 자주권을 가졌던 지방통치의 잔존—, 정치적 농업생산에 의한 국내시장 애로, 파키스탄의 분리에 의해 한층 심각해진 식량 원료의 부족, 생산재 생산의 정체, 국내의 광공업 및 금융, 무역부문에서 지배적 외국자본세력에 의한 경제압박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여기서는 인도자본주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생산재 생산부문의 정체현상을 살펴 보자. 한 나라의 생산을 생산재생산과 소비재생산으로 엄밀히 양분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곤란하지만 여기서는 간단한 대용지표로서 공업구조의 발전수준을 시사하는 호프만 비율(Hoffman Ratio)을 사용한다.

전술한 1951년 센서스자료에 의해 1946/47년 인도의 호프만비율을 산출하면 3.5-3.4로 나타나고 있다. 즉 소비재 생산의 부가가치가 자본재 생산의 3.4-3.5배 정도라고 해석된다. 이는 영국공업의 1870-80년대, 일본의 1900년대 공업구조에 해당되며, 이러한 사실로부터도 소비재 공업 중심의 나후된 인도공업구조를 알 수 있다(伊藤正二, 1972: 100-104).

한편 생산재부문의 저발전은 높은 생산재 수입의존도에서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인도의 가장 중요한 공업인 면공업의 경우도, 거의 모든 기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1947년 당시 면공업용 기계의 수입액은 4,800만 루피에 달했다. 그 뿐만 아니라 자동차, 재봉틀 등의 내구소비재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수입량은 국내생산량의 10배). 이같이 당시 인도의 공업은 일부 경공업 소비재 경우에는 매우 발달했지만 그것을 직접 생산하는 기계는 거의 외국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국내 공업은 상호 유기적 관련을 갖지 못한 채 발전해가는 과정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2. 경제정책노선과 산업정책결의

한편 식민지 지배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운동을 주도하던 국민회의파의 부르주아들은 '민족 자결이 곧 독립된 국가권력의 획득'이라는 명제에는 모두 그 뜻을 같이 했으나, 일단 독립을 달성하자 인도경제를 과연 어떤 방향으로 재편할 것인가, 또 어떤 수단을 동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각의 주장이 달랐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첨예한 대

럼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국민회의파의 국가 경제정책노선에 대한 구상은 지나칠 정도로 애매모호한 동시에 비체계적이었다. 회의파는 1931년 카라치(Karachi)대회에서 경제강령을 결의했으나 이것도 역시 매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강령이었다. 특히 카라치강령의 제 15항 “국가는 기간산업, 서비스 광물자원... 등을 소유 혹은 통제한다”라는 조항을 놀러싸고 국유화의 대상, 범위에 대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그 후 1938년 회의파에 의해 설립된 국민계획위원회(National Planning Commission:NPC)에서는 1945년에 발표한 중앙의회 선거강령에서 “영국의 식민지 착취 결과 인도 민중은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게 되었고, 따라서 인도의 정치적 독립은 빈곤한 대중의 경제적 사회적 해방을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서 다음의 사항들을 규정했다.

즉, ①계획적 경제개발을 실시하고 소수자에게 무와 권력이 집중함을 방지함 ②기축 산업, 광업, 운수업 등은 국유화한다 ③자민다리제도의 폐지를 포함하는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농민적 토지소유를 확립하고 농촌협동조합을 점진적으로 도입함 ④농촌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촌락공업 육성 ⑤노동자를 보호하고 최저임금제의 정착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의회민주제에 기초한 협동국가(Cooperative Commonwealth)의 건설을 약속했다(中村平治, 1967:29-35). 이같은 협동국가의 이념은 간디의 영향을 많이 받아 들인 것인데, 이같은 국가목표는 독립후 1955년에 이르면 네루(J.Nehru)의 ‘사회주의형 사회’로 전환된다.

한편 같은 시기에 당 위원회의 사무국장이던 샤(K.T.Shah)의 계획안 및 타타 및 비를라그룹 대표 등 8인의 대기업 자본가⁶가 연명으로 낸 ‘인도를 위한 경제개발 계획’(A Plan of Economic Development of India: 일명 봄베이플랜), 로이(M.N.Roy)가 주도했던 인도노동자연맹 소속 전후(戰後)재건위원회의 ‘인도경제개발을 위한 인민계획’(People's Plan for Economic Development of India), 아그라왈(S.N. Agrawal)의 ‘인도를 위한 간디주의적 경제개발 계획’(The Gandhian Plan of Economic Development for India, 일명 간디안 플랜)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정책안들이 날카롭게 대립했다(Ray, 1979: 332-38).

대립된 견해는 특히 국민계획위원회안(NPC Plan)과 봄베이플랜(Bombay Plan)이었다. 이는 위원회 사무총장이었던 샤(K.T.Shah)의 급진적 계획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①모든 노동자는 충분한 보수를 받는다. ②계획경제 하에서 토지, 광산, 산림 등의 소유권은 국민이 가진다. ③토지개혁을 실시하고 농촌기생계급은 제거한다. ④농업 생산은 협동화로 재조직한다. ⑤기간산업 부문은 모두 국유화하며 사적 독점은 금지된다. 다만 기간산업에서 민간기업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는 공정한 보상을 지불해서 국유화한다. ⑥대규모 산업, 동력기계, 표준화된 대량생산체계를 갖는 신

6 여기서 8명의 기업가란 P.Thakurdas, J.R.D.Tata, G.D.Birla, A.Dalal, ShriRam, K.Lalbhai, A.D.Shroff and J.Matthai의 8명으로서 당시 인도 재계의 주도권을 가졌던 소수 독점자본의 대표사를 말한다 (Thakurdas et.al.,1944).

산업부문에서 민간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들은 국영기업으로 대체된다. ⑦모든 외국부역은 국영공사에 의해서 행해지고 국내의 모든 상업활동은 지방계획국의 감독하에 들어간다. 한편 로이에 의해 주도되었던 인도 노동자연맹의 계획안도 샤의 안에 다소 가까운 성격이다. 또한 아그라왈에 의한 간디주의 계획은 대중의 생활향상, 토지의 국유화, 수공업의 발전,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제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급진적인 면에서 샤의 안과 유사했으나 간디의 철학에 따라 농촌의 자급, 수공업의 우선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봄베이, 캘커타, 아메다바드, 텔리의 대표적인 인도 자본가그룹이 제시한 봄베이 플랜은 정부의 국유화 및 토지개혁에 대해서 이상의 세가지 안과 크게 대립하고 있었다. 즉, 그것은 기간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중점을 두고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본질적으로 인도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한 대자본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은 국유화보다는 통제의 형태를 취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지주제의 폐지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토지개혁의 실시도 완만히 수행할 것을 제시해서 대자본가와 농촌지주의 동맹관계를 반영해 주고 있었다. 요컨대 독립 후 경제계획의 구상에서 주요한 의견의 불일치는 ① 자민다리제 폐지의 방법(동 제도의 폐지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엔 불일치) ② 국가통제의 범위 및 국유화 업종에 관한 문제 등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결국 독립 후 회의과정권의 주요과제는 인도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재편 운영할 것인가하는 문제로 귀착되었다. 그것의 결정적인 방향은 1948년 4월 6일의 ‘산업정책결의’(Industrial Policy Resolution)에 나타나고 있다. 1948년 성명의 주요한 내용은 ①생산의 종점부문 설정 ②국가부문 창설 ③민간부문의 적극적 역할 ④노사 평화 ⑤자본 및 기술에 대한 외국자본개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국가부문의 창설과 국가개입의 산업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 산업을 다음 세가지로 나누어서 다루고 있다. 즉, ①중앙정부가 전면적으로 독점하는 부문; 무기, 군수품 제조, 원자력 생산과 통신, 철도, 수송의 소유와 경영 ②국가가 신규기업의 창설에 책임을 지는 부문; 석탄, 철강, 항공, 조선, 전화, 전신, 무선기기, 석유 ③그 외의 전 산업분야는 민간기업에 개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결의’는 외국자본 및 국내독점자본의 존재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 국가의 경제 활동에 대한 개입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인도 국가권력의 타협적 성격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또한 이는 이제까지의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던 정책논의를 급작히 수정, 결말짓는 계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국민회의파의 전국위원회가 1947년 11월에 ‘경제강령위원회’를 결성하고 소위 ‘위원회 권고’로서 전국 농촌을 ‘단일 협동조합체계’로 포괄하고 은행, 보험 등 모든 기존의 대기업을 5년 후까지 모두 국영공사화하고 국내의 모든 외국자본은 인도인의 지배하에 둔다는 등의 급진정책이 강력하게 제기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또 산업정책결의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은 국유화조치를 10년간 유보하며 필요한 경우 사기업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할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다만, 국방상 충

요한 산업은 모두 국영화하기로 하고 철강, 조선, 전화, 전선기계업 계통의 기업은 원칙적으로 국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10년간의 유보조건이 붙은 것은 ‘사기업의 접수’에 의한 국영화가 아닌, ‘신기업의 창설에 의한 국영부문의 설치’라는 코스를 상정한 것이다. 결국 이를 계기로 인도 전체의 대기업자본은 접수를 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지원으로 매년 확대재생산이 보장되었다. 반면 국영부문은 개인기업에 의해서는 이윤의 실현이 곤란한 분야에서 국가의 재정제도를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새로운 기술적 기초’를 가진 공업을 창설했에 의해 확대되었다.

네루수상은 산업정책결의와 관련한 의회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거의 전체의 90% 정도가 이미 노후해 버린 기존의 공장을 접수하는 데 국가가 거액의 자금을 쏟아붓는 것은 완전한 자워낭비일 뿐이다. 국가는 새로운 기술을 가진 공장을 창설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기존 기업의 국유화에 의한 국가부문의 창설은 실현되지 않았던 것이다. 국가부문은 아무런 기초없이 새로이 형성되어야 했으며, 사적 자본주의부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정부규제에 한정되게 되었다. 한편 외국자본에 대한 국가의 입장은 1949년 4월 의회에서 행한 네루의 ‘외자성명’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본 성명에서는 외국자본을 인도자본과 평등하게 취급할 것을 명확히 했으며 또한 신기술의 도입을 위해서도 외국자본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외자성명은 외국자본에 의한 인도경제 지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보다는 적절한 규제하에 국가에 유리한 방법으로 외국자본을 이용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인도자본은 외국자본에 의한 보완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 인도의 국민저축이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학기술 및 자본설비는 외국자본과 함께 도입될 때 가장 효율적으로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농 성명은 외국투자가의 자본의 회수, 이윤의 송금 및 인도 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취급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①모든 외국기업에 대해 동종의 인도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산업정책을 차별없이 적용한다. ②외국기업의 이윤획득에 특별히 차별적인 제한은 부과하지 않는다. ③특별한 이유로 외국기업이 강제로 접수되는 경우에는 공평하고 적정한 기준에 의한 보상금이 지불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명은 “특히 영국 및 기타 외국기업의 이익을 저해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인도경제의 발전에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이후 인도 외자정책의 기조를 이루게 된다.

이같은 점들은 확실히 기존 경제강령위원회의 계획안과는 전혀 다르며 오히려 ‘봄베이 플랜’의 계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요컨대 ‘산업정책결의’를 비롯한 일련의 조치는 본질적으로 인도경제의 부르주아적인 자본주의 축적 메카니즘을 상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1948년 결의는 민족운동의 사회경제적 목표를 신속히 수행할 것을 기대하는 좌파의 주장과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본주의적 공업화를 추진하는 데 이해 관계를 갖는 우파간의 중간적 궤도를 나아가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 독립 당시의 사회경제적 혼란 속에서 권력기초가 불안정한 회의파는 가능한 한 혁명적 변화를 회피하

면서 대자본가의 이익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으며 또한 국민회의파 내 자본가계급과 외국자본의 압력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3. 1차 5개년 계획 추진

독립 인도의 자본주의적 국민경제 형성과정은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계획 하에서, 금융, 재정, 무역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경제정책을 통해서 성립되었다. 국가는 기축산업인 중화학공업을 주도하고 발전, 관개, 철도, 항만 등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를 정비, 확충했다. 각종 국영, 민간 제기업에 대한 자금 배분(장단기 대부, 사채, 주식의 응모, 인수, 채무보증 등), 상품유통의 촉진(상업, 무역활동) 등 광범위한 경제활동을 수행했다.

1948년 산업정책결의에 따라 1950년 계획위원회가 성립되고 동 '결의'의 노선에 따라서 1차 5개년계획이 실시되었다. 국가지출의 우선순위를 보면 우선 농업, 촌락개발, 관개에 31%, 운수통신에 27%, 사회개발 23%의 순서로 농업과 사회간접자본에 집중되었다.

제1차 5개년계획은 인도 국민경제 형성과정의 초석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국가의 지출은 농업, 사회간접자본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공업의 발전은 기존 생산시설의 완전조업을 도모하고 공업부문에 대한 지출은 민간투자가 곤란한 특정의 기축산업 분야에 한정했다(다만 광공업부문 투자에서 차지하는 국가와 민간의 비중은 20:80으로서 이 시기의 광공업발전은 민간부문이 주도했다).

이같은 국가부문의 지출 배분은 독립후 인도에서 발생했던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곤란(예로써 파키스탄 분리독립에 따른 쥬트, 원면 등의 중요한 원료 재원의 상실, 파키스탄 난민 유입과 부대원 군인의 귀환에 의한 식량난, 물가, 실업문제의 침해화, 노동운동의 고양)을 극복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제 1차계획은 독립 후 표출된 경제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급속한 공업화과정을 창출하는 이른바 '준비적 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1차계획의 목적은 전체적으로 경제의 안정과 과도기의 수습에 있었다. 토지개혁의 철저한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농업생산 부문에 막대한 경비지출이 이루어졌다. 1차 5개년 계획실시의 결과 과도기의 혼란 극복에 비교적 성공했으며 경제 활동의 일반적 수준은 상승했다. 이것은 농업생산의 증대, 한국전쟁으로 유발된 전시수요의 확대가 그 주요한 원인이었다. 1차 계획기를 통해서 인도정부는 농업생산, 국제수지,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과를 얻게 되었으며, 아울러 부르주아의 지위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다수 대중의 생활수준은 거의 향상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불평등한 소득분배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4. 2차 5개년 계획의 추진과 중화학 공업화의 전개

1차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 결과에 고무된 인도 정부는 곧이어 1956년 4월 제 2

차 경제계획(1956.4 - 1961.3)의 시작과 동시에 중화학공업에 의해 주도되는 자본주의적 국민경제의 형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정부는 1948년의 산업정책결의에 대신해서, 새로운 “1956년 산업정책 결의”(Industrial Policy Resolution of 1956)를 발표했다. 20 조로 된 본 결의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점은 우선 ‘사회주의형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공공부문의 전면적 확대를 결의했으며, 둘째로는 48년 결의에서 사기업의 국유화에 관해 10년후 재고한다는 점에 관련한 조치였다.

여기서 ‘사회주의형 사회’라는 용어는 많은 오해를 낳고 있다. 우선 ‘사회주의형 사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어떤 형태의 경제 사회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다. 이 개념을 처음 사용했던 네루자신에 의하면, “계급도 카스트도 없는 사회로 가는길” 혹은 “산업의 국유화와 생산의 증강을 위한 공공, 민간 양부분이 공존하는 사회”로 막연히 규정하고 있다. 결국 “사회주의형 사회”的 이념은 그것을 논하는 사람 자신이 지향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애매한 개념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인도 정치기구의 형태와 1948년 및 1956년의 성명에서 볼 때도 네루가 내세운 사회주의 사상은 실제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있다. 사실 인도의 ‘사회주의형’ 사회 경제정책의 성격은 자본주의적 성숙단계에 있는 나라의 혼합경제적 정책의 그것과 극히 유사하다. 단지 선진국의 경우에는 혼합경제방식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다소라도 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 비해서 인도의 경우는 이 혼합경제방식이 발전을 위한 과정에서 하나의 타협을 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타협은 분명히 ‘민주주의적 계획의 원리’나 ‘개인의 자유존중’, ‘계급조화의 이념’ 등의 말이 보여주는 대로 자본주의와 함께 생겨온 정치사상을 추상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인도의 사회주의형 사회의 건설은 결국 생산수단 소유관계의 변혁을 의미하지 않는 것은 물론, 권력의 성격상 사적 자본의 이익과 근본적으로 모순관계에 설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본래 의미의 사회주의와는 전혀 다르다.

1956년의 ‘결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속하는 전담산업분야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48년 결의보다는 일보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분야로서 병기, 원자력, 철도 운수를 규정하고 (48년 결의와 동일), 기업의 신설에 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부문으로서 몇개의 중요한 광업(석탄, 철광석, 망간, 동, 납)과 제조업(철강, 단조, 중기계, 중전기, 항공기, 조선, 전화, 전신기의 8종) 및 항공운수, 발전(發電)이 지정되었다. 한편 국가가 신설을 주도하고 민간부문은 그것을 보조하는 분야로서는 알루미늄, 공작기계, 특수강, 화학공업(약제, 염료, 플라스틱 등의 원료, 비료, 합성고무, 화학펄프)나 도로, 해상운수 등이 지정되었다. 기타의 분야는 모든 민간부문이 맡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산업분야의 범위로 본다면 1948년의 결의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공공부문이 사업을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당시 인도의 발전방향이 사회주의로 향하는 비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을 밟았다고 하지만, 이는 명백히 오해이다. 왜냐하면 1956년 결의는 사적 자본을 접수하지 않은 채 그 확대재생산만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또한 1956년 결의에서도 “계획의 목표와 목적에 합치되는 한 사기업을 최대한 자유

롭게 발전"시킬 것을 천명하고 있으며, 특히 동일 분야에서 공-사 양기업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양자를 공정하고, 대등하게 취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매우 상징적인 면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이 48년 '결의'에서 10년간 유보되었던 '국유화 혹은 통제'의 문제에 관해서 최종적인 결론의 요지이다. 인도의 '사회주의형 사회' 방침은 이것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뤄진 것임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의 인도자본은, 몇몇의 재벌을 제외하고는 각종의 중화학공업을 일기에 설립할 정도로 강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부문 투자비중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소위 국가자본주의 확대정책은 자본주의 발전의 인도적 특수성의 하나로서 나타났던 것이다.

동시에 공공부문의 확대가 사적 자본의 존속 및 확대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확대는 강제저축(간접세 중심의 중세, 적자재정)과 외국원조자금에 의존하는 축적 양식을 피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 현상이 반연하게 되었고, 실질임금 수준은 55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게 되었다.

2차계획에서는 사회주의형 사회 건설의 목표와 함께 국영중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자본주의적 발전의 방향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방침은 자립적인 자본주의적 발전을 지향하는 부르주아의 물적 재생산구조 확립의 요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선진 자본주의에서 독점자본이 고도로 발달한 생산력을 기반으로 국민경제를 자기 지배체제 내로 포섭하는 과정이다. 저개발국 부르주아는 식민지경험으로 인한 축적수준의 저위로 인해서 국민경제 장악을 위한 물적 기반을 갖지 못했고 따라서 국가가 부르주아 전체를 대표해서 그 물적 기반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국영중공업 부문의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저개발국 국가자본주의는 국민경제에 대한 부르주아적 지배체제 확립을 위한 물적기초의 전개를 위해서 필연적인 현상이며, 일정의 국면에서는 사적자본과 모순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부르주아 전체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사적 자본의 축적이 고도화함에 따라 국영기업 불하요구가 강렬해진다. 즉, 국가부문과 사적 자본주의 부문 간의 대립은 국가자본주의의 발전의 관건이 되는 가장 주요한 측면인 것이다.

이 1956년 산업정책결의는 1948년의 성명에 비해서 국가의 참여범위가 확대되긴 했지만 제 1법주 산업에 대해서도 기존 민간기업의 확장이나 신규기업 설립의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1948년 성명에서 국유화가 10년 이후로 연기되었던 제 2법주의 민간기업의 국유화 논의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사라져 버렸다.

국가자본주의의 발전구조에 대한 대자본의 영향력은 마할라노비스(Mahalanobis)의 제 2차 계획초안과 최종안의 차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최종안에서는 초안에서 나타났던 국가투자의 광공업 우선순위가 완화되고 운수, 통신의 비중이 크게 증가되었다. 초안에서는 총투자예정액 560억 루피중에 60.7%가 국가투자로 되어 투자활동에서 국가투자의 주도적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광공업부문에서 국가투자와 민간투자는 각각 100억 루피, 40억루피로 되어 있었다. 또, 광업부문의 업종별 투자배분을 보면, 광공업 및 생산수단의 우선개발이라는 계획의 기본성격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최종안에서는 광

공업분야에서 민간투자가 67.5억루피로 증대된 반면 국가투자는 79억루피로 대폭 감소되었으며 운수, 통신, 공공사업도 당초보다 증가되었다. 대자본의 요구를 반영시킨 이 최종안은 국가부문의 주도에 의한 중공업발전의 구조를 극히 타협적인 것으로 만들었다(Mahalanobis, 1955:1-10).

또한 외국원조 및 적자 재정 의존도는 16.7% 및 26.5%를 차지해서 1차계획에 비해 현저히 증대되었다. 계획기간 전반을 통해서 인플레이가 격렬하게 진행되었으며 특히 1957년 이후 심각한 외화위기가 초래되었다. 이는 사적 자본의 활동, 특히 수입허가에 대한 불철저한 규제, 수출의 정체 및 농업생산의 부진에 그 주요한 원인이 있는 것이다(Eldridge, 1970:120-23).

2차 5개년계획 수행과정에서 야기된 이러한 모순은 1957년 인도사절의 미국세계은행 방문과 1958년 대 인도 채권국회의 창설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서 인도는 점차 새로운 식민주의의 구조 내로 빠져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5. 3차 5개년 경제계획의 수행과 그 패턴

2차 계획 후반기 아래 변화해 간 인도 국가자본주의 발전의 대외 의존적 성격은 3차 계획에서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3차 계획 공업발전의 기본방향은 2차 계획의 연장으로 중공업화 방침이 관철되었다. 투자 우선순위는 2차계획의 초안과 거의 비슷했으며 광공업부문의 우선순위, 국가부문 투자비중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면에서 외국원조 의존이 29.3%로 되어있는 것은 3차 계획의 대외의존적 성격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Kidron, 1965:230-1).

그러나 3차 계획기간중에도 농업생산의 부진으로 인한 식량위기, 수출부진, 물가등 귀현상 등 1957년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1962년의 중국-인도 국경분쟁과 65년의 인도-파키스탄 전쟁으로 인한 국방비의 팽창은 이러한 위기를 더욱 가속시켰다. 특히, 1965년 인도-파키스탄 전쟁을 계기로 원조가 증지됨으로서 외화위기는 결정적으로 악화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연방소비세와 매상세를 중심으로 하는 간접세의 비중이 증가했으며 3차 계획에서 총개발자금이 점하는 외국원조의 비중은 35.9%로 크게 확대되어서 대외 종속성은 한층 심화되었다. 원조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국경분쟁을 계기로 영국, 미국과 군사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인도와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의 결합관계는 일층 강화되었으며, 인도 내부의 국방비 지출도 급속히 팽창되었다.

이러한 위기에서 3차 계획의 규모는 크게 축소된 채로 4차 5개년계획의 시행은 3년이나 연장되었다. 미국은 인도의 계획이 농업부문에 중점을 두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또 농업생산 증대의 필요성을 인식한 인도 정부도 비료산업부문에서 외국자본, 주로 미국과 합작기업의 설립을 추진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압력은 경제 전반의 자유화에 대한 요구로 나타났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 비판은 미국과 세계은행에 의해 지지되었다.

특히, 1966년 6월 6일의 평가절하는 자유화로의 주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대 인도 채권국회의 주최자로서 세계은행은 인도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조사단을 파견해서 인도경제 정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게 했다. 조사결과 정부 부분 중심의 중화학공업 우선정책이 번잡한 관료적 통제를 놓고 민간부문의 발전을 저해하여 생산의 정체를 초래하고 있으며, 외화위기의 타결을 위해 취해진 각종의 수출보조금 정책이 경제를 왜곡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상품유통 및 민간투자에 대한 통제 완화, 무역수지개선을 위한 루피화의 평가절하 등의 조치를 요구했으며 이는 인도정부에 의해 즉각 수용되었다.

1956년 산업정책결의에서 제 1범주 산업의 민간자본에 대한 개방, 제 2범주 산업에서 민간부문활동의 강화현상이 나타났다. 제 1범주에 속한 17개 산업중 적어도 7개 산업은 1958년 경부터 민간자본에 개방되고 1958년에는 신기업의 건설이 민간자본에 인가되었다. 1950년대 말엽부터 국내 사회경제적 발전의 이와 같은 성격에 따라서 비동맹주의에서 인도의 입장도 후퇴하고 있었다. 즉, 중국-인도 국경분쟁, 인-파전쟁 아래 국내 정치적으로는 한층 우익적 경향이 강화되고 제국주의 군사 원조의 수입, 중국과의 대립, 파키스탄과의 대립 등 비동맹주의의 기본 노선에서 이탈하고 있었다(Kidron, 1965: 125-30).

2차, 3차 계획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된 중공업화의 결과 철강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문에 급속한 중공업적 발전을 가져왔다. 또한 자본의 집중에 의한 독점자본의 강대화를 가져왔으며, 대자본과 중소자본의 모순이 격화되었다. 농업생산의 상대적 정체는 식량, 원료부족의 만성화, 재정인플레 등과 더불어 국민생활을 압박했다. 그 결과 '농산물 가격에 대한 공산품 가격의 상대적 저하'라는 '역세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따라서 공업을 주된 생산활동분야로 삼았던 인도 자본주의의 재생산조건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외화사정도 매년 악화되었으며, 수입제한에 의한 외화부족의 완화대책도 한계에 달했다. 이로 인한 수입원자재 부족이 공업생산을 저해하게 되었다. 외국원조도 달려위기의 진행과 함께 서서히 줄어들게 되었으며, 특히 미국원조의 조건이 악화되고 나서부터 상황은 더욱 나빠지게 되었다(Melmen, 1963:121-30).

이와 같은 일련의 자본주의 모순과 대외적 조건의 악화속에서 제 3차 계획기의 후반인 1965년에는 공업발전의 템포가 눈에 띠게 저하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몰아막친 1965년과 66년의 흉작과 65년 9월의 제 2차 인도-파키스탄전쟁, 미국원조의 일시정지는 더욱 재정을 악화시키고 경제활동을 압박했다. 외화위기가 심각해지고 극도의 수입원자재 부족에 의한 공장폐쇄가 야기되었으며, 흉작으로 인한 농촌시장의 수축은 다수의 소비재산업을 압박했다.

제 4차 경제계획의 수행을 3년간 쉬게되었으며(계획 휴지기), 이것에 의한 공공부문의 신규투자의 대폭삭감은 민간부문의 투자활동을 대폭 축소시켰던 것이다. 국내 총생산에 점하는 순투자의 비율은 65년 13.4%로부터 66년 9.5%로 줄어들고 70년 9%대로 다시 하락하였다. 특히 기계공업은 66년 이래 심각한 불황을 맞게 되고, 공장폐업 및 노

산에 의해 많은 노동자가 실직되었다. 민간부문의 고용자수는 1966년을 피크로 감소하고 정체되었다. 급격한 인플레의 진행으로 식량가격은 급등하고 실질임금은 하락하게 되었다.

대 인도 채권국회의 세계은행에서는 1965년 이후 인도정부의 근본적인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첫째, 경제통제의 완화, 둘째, 루피화의 평가절하를 권고했다. 1966년 6월 인도는 이에 따라서 루피를 평가절하하고(1루피 대 0.21 미국 달러에서 0.133 미국 달러로), 아울러 공업허가제도를 완화시키고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활동의 회복을 도모했다. 또한 1967년부터는 수출진흥정책이 강화되고 고액의 수출보조금과 외화획득기법에 대한 우선적 외화할당 등 수출산업 특별보호정책이 실시되었다(Shetty, 1978:195).

V. 외국자본의 유입과 국내재벌의 성장

1. 외국원조에 의한 종속심화

인도 정부는 제 2차 및 3차 5개년 계획기간에 대규모의 공공투자를 계획하고 실행했으나 그 자금 원천으로서 국내의 세입동원 (특히 농촌지주층으로부터 잉여의 동원이나 사치적 소비의 삭감을 위한 정책)에는 실패했다. 결국 제 2차, 3차 계획기에는 거액의 정부지출자금을 외국원조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제 2차 대전 후 세계자본주의를 주도해 온 미국은 전 세계적인 달러 살포에 의한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과 지배를 도모했으며 그 경제 위조자금의 중요한 지원대상으로 초기에는 주로 유럽과 일본에 치중해서 지원했으나, 195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아시아의 구식민지 제국으로 전환하고 특히 인도에 대한 원조를 강화했다. 또한 소련도 현대 후진제국의 반제국주의적 측면을 중시해서 그 경제적 기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원조를 개시했다. 이같은 국내외적 제조건은 인도가 처한 국내적 요구와 맞아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Medovoy, 1984:89-95).

제 2차, 3차 계획기간중 인도의 원조 이용액은 각각 144억루피 및 287억 루피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였다. 또한 제 3차 계획기를 통해서 국내 순생산에 대한 투자의 비율은 평균 12.2%이었으나, 그중 2.2%는 외국차관이었다. 같은 기간중 중앙정부의 재정투융자 재원에서 점하는 외국자금 비중은 40%였고 1966년 현재 중앙정부의 대외국 채무잔고는 260억 루피였으며, 이것은 동년도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훨씬 넘는 액수이다(Melman, 1963:131-50).

〈표 5-1〉을 통해 제 3차 계획 말까지의 원조국별 유입액을 보면 미국으로부터의 원조액이 294억 루피로 전체의 51%라는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제 2위는 미국 지배하의 세계은행 원조, 제 3위는 사회주의 제국으로부터의 원조로 전체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당시 세계자본주의 정상에 있던 미국은 대 인도 원조에서 압도

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었으며 인도의 대외 종속이란 기본적으로 대미종속(對美從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표 5-1〉 외국원조 유입액(승인액)

(단위: 백만루피)

원조의 분류	1965년 현재	1971년 현재
I 차 관	3,803(66)	9,817(76)
1) 외화상환분	3,519(61)	9,518(74)
IBRD	454(8)	639(5)
IDA	276(5)	1,768(14)
프랑스	71(1)	308(2)
서독	441(8)	854(7)
일본	157(3)	424(3)
영국	361(6)	1,091(8)
미국	966(17)	2,383(18)
캐나다	-	365(3)
소련	484(8)	945(7)
2) 루피상환분	285(5)	299(2)
미국	284(5)	298(2)
II 총 여	392(7)	755(6)
영국	-	12(0)
미국	168(3)	190(1)
III 기타원조	1,598(27)	2,316(18)
미국(PL480)	1,564(27)	2,281(18)
합 계	5,793(100)	12,888(100)

주: ()안은 %임. 1966년 6월 5일까지 루피의 환율은 1달러당 4.762루피였으며, 1966년 6월 6일 루피화의 평가절하이후에는 1달러당 7.50루피였음.

자료: Government of India(1973:103)

〈표 5-2〉 및 〈표 5-3〉을 통해 1967년까지 미국원조의 목적별 배분내역을 보면, 잉여농산물원조가 전체 미국원조의 55.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 및 민간 양부문으로 나누어보면 국가부문의 공업개발 원조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미공법 480호에 의한 잉여농산물 원조 외에 미국의 원조는 개발차관기금(DLF)과 이를 계승한 국제개발처(AID) 및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잉여농산물 원조를 보면, 인도내 판매대금으로 대충자금 회계를 설정한 후 일부는 중여하고 일부는 차관으로 제공된다. 이 자금의 10-15%는 미국의 현지 행정기관이 사용하며 5%는 인도 민간부문의 발전에 충당되었으며 보통 인도정부는 선적비의 1/2 정도를 부담했다. 인도 농업생산의 정체로 곡물수요는 계속 증대하고 수입은 급증했다. 인도는 극동지역에서 미국 잉여농산물의 최대 수입국이었으며, 세계 전체에서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1956년 이후 인도의 총곡물수입 중 미잉여농산물수입은 매년 증대하여 1965년에는 전체의 85%를 나타내고 있다.

〈표 5-2〉 미국의 대 인도 원조액(1967년 3월현재)

(단위 : 백만루피)

	차 관	증 여	합 계
기술협력	999.9	2,879.7	3,879.6
DLF/AID차관	17,041.4	-	17,041.4
수출입은행	3,134.2	-	3,134.2
1951년 소액차관	1,422.7	-	1,422.7
PL 480	11,573.8	3,976.0	15,549.8
보잉사 및 유행공농차관	479.2	-	479.2
합 계	34,651.2	6,855.7	41,506.9

자료 :Government of India(1968:106)

〈표 5-3〉 DLF/AID차관의 용도별 내역

(단위: 백만루피)

	루피변제(DLF)	달러변제(AID)
(1) 전력	140	307
(A) 대 정부	136	289
(B) 대 민간 직접투자	4	18
(2) 철도	115	70
(3) 철강 수입	85	-
(4) 철도 수송용 차량제조	46	67
(A) 대 정부	39	-
(B) 대 민간 직접투자	7	67
(5) 민간부문의 공업개발	69	1,155
(A) 자본재 수입	49	-
(B) 대 민간 직접투자	20	1,155
(6) 세탄	-	17
(7) 비료생산	30	58
(8) 전력, 운수 외 대 민간 직접투자	-	19
(9) 민간부문을 위한 정부금융	25	30
(10) 자본기능서비스	-	2
(11) 관개	33	-
(12) 지하자원조사	-	4
합 계	543	1,729

자료 :Government of India(1968:110)

미국은 잉여농산물 원조를 이용해서 궁극적으로 자국의 과잉농산물에 의한 농업공황을 국가기구를 통한 원조에 의해 해결함과 동시에 인도에 진출한 미국독점자본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인도의 산업구조를 유도해 나갔다. 특히, 잉여농산물 판매로 축적되는 거액의 미국정부채권은 인도의 자율적인 경제운용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값싼 잉여농산물의 대량유입으로 인도 농가의 소麦생산은 날이 갈수록 채산성을 잃게되고 생산은 저하되어갔다. 이에 따라 식량부족은 만성화되고 다시 새로운 잉여농산물이 도입되어야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이어져 갔던 것이다(伊藤正二, 1972:125-26).

미국의 대 인도 원조의 특징을 <표 5-3>을 통해 살펴보면, 첫째, 공공부문에 대한 원조는 PL 480을 제외하면 매우 미미하다. 그것은 특히 개발차관기금(DLF) 및 국제개발국(AID)의 원조내용에서 명확해 진다. 표에서 (1)의 B, (4)의 B, (5), (8), (9)의 각항이 대 민간원조인데 그것 중 루피 변제원조는 전체의 19%, 달러 변제원조는 75%이다.

제 2의 특징은, 공공부문원조에 있어 기술협력및 공업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지극히 비약하다는 사실이다. 반면 PL 480의 원조의 경우 80%를 대 정부원조에 할당하고 있으며, 그 내역을 보아도 67년 3월까지 누계 120억 루피에서, 농업에 4억루피, 관개 전력에 55억 루피, 교육훈련, 위생, 사회개발, 운수에 40억 루피를 할당했다. 나머지 20억 루피가 소위 “공업분야”에 대한 것인데, 그 내용은 전액 사기업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 관계 특수금융기관에 대한 응자였다.

제 3의 특징은 대 민간부문 원조는 대자본을 가진 대 재벌계의 유력기업에 집중되었다. 그 예로 PL 480의 원조의 특수금융기관 할당액중에서, 중소자본원조를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같은 경향은 DLF/AID나 수출입은행에 의한 대 민간기업 직접차관에서도 명확히 밝혀지는데 그것의 태반은 타타(기관차, 철강회사)나 비를라(자동차, 알미늄, 기계, 제지, 쉬리람(레이온, 타이어등),와루찬도회사(자동차) 등에 집중되었다(伊藤正二, 1972:127-28).

이같이 미국의 인도 원조는 AID 원조 전략에 따라, 인도내에 사적자본주의를 육성하고 나아가 독점적 대자본을 강화하는 역할에 치중했다. 또한 대 인도 채권국 회의를 통해 인도 국내정책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계속되었는데 1966년 6월의 ‘루피화 평가절하’가 그 좋은 예이다. 또한 파키스탄과의 관계에서 원조의 증감을 통해 인도-파키스탄 양국간의 대립을 조장시키는 역할도 남달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원조를 통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출의 증진과 사기업의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미국의 대 인도 수출을 보면, 1964년까지 AID가 인도의 민간부문에 공여했던 2억 7500만 달러의 상품차관 내에서 약 80%가 미국제품의 수출과 직결되었다.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정책에 의해 이 비율은 매년 상승했다. 그외 PL 480이나 수출입은행의 원조가 대 인도 수출에 직결되었음을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인도에서 미국자본은 다른 나라의 경우(중동의 석유를 제외하고)보다 고이윤을 향유했다. 제조업의 경우 대 전세계 미국투자의 이윤율은 평균 11%임에 대해 대인도투자의 그것은 16%(1969)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전후 제국주의의 불균등 발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컨대 미국은 원조를 통해 구 식민지 종

주국인 영국을 대신해서 인도를 미국경제가 주도하는 세계자본주의 틀 속으로 재편성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상 미국의 인도원조는 1차 계획기에는 1951년 긴급 소액차관 및 인도-미국 기술 협력계획에 기초한 기술원조가 있었을 뿐이다. 또한 한국문제에서 인도의 충재, 중국의 인성, 비동맹주의에서 인도의 지도적 역할은 미국의 구 식민지적인 군사적 강압정책과 양립할 수 없었으며, 1951년 인도에 대한 소액차관도 의회에서 심각한 반대에 직면했다. 특히, 1954-1956년의 시기는 미국 의회에서 인도원조에 대한 반대가 절정에 이른 시기였다. 그 이후 미국의 인도원조는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인도를 3차 계획규모의 대폭 축소, 외환위기로 몰아넣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Kidron, 1965:240-50).

그러나 소련의 인도에 대한 원조 개시는 미국의 대 인도 원조에 대한 새로운 평가계기가 되었으며, 1955-56년의 인도 식량사정 악화, 1957-58년의 외환위기 등 인도의 내적요구와 결합됨으로써 미국의 대량 원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한 1958년 대 인도 채권국회의 결성은 그 가장 뚜렷한 전환점이었다.

한편, 인도-소련관계는 1962년 중국-인도 국경분쟁에서 소련의 인도 지지를 계기로 구체화되었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 사회주의제국의 원조는 인도의 국영중공업을 기초로한 국가부문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3차계획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사회주의 진영은 2차계획에서 계승된 16개의 중앙정부 사업중에서 8개를, 그리고 3차계획에서 원조가 확정된 22개의 신규사업중 12개를 원조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들 사업에 소요되는 외화 43억 5천만 루피의 반 이상인 27억루피에 달하는 액수였다.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의 인도원조는 제한적이나마 제국주의에 대한 부르주아적 국가권력의 상대적 자립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것은 인도의 국제환경에서의 위치가 다른 저개발국에 비해서 극히 유리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는 냉전의 최대의 수혜자였다. 물론 그것은 인도 부르주아 국가권력의 기회주의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 이지만, 인도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원조 경쟁은 인도의 입지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 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이병천, 1977:95-6).

2. 인도재벌의 성장

(1) 재벌의 성장과정과 그 특징

영국 식민지시대의 기형적인 발전경험을 통해 이미 상당한 독점을 이루었던 인도의 대기업 자본가들은 독립 후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국가자본주의적 정책기구를 통해 고도의 독점을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 독립 직후 인도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국가부문의 창출, 부와 소득의 불평등 해소, 경제력 집중 배제에 대한 정책선언에도 불구하고, 역시 인도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주도적인 힘은 사적 자본주의 부문이었으며 그것은 소수의 독점자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었다. 무릇 인도의 민족 부르주아계급에 있어 정치적 독립이 갖는 최대의 의의는 부르주아적 지배체제의 확립을 위해 국가권력을 스스로 이

용하게 되는 데 있었다. 독립된 국가권력의 성립은 부르주아적 지배체제의 확립을 위한 기본전제였던 것이다(이병천, 1977:137).

인도의 정치적 독립은 영국계 자본의 동요와 일부 자본의 본국 철수로 인해 인도에서 자본관계의 격렬한 재편을 초래했다. 일부의 인도계 대자본과 영국자본과의 합병, 결합이 이뤄지고 제 2차 대전중 화폐자본을 축적한 인도인이 영국인 공장을 매수해서 자신의 산업적 기반을 강화시켰다. 당시엔 이같은 영국기업의 매수가 ‘광적인 쟁탈전’화되었다. 자본관계의 재편 방향은 자본집중의 일반적 강화와 인도 대자본가의 산업자본적 기반의 강화로 귀결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51년에 10대 인도재벌은 전 인도 주식회사 불입자본금의 22.7%를 점하게 된다(Hazari, 1966:20-30).

1950년대 이후 정부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부문 지출의 확대는 사적 자본주의 부문의 발전을 위한 하부구조와 안정된 시장을 제공했다. 계획기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인플레 분위기는 민간부문의 활동에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했으며, 간접세 위주의 조세구조와 1965년 세제개혁을 비롯한 광범위한 조세감면 및 금융지원은 민간부문의 투자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⁷

상업은행의 융자는 주로 재벌기업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상업은행의 경우 독립후에도 1969년의 국유화까지는 민간 독점재벌이 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미 1948년 인도준비은행의 국유화, 1955년 제국은행의 국유화, 1956년 생명보험회사의 국유화 등 은행의 국유화조치가 이루어졌으나, 1969년 인디라 간디 정권에 의한 주요 상업은행의 국유화조치가 시행되기까지는 상업은행은 독점자본의 지배에 있었다. 또한 1950년대 전후반의 은행 국유화조치는 국가부문의 지위를 증대시키기는 했으나, 그 기본적 역할은 민간부문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은행 및 보험회사의 국유화는 외국자본의 지배 중소자본의 관리하에 있는 자원을 인도 대자본이 보다 효율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그들을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Bettelheim, 1968:266-68).

독점 대기업에 의한 은행지배의 폐해에 대한 인도준비은행 총재의 경고는 매우 시사적이다. “인도의 은행업의 구조적 특질의 하나는 경제력 집중이며, 이것은 몇개의 예에서는 실제로 불입된 자본금에 비해서 거대하다. 자주 우리는 한 가족 또는 한 두개의 그룹이 은행의 지배권을 갖는 예를 보게 된다. 이러한 지배권을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사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당면 감사과제이다”(アジア 經済研究所, 1966:175-6).

7 세제상의 특혜조치로는 ①신규설립기업에 대한 5년간 면세-신규설립의 생산적 기업이윤에 대해서 운용자본의 6%를 한도로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한다. ②개발할인공제(development rebate allowance) –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일종의 보조금제도로서 당해년도에 공제할 수 없는 공제 부족액은 이후 8년에 걸쳐 계속 공제해 나갈 수 있게 한다. ③중요산업회사에 대한 감면 – 특정 중요사업에 종사하는 내국회사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이윤세의 과세상 당해 주요산업에 귀속해야 할 소득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④추가 조업상각(extra shift depreciation allowance) – 기계 및 설비가 통상조업률 이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경우 중액상각이 인정된다(大杉一雄, 1968:356-62).

한편 공업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설립된 정부계 특수금융기관도 대기업 성장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당시 인도의 상업은행은 주로 단기신용을 취급했으며 특수 금융기관에서는 기업의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중장기 산업금융을 수행했다. 민간부문에 대한 국가의 허가 및 규제정책은 국내 독점자본에 유리하게 작용한 또 하나의 정책사례였다. 인도의 재벌기업이 공업 설립인가를 위한 민간부문 총신청건수에서 짐하는 비중은 1959년 20%에서 1966년 29%로 급격히 증가했다. 또한 수출입 및 외환 정책도 재벌의 독점강화를 촉진시켰는데, 그 정책을 살펴보면 수출산업에 대한 원재료 및 부품수입에 대한 외화 우선할당, 수출산업에 대한 자본재 수입인가의 우선조치, 수출산업에 대한 국산재료부품의 우선배정, 수출에서 생기는 이윤에 대한 과세경감 등의 조치였다.

이와같이 제 2차, 3차계획의 중공업화 전략과 더불어 전개된 민간부문에 대한 국가정책에 편승하여 인도 재벌은 지배력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그것은 관료 및 정치가와 독점재벌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보다 강고하게 발전했다.

민간주식회사의 복지자본금 규모는 급속하게 불어났으며 활발하게 진행된 자본의 집중 및 집적의 결과 전체 기업수는 감소한 반면 기업규모는 확대되는 전형적인 자본주의 발전과정이 진행되었다. 금융업의 분야에서도 흡수, 합병 현상이 눈에 띄게 확대되었으며 1958년에는 예금이자에 관한 카르텔이 성립되었다.

그리나 독립후 전반적인 재벌의 성장 과정에서 모든 기업이 순조로운 축적과정을 경험했거나고는 볼 수 없다. 독립후 현재까지 기업집단이나 재벌의 변천과정을 돌아보면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伊藤正二, 1983:143-46).

1) 구 영국계 기업집단의 상대적 몰락

식민지시대 인도 경제는 영국계 기업에 의해 거의 지배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앤드류 윌(Andrew Yule), 마틴 번(Martin Burn), 버드 하일거(Bird Heilger), 새손(Sassoon) 등의 기업이 대표적이었다. 그러나 독립 후 새손그룹의 전면적 철수를 필두로 그 외 많은 영국기업도 규모를 축소해 갔다. 독립 후에도 인도에 계속 남아있었던 앤드류 윌 그룹도 독립인도의 민족계 기업 우선정책과, 기업활동을 구태의연한 식민지산업, 이를테면 플랜테이션을 중심으로하는 채취산업이나 황마산업 등에 편중함으로써 근대적인 산업분야에 대한 진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점차 그 지위가 약화되어 갔다.

마틴 번 기업의 경우도 1970년대 초반까지 철강업을 중심으로 근근히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결국 경영부실로 인도정부에 의해 접수되었고 버드 하일거(Bird Heilger)그룹도 모기업이었던 버드사의 경영부진으로 결국 철수하게 되어서 오늘날 인도에는 과거 영국 대기업의 자취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2) 다국적계열 기업의 현저한 확장

위에서 본 영국기업과는 대조적으로 당시 인도에서는 개발하지 못하는 첨단기술을 이

용하는 중화학공업계통이나 약제품계통에서 영국계 다국적기업의 팽창은 괄목할 만 하다. 특히 영국 임페리얼 케미컬(Imperial Chemical)그룹 계열의 ICI회사(Imperial Chemical Industries, India, Pvt.Ltd.)나 뉴 레버(New Lever)그룹 계열의 힌두스탄 레버 회사(Hindustan Lever Ltd.)의 급속한 시장점유율 확대는 괄목할 만하다.

3) 국내 재벌의 성장

독립 후 국내 재벌집단의 급속한 부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보조를 맞춰나갔던 재벌의 성공이 두드러진다. 특히 195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정부의 철강업 중시정책에 부응해서 발전했던 타타재벌, 60-70년대에 화학비료 및 레이온산업에 진출했던 비를라(Birla)그룹, 60년대에 가장 빨리 유기화학분야에 진출했던 마파트랄그룹, 70년대에 유기화학 및 화학비료에 진출했던 모디(Modi)그룹이나 쉬리 람(Shri Ram)그룹 등의 성공사례가 그것이다. 반면 국내기업이라 할지라도 구래의 사업분야인 면방업, 제당업 등에 안주했던 재벌들은 몰락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예로서는 면방업의 카스터바이(Kasturbhai)기업이나, 와디아(Wadia)기업, 제당업의 샤프로지(Shapoorji)기업 등을 들 수 있다.

4) 외자제휴 그룹의 부상

국내기업 중에서도 외국자본과 결합하거나 기술을 제휴했던 그룹의 급속한 발전이 이뤄졌다. 예를 들면 미국 카이저그룹과 제휴한 비를라그룹은 알미늄 정련업에 진출했으며 마파트랄그룹은 역시 외자제휴 형태의 내셔널 유기화학사(NOCIL)의 설립을 계기로 비약적 발전을 이루하게 되었다. 원래 마파트랄기업은 섬유업 및 화학공업을 위주로 하는 중규모 회사였으나 60년대에 들어와 쉘(Shell)석유회사와 미국의 유니버설 오일회사(Universal Oil Company) 등과 기술제휴를 맺고 석유화학공업에 진출했으며 자기자본보다 훨씬 많은 외국자본을 도입, 투자함으로써 일기에 인도 제 3위의 기업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5) 정경유착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재벌집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인도의 재벌도 정부의 정치가나 고위관료 등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성장의 가장 중요한 비결 중의 하나였다. 대부분의 재벌은 뉴델리에 소위 공업대사관(Industrial Embassy)을 두고 대 정부교섭에 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적지 않은 투자를 하고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래서 50년대의 타타그룹이 당시 네루수상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반면 비를라그룹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원한 관계였기 때문에 양기업의 발전속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비를라 그룹은 6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심기일전, 인디라 간디(indira Gandhi)정권에 접근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급속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그외 쉬리 람그룹이나 모디그룹 등도 정경유착의 좋은 사례이다.

(2) 재벌기업의 독점 심화와 정부규제의 실패

당시 지배적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관한 조사보고서인 하자리 리포트(Hazari Report)에 의하면 1951년 현재 총 민간기업의 불입자본에서 점하는 13대 독점그룹 및 20대 독점그룹의 완전한 지배하에 있는 기업의 비중은 각각 23%, 24%를 차지하고 있는데, 58년 그 비중은 각각 27%, 28%로 증가되었다. 순자산 5천만루피 이상의 그룹은 75개사로 산하기업의 불입자본 합계액은 64억 6천3백20만루피, 순자산의 합계는 260억 5,930만루피였다.

당시 25,661개에 달했던 민간기업의 불입자본 합계액이 146억 5,460만루피, 추정 순자산액은 555억 2140만 루피였으므로 총 민간기업 불입자본금과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75개 그룹의 비중은 각각 44.1%, 46.9%로 되었다. 특히 중공업 분야에서는 타타나 비를라의 극소수 독점재벌이 완전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칠강 제품은 민간부문에서 타타의 티스코(TISCO)와 마틴번(Martin Burn)의 이스코(ISCO)가 거의 완전히 독점하고 있었으며, 자동차는 타타, 알루미늄은 비를라 등이 지배했다.

독점자본의 지배양식은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식소유에 의한 지배가 그 기본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다. 상위 20대 재벌기업체의 주식소유에 의한 지배와 관련해서 지적해야 할 중요한 점은 독점그룹내에서 투자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간 내부투자를 통해서 독점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일 독점그룹내의 투자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간 투자는 독립후 독점체간의 불균등발전을 초래한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경영대리제도를 통해 지주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방법도 당시 일반화되었던 기업통제 경로였다. 경영대리회사에 의한 회사지배는 식민지시대 영국 자본의 인도기업 지배에 주로 이용된 것이지만 인도자본도 점차 이를 이용하게 되었다. 독립 후 경영대리회사의 비중은 줄어들었으며 1965년말 현재 860명의 경영대리인이 1,236개사를 경영 대리하고 있었으며 전체기업에서 경영대리제도의 지배비중은 기업수로는 5%, 불입 자본금에서는 21%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특히 전통적으로 경영대리제도의 지배력이 강한 제당, 면직물, 시멘트, 황마, 제지 등의 분야에서는 경영대리제도가 다소 강하게 잔존하고 있다(大杉一雄, 1968:433-4).

민간 재벌기업의 종역적과 국영기업체 종역적의 상호겸임은 독점자본 지배의 또 다른 경로이다. 이는 인적 결합을 통한 독점그룹의 지배의 중요한 형태로서 재벌 독점체가 국가의 기업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었다. 한편 1969년 은행국유화조치 이전까지는 독점재벌들이 민간은행의 주식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벌과 민간은행 간의 유착관계는 매우 강고했다(アジア 經濟研究所, 1966: 168-21).

또한 신문, 잡지, 방송 등 매스컴기구는 재벌독점체의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강력한 보조기구로 이용되었으며, 독점자본은 인도 상공회의소 연합, 전 인도 공업고용주 협회, 전 인도 제조업자 조직 등의 자본가 이익집단을 통해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특히 국민회의파를 비롯한 우익정당에 대한 대규모 정치자금의 제공을 통해 자신

의 이익을 관철시켜 왔다(Bettelheim, 1968:68-70).

인도의 독점재벌의 급속한 경제력 집중은 인도경제의 독자적 발전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소수 독점자본의 집요한 이윤추구는 국가부문 경제의 원활한 수행을 저지했으며 국가의 외화위기를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협소한 농촌시장과 극소수 도시 중간층 소비지출의 중대에 힘입어 소비재산업이 기형적으로 발전되었으며, 이는 또한 수입수요를 자극하여 국제수지는 계속 악화되었다(Bettelheim, 1968:72-79, 이병천, 1977:167-80).

이러한 독점재벌들의 경제력 집중 강화로 인한 여러가지 부작용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국민의 불신이 증폭해서 국민회의파의 정치적 입지가 어렵게 되자 인디라 간디 수상에 의한 일련의 재벌규제대책이 마련되었다.

1970년 2월 간디 정권이 포고한 산업인가정책(The Industrial Licensing Policy of 1972)에서는 인도의 최대 20대 기업을 대재벌(Larger Industrial Houses)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원칙적으로 중핵부문(Core Sector; 농업용기계 및 비료, 철강, 비철금속, 석유, 석탄, 중기계, 조선, 인쇄, 전자의 9개 업종)에 대해서만 한정시키면서, 한편으로는 다트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공동부문’(Joint Sector) 구상을 채택하여 대재벌 계열 하에 있는 주요 민간기업들을 국가적 통제와 규제 하에 포섭해 가는 방향을 명시했다. 공동부문 구상은 공공 금융기관이 민간 기업들에 공여하는 대부금을 주식으로 전환시키고 국가(통상 공공 금융기관의 대표)가 이들 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가함으로써 재벌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Industrial Licensing Policy Inquiry Committee, 1969: 48-49).

1970년 당시 정부는 113개 주요 민간기업 중 76개사에서 전체 주식의 10.1%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중 69개사에서 정부의 대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주식의 1.1배 이상에 달했다. 여기서 만약 정부대여금의 50% 정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주식의 1.0-1.5배의 정부대여금을 가진 회사는 현재 주식 비율이 10%, 혹은 그 이하라 하더라도 국가 부문의 지배하에 자동적으로 놓여지게 되었을 것이다(The Economic Times, 1970, 15 December).

1971년 7월 소위 ‘정부전환’의 가이드 라인이 제시되고 공동부문 구상이 구체화되어 가는 가운데, 타타 재벌의 총수 타타가 1972년 5월 17일 발표한 ‘산업 성장에 관한 타타 각서’(Tata Memorandum on Industrial Growth)에서 독점재벌을 대표하여 그들 자신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공동부문 구상에 반격을 가했던 것은 이상과 같은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타타재벌의 총수 타타는 “어디까지나 정부가 민간 부문을 공공 부문에 의해서 교체하지 않고 공동부문정책 해결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민간 업자에 의한 경영이 공공부문의 경영보다도 더 나을 것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공동부문 구상을 거꾸로 받아 들였다. 따라서 이 구상 실현의 전제로서 재벌계 기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성장 억제책, ‘경직된 전환 정책’의 폐기를 주장했다. 그리고 통상 ‘주 정부 26%, 민간 회사 25%, 잔액 공개 모

집'이라는 주식 지분 구성 하에서 민간 회사와 주 정부의 파트너 쉽을 요구했다 (Mainstream, 1972, 19 August:14). 이에 대해 파란자페(Paranjape, 1973:13)는 “타타 구상에 기초한 공동부문의 수용은 마치 구렁이를 품에 안는 것과 같이 위험한 발상이며 공동부문정책의 목적 그 자체를 무효화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대재벌 지배 하에 있는 유능한 기술자와 경영요원의 핵을 일종의 외과적 수술, 즉 정부대여의 주식전환에 의해서 분리해 낼 것을 주장했다.⁸

공동부문 구상과 병행하여 1969년에 제정되었던 ‘독점 및 제한적 상(商) 관행법 (Monopolies and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이하 MRTPA)’이 1970년 6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독점재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존 기업의 대규모적인 확대와 신기업의 설립 및 흡수 병합에 의한 경제력의 집중이 규제되었다. 그러나 공동부문 구상과 MRTPA는 실제로 당초 의도된 효과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또한 MRTPA의 유명무실화, 명목상의 재벌해체 추진, 산업인가 규제의 완화 및 자유화 등 일련의 산업정책 전개과정에서 공동부문 구상 자체도 당초의 의도에서 상당히 후퇴하고 있었다.

공동부문 구상은 현실적으로 ‘타타각서’에 나타나 있는 의도대로 그 실질적 지배가 민간업자의 수중에 있는 ‘혼합 사기업’의 영역을 빼어날 수 없었다(Ghose, 1974:909-910, Patil, 1977, Velayudham, 1976). MRTPA도 똑같은 유명을 겪었다. MRTPA(제3장, A부)에서 독점재벌과 ‘지배적 기업(Dominant Undertaking)⁹에 의해서 행해지는 ‘대규모적인 확대’¹⁰와 신기업의 설립은 중앙정부의 사전심의 승인을 요하도록 되어 있다. 또 중앙 정부가 양자로부터 해당 사항에 관한 신청을 심의 승인하는데 조사가 필요한 경우, 중앙 정부는 MRTPA 위원회(MRTP Commission)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지시를 양자에게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MRTPA에 기초한, 해당 사항 처리 상황을 보면, 1970년 6월부터 1975년 3월 말까지의 기간에 수리된 순 신청건수(신청 취하, 혹은 적용 제외 진수를 뺀) 403건 중 51건(13%)만이 정부에 의해서 거부되었을 뿐이었다. 더구나 상기의 순 신청건수중 MRTPC에 부탁된 것은 24건 뿐이었다(Reserve Bank of India, 1975: 283, 1976: 268).

결국 MRTPA에 기초한 신청은 “관계 관청과 관료의 수중에 막대한 자유 재량권이 보유되어, 전횡적으로” (Oza, 1973: 21) 처리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신청시에는

8 이에 대해 더욱 자세한 것은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1975, VIII, No.45)을 참조. 한편 이에 대한 인도 공산당(CPI)의 구상에 대해서는 Sen(1972) 및 Kabra(1973)을 참조

9 지배적 기업이란 그 자체로 혹은 계열기업과 함께 인도에서 생산, 분배되고 있는 상품의 3분의 1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산 규모 1,000만 루피 이상의 산업 기업체를 말한다. 또, MRTPA의 ‘제2장 (경제력의 집중)의 A부’가 적용되는 대기업은 2억 루피 이상의 자산규모를 가진 사업집단이다 (Industrial Licensing Policy Inquiry Committee, 1969).

10 여기에서 ‘대규모적인 확대’란 2억 루피 이상의 자산을 갖는 재벌기업과 독립된 대기업의 경우, 그 보유자산 가치 혹은 그것에 의해서 생산, 분배되고 있는 상품의 25%를 상회하여 증대되는 확대를 의미한다. 지배적 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20대 대기업(LIH)과 독립된 대기업의 계열기업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Industrial Licensing Policy Inquiry Committee, 1969).

다음과 같은 행정 차원의 판단 기준이 MRTPA의 경제력 집중 배제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우선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MRTPA, Chapter III, Part A, Section 21 & 22, (3)-(a)). 즉, ① 수출의 촉진, ② 수입 대체의 촉진, ③ 기업 소유의 국유화 추진, ④ 기간 산업 부문에서 경영권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가에게 주어질 경우, ⑤ 공동부분의 확대, ⑥ 후진지역의 개발에 대해 기여할 수 있을 경우(Chandra, 1977:1410-12) 등이다. 이러한 예외적 판단 기준에 기초한 신청의 처리가 경제력 집중의 해결에 손을 대지 못 한 채 그대로 승인된다면 자본력이 있고 경영 기반이 확고한 대기업에 유리한 것은 명백한 것이며, 독점재벌과 지배적 기업로부터의 신청에 대한 거부율이 낮은 것은 이러한 이유에 따른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MRTPA의 유명무실화와 병행하여, 1973년 산업정책결의(1973년 2월)에 있어서는 명복만의 재벌 해체가 추진되었다. 이 결의에서 “산업 인가 규제를 위하여 채택된 독점재벌의 정의는, 1969년 MRTPA에 채택된 그것과 모든 점에서 일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 계열기업의 자산 총액이 2억 루피를 상회하는 사업집단이 산업 인가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Tata Economic Consultancy Services, 1976:45).

그것과 동시에 인가 규제 대상이 되는 독점재벌 계열회사를 결정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으로서, 1970년 2월의 신산업 인가정책 성명에서 채택되었던 다트 위원회의 ‘회사 지배의 현실적 메카니즘’을 중시한 기준이 방기되고, ‘형식뿐이고 한정적인’ MRTPA 기준이 채택되었다.¹¹ 이렇게 하여 동 결의는 사실상 독점재벌 계열회사에 대하여 명복만의 재벌 해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오히려 재벌기업에게 산업 인가 및 MRTPA에 의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3) 외자제휴와 독점재벌

독립 후 독점재벌의 팽창과 더불어 급속히 진행된 인도 독점자본과 외국자본의 결합은 자본 및 기술면에서 외국자본의 지배를 더욱 강화시켰다. 또한 앞에서 보았듯이 외국원조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사적 자본 진출을 피하는 것이었으며 각국의 원조 급증과 더불어 외국자본의 대 인도진출이 급속히 팽창되었다. 선진자본제국의 대 인도 경제원조는 어디까지나 자국의 독점적 대기업의 인도시장에로의 통로가 되었다. 원조의존의 심화와 외자제휴의 증대는 표리일체의 관계이다. 1960년대 전반까지 외자제휴는 인도기업에 필요한 기술, 기계, 설비의 수입에 대해 당면 외화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2차 5개년 계획 아래 급속한 중공업화정책과 더불어 인도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伊藤正二, 1972:131-32).

민간부문에서 외자도입과 기술제휴는 재벌기업에 의해 거의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중에서도 상위 20대 재벌기업의 비중이 57%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비를라(Birla)

¹¹ 오자(A.N.Oza)는 MRTPA기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실제로 재벌이 한 회사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것은 총 주식이 아니라 ‘유효’ 주식이다”(Oza,1973:762).

그룹이 20대 재벌의 제휴건수 중 28%를 차지했던 사실을 보면 당시 외자제휴와 재벌의 성장이 궤를 같이 했음을 알 수 있다(Gupta, 1969:83-5).

자본진출형태의 다양화, 복잡화 추세는 외자지배 인도회사의 급격한 증가, 기술제휴나 차관제공 등의 증대라는 면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표 5-4>를 통해 인도의 민간주식회사 자본중 외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57-58년의 13%에서 1967-68년의 24%로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주식소유가 분산되고 있는 경우나 외국으로부터 차관이나 기술 제공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자본이 과반수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당해 회사의 경영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13%-24%의 비중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표 5-4> 인도 민간주식회사자본에서 외국자본의 지위

(단위: 백만 루피)

	1957/58	1964/65	1967/68
외국 기업의 지사			
추정불입자본금(A)	66	97	123
추정순자산(B)	470	532	605
외자지배 인도회사			
추정불입자본금(C)	148	387	480
추정순자산(D)	442	1,501	1,905
인도 민간주식회사			
불입자본금(E)	1,050	1,737	1,913
추정순자산(F)	3,668	7,493	8,288
합 계			
추정불입자본금(G)	1,115	1,834	2,036
추정순자산(H)	4,137	8,025	8,893
외국자본의 비중(%)			
불입자본금(A+C)/G	19	26	30
불입자본금 C+G	13	21	24
순자산(B+D)/H	22	24	28
순자산 D/H	11	19	21

자료: 伊藤正二(1972:132)

당시 인도 정부는 원칙적으로 외자의 다수지배를 허가해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으나, 기술도입 촉진 및 외환사정의 악화를 막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외자의 다수지배를 묵인하는 형편이었다. 특히 경제계획의 중점 분야였던 중화학공업분야에서 이러한 경향은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외자가 소수 참가를 하는 경우는 공장 설립인가나 수입인가 등에 관한 심사에서 특혜를 받았다. 이같은 외자정책의 완화에 따라 외자지배가 강화되어 나갔다.

한편 외국자본과의 기술제휴에 대해서 살펴보면 1950년대 후반 이래 계속 증가했으며 특히 1960년이후에 급증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즉, 48년부터 55년까지 연평균 36건인데 그후 59년까지 연평균 104건, 60년부터 65년까지 연평균 334건으로 증가했다). 그것의 업종별 구성은 외국자본 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5개년계획의 중점 투자업종인 기계공업과 화학공업에 집중되어 있다.

1965년 현재 발효중인 기술제휴 1,051건의 50% 이상이 기계공업, 20% 남짓이 화학공업, 10% 정도가 금속공업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산업의 종공업화는 전적으로 외국기술에 의존했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도에 진출할 수 있었던 외국자본은 인도의 중화학공업분야에 침투함으로써 사실상 인도경제의 기간을 통제해 나갔다.

기술제휴의 실태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기술제휴에 의해 제공되는 것은 공장건설, 기계설비의 장치 등에 관한 노우하우(knowhow), 특히, 상표 등이며 기술제공을 받는 기업은 그 대가로 외화를 지불하거나 주식으로 배상해주는 형태를 취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외환사정의 악화로 인해 후자의 배상형태가 장려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업경영의 주도권을 서서히 상실해 나갔다.

물론 기술제공을 받는 기업은 반드시 인도인의 기업만은 아니었으며, 많은 경우 외자계 자회사도 있었으며, 외자가 큰 비중을 점하는 기업도 있었다. 전술한 1051건의 계약에서, 144건은 완전한 외자계 자회사(주식 자본의 반 이상이 외국자본인 경우)였으며, 외자가 과반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참가하고 있는 회사는 445건에 달했다.

한편 기술제공 형태에서, 외국 상표의 사용은 특정기술의 제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유명한 상표의 사용 그 자체만으로도 기업의 판매량이 많이 증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외국 상표도입이 성행하게 되었다. 1965년 현재, 1051건의 기술제휴 계약을 하고 있는 656개 회사중, 약 1/3에 해당하는 231개 기업이 외국 상표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국민경제의 손실이며 인도 기업의 기술제휴에서 나타나는 대외종속적 성격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伊藤正二, 1972:133-4).

한편, 기술제공을 받는 기업을 외국자본의 자회사, 외자 참가회사, 기술제휴회사로 나누어서 기술도입건수의 구성을 보면, 1950년대와 1960년 간에 큰 차이점이 발견된다. 즉, 50년대에는 3자의 비중이 거의 같았지만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자회사의 설립에 대한 일정한 제한정책의 영향으로 외자참가회사 및 기술제휴회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미국, 서독, 일본 등과의 기술제휴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자본과의 기술제휴기업은 인도 공업구성의 고도화를 선도하게 되었다. 기술제휴회사의 공업제품 판매액은 1960년의 약 29억 루피에서 65년의 60억 루피로, 약 2.1배 가량이나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인도기업 평균 판매액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무릇 기업에 있어 외국 기술도입의 목적은 고이윤, 고축적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은 인도기업의 경우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인도 기술제휴기업의 총투자자본에 대한 이율율은 1960년에 11.8%, 1963년에 12.0%였는데, 이것은 인도의 주요 주식회사 1,100개사의 평균이유률을 2% 정도 상회하는 높은 비율이다. 외국자본과의 기술제휴는 생산의 증대와 축적의 증대를 가져다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원료나 부품 수

임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인도의 무역수지를 급격히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기술제휴기업의 생산물 수출도 절대액으로는 늘어나고 있지만 그 생산액에서 점하는 비중은 60년대 이후부터 계속 저하되고 있다. 또한 생산의 증대와 더불어 원료부품의 수입도 증대되고 수입초과현상이 만연되었다. 이와 같이 인도기업에서 기술제휴의 존재 양식은 한편으로는 독점재벌의 축적 증대를 가져 오는 반면 대외적으로는 부단한 외화의 부족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더욱기 기술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기술사용료(loyalty)지불이 56년의 7,700만 루피에서 66년의 2억 5100만 루피로 급증함에 따라 국제수지는 더욱 악화되었다(Gupta, 1969:87-94).

결국 인도 자본주의의 발전은 국가권력의 타협적 성격때문에 50년대 말 이후 대외종속의 경향을 강화해 갔다. 인도 자본주의 발전의 이러한 경향에서 사적 자본주의 부분에 대한 국가부문 지위의 약화라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이병천, 1977:103-22). 인도 국가부문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확립하지 못했으며 그 축적의 기초는 극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인도경제에서 주도적인 힘은 사적 자본이며 특히 독점재벌이라고 할 수 있다.

VI. 마무리

이제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특유의 혼탁 공동체가 뿐리 깊이 잔존하는 특이한 인도 봉건사회는 그 태내에 자본주의적 맹아를 배태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자생적으로 개화되지 못하고 영국의 정복에 의해 식민지 사회로 전락되어, 과행적 형태의 본원적 축적 과정이 강요되었다. 그리고 영국에 의해 자본주의적 발전이 억압되고 낡은 사회관계가 유지, 재편되는 속에서 새래적 생산 형태는 계속 잔존하는 전형적 식민지사회의 형성 과정을 밟아 왔다.

영국의 지배가 인도 사회에 던진 충격은 3세기 동안 일정 불변한 하나의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1750년부터 1850년 사이에 걸쳐 나타났다. 18세기 중엽까지 영국인은 동인도회사를 중심으로 상업과 야탈에 종사했으며 직접 지배 지역은 인도의 일부 지역에 지나지 않았다. 영국의 인도 식민지배는 영국이 중상주의 단계에서 산업자본주의 단계로 이행함에 대응해서 변화해 갔으며, 세포이 혁명 종식을 계기로 영령 인도의 외연적 확대를 일단락 짓고, 동인도회사 대신 영국 정부의 직접 통치에 의해 정치적 지배체제를 완성함과 동시 경제적으로는 인도를 종전의 영국공업제품에 대한 시장으로서의 역할 외에 공업 원료, 식량의 공급지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 이로써 보다 강도 높은 정치적, 경제적 예속 하에서 전형적 식민지 인도사회가 전개되어 갔다.

이렇게 경제, 사회의 자연적 발전의 길을 저해받은 인도는 영국 산업자본의 위력에 의해 그 사회의 토대가 급격히 무너졌으며, 그 결과 “옛 세계를 잊었지만, 새로운 세계를 찾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인도는 역사적, 인위적인 상대적 후진성 속으로 몰락

했으며 그 후 진성은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위해 온존되었다. 반면 인도에 대한 식민지적 약탈은 유럽 제국에서 자본의 원시적 축적에 가장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인도로부터 앗아간 거대한 부는 유럽 특히 영국 자본주의 발전의 엔진으로서 기능했던 것이다.

인도에서 영국 관료제의 정착에 따라 상호 연관된 세 가지의 결과가 나타났다. 그것은 첫째, 토지제도 개혁과 조세제도 혁련을 통한 농업의 상업화, 둘째, 농촌 수공업의 붕괴, 세째, 영국의 지배를 벗어나려는 최초의 대규모 투쟁인 1857년의 대반란(Mutiny)이다. 이 세 가지는 근대 인도의 기본 패권을 이루어 놓았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전반에 걸쳐 영국 동인도회사는 인도에서 자민다리제, 라이아트 와리제, 마할와리제라고 하는 토지제도를 제정, 실시했다. 이러한 토지제도 개혁을 기점으로 하는 사회변동과정에서 근대 인도를 규정하는 사회구성의 틀이 형성되어 갔다. 이 같은 식민 권력에 의한 토지제도 개혁은 농민의 대규모 궁핍을 초래했으며 인도 촌락 공동체 조직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농민의 대부분은 국유지나 자민다리의 소작인으로 전락하거나 혹은 지주, 고리대 업자, 식민지 관리들에 의한 강제 노역을 감내해야 했다. 독립적이었던 공동체 사회는 붕괴되고 영국의 명령에 따라 인디고나 아편, 면화 등의 수출용 1차 생산물을 재배하는 소농민 집단으로 변했다. 토지 경작자들과 수공업자 간의 오랜 연계는 끊어져 버렸고 공동체 사회는 자급자족의 기회를 잃게 되었다.

19세기 중엽 이후 영국의 인도수탈정책에는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1850년대에 국가행정은 중앙집중화되었으며 철도건설도 시작되었다. 화폐제도도 더욱 단일화되었으며, 외환은행도 그들의 위치를 강화해 갔다. 식민지 인도에서 철도가 가져다준 영향은 '산업혁명 없는 상업혁명'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영국을 위해 '농촌'의 역할을 짊어졌던 인도는 영국 본토 경제의 도약대로서 세계자본주의에 깊이 편입되어 있었다.

농업 생산의 패턴도 자가 소비가 목적이 아닌 해외시장 판매를 주목적으로 한 상업적 농업이었고, 소위 상업 작물의 생산이 확대되었다. 이같은 상업적 농업의 형태는 인도에 대한 제국주의적 착취를 도왔고, 국내 자원의 고갈을 초래했으며 한편으로는 인도 국민의 궁핍화를 가져왔던 것이다. 토지소유권의 유동화와 농민층의 전반적 하강 분화, 분해가 진행되면서 농업 생산이 불안정하게 되고 농민 투쟁이 격화되었기 때문에 식민 정부 측에서는 농민보호법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영국에 의한 자민다리제와 라이아트와리제도 도입 후 두 번째로 시행된 농촌관계법안의 개정이었다.

양차 대전 간의 시기는 인도에서 영국 제국주의의 약화시기로 이해할 수 있다. 제국주의 국가간의 군사적 대결은 제한적이나마 인도 산업의 발전계기로 작용했다. 유럽으로부터의 수입은 줄었으며 인도의 국내시장에서 생산되는 산업생산물 수요는 급증했다. 인도는 전쟁 수요품인 황마, 텅스텐, 원목 등 원료를 생산, 판매했다. 1918년까지 인도의 군수용품 총경비는 2억 5000만 파운드에 달했다. 이같은 군수용품 수요와 일본 및 미국자본의 인도시장 진출은 인도 국내 산업 발전의 모티브가 되었다.

그러나 1920년 전시 및 전후 호황의 반동으로 빌어터친 불황은 약 2년 반에 걸쳐 인도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으며 원료, 반제품 위주의 인도 상품에 대한 해외시장 수

요 간퇴와 영국제품의 수입 증가가 루피화 시세의 하락을 초래했으며 인도 공업은 정체를 거듭했다.

한편 영국은 경영대리제도라는 독특한 체널을 통해 독점금융자본의 독특한 형태를 인도에 정착시켰다. 인도 대자본가들은 이같은 수탈구조에 쉽게 융화되었으며 무역이나 고리대업을 통해 자본을 축적한 지방 부르주아들도 경영대리제도를 큰 저항없이 수용했다. 경영대리제도는 인도의 기업가와 고리대 자본가에게 나름대로의 자본축적 기회를 제공했으며, 나아가서 이는 영국 제국주의의 직접 지배로부터 나오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무마시키는 역할을 했다.

1차 세계대전의 결과 인도에는 일부 특정산업에서 대자본가가 생겨났으며 제한적이나마 자본의 집중과 집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쟁기간 및 전쟁 후 기간에도 인도산업구조에서 근본적인 질적 전환은 없었다. 소규모생산은 계속되었고 본격적인 중화학공업의 발전은 존재하지 않았다. 산업의 식민지적 구조는 바뀌지 않았으며 제국주의는 여러가지 면에서 산업발전을 저해시켰다.

제 2차 대전 이후 제국주의국의 식민지 지배구조에도 위기가 닥쳐오고 인도 민중들의 독립투쟁 열기가 고조되어 감에 따라 영국 제국주의도 서서히 통제력을 상실해 갔다. 또한 인도의 민족해방투쟁이 사회주의적 색채를 띠어감에 따라 그 대책 마련에 부심하던 영국은 1947년 8월 15일을 기한 인도와 파키스탄 분리독립을 통해 식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

식민지 인도에서 영국의 경제 수탈은 그것을 단지 ‘부의 유출’로서 파악하기보다는 그 유출이 인도의 계급관계를 통하여 관철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노동자, 영세농민, 수공업자 등이 식민지 지배로 가장 극심한 수탈을 당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영국 제국주의와 가장 적대적 관계에 있었으며, 바로 그들 속에 인도 여러 계층의 공동된 과제인 민족해방운동의 가장 힘찬 모티브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운동의 사상적, 실천적 중심이 되어야 할 노동자 계층은 인도 자본주의 형성의 특수성에 규제되어 그 역사적 과제를 완수할 정도로 성장하지는 못한 반면,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 제국주의 와의 모순을 피할 수 없었던 부르주아지가 먼저 민족운동 추진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던 것이다(近藤 治, 1972:43).

독립후 회의파정권의 주요과제는 인도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재편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되었다. 그것의 결정적인 방향은 1948년 ‘산업정책결의’에 나타나고 있다. 이 ‘결의’는 외국자본 및 국내독점자본의 존재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 국가의 경제활동에 대한 개입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인도 국가권력의 타협적 성격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1948년 산업정책결의에 따라 1950년 계획위원회가 성립되고 동 ‘결의’의 노선에 따라서 1차 5개년계획이 실시되었다. 1차 계획의 목적은 전체적으로 경제의 안정과 과도기의 수습에 있었다. 토지개혁의 철저한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농업생산 부문에 박대한 경비지출이 수행되었다. 1차 5개년 계획실시의 결과 과도기의 혼란 극복에 비교적 성공했으며 경제 활동의 일반적 수준은 상승했다. 이것은 농업생산의 증대, 한

국전쟁으로 유발된 전시수요의 확대가 그 주요한 원인이었다. 1차 계획기를 통해서 인도정부는 농업생산, 국제수지, 인플레 등의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과를 얻게 되었으며, 아울러 부르주아의 지위도 강화되었다. 1차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 결과에 고무된 인도 정부는 곧이어 1956년 4월 제 2차 경제계획(1956.4 - 1961.3)의 시작과 동시에 중화학공업에 의해 주도되는 자본주의적 국민경제의 형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정부는 1948년의 산업정책결의에 대신해서, 새로운 '1956년 산업정책 결의'(Industrial Policy Resolution of 1956)를 발표했다. 20조로 된 본 결의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점은 우선 '사회주의형 사회'의 진실을 목표로 공공부문의 전면적 확대를 결의했다는 점과, 둘째로는 48년 결의에서 사기업의 국유화에 관해 10년 후 재고한다는 점에 관련한 조치였다.

2차, 3차계획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된 중공업화의 결과 철강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문에 급속한 중공업적 발전을 가져왔다: 또한 자본의 집중에 의한 독점자본의 강대화를 가져왔으며, 대자본과 중소자본의 모순이 격화되었다. 외화사정도 매년 악화되었으며, 수입제한에 의한 외화부족의 완화대책도 한계에 달했다. 이로 인한 수입원자재 부족이 공업생산을 저해하게 되었다. 외국원조도 달려위기의 진행과 함께 서서히 줄어들게 되었으며, 특히 미국원조의 조건이 악화되고 나서부터 상황은 더욱 나빠지게 되었다.

한편 식민지시대의 기형적인 발전경험을 통해 이미 상당한 독점을 이루었던 인도의 대기업 자본가들은 독립 후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국가자본주의적 정책기구를 통해 고도의 독점을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 독립 직후 인도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국가부문의 창출, 부와 소득의 불평등 해소, 경제력 집중 배제에 대한 정책선언에도 불구하고 역시 인도 경제전체를 움직이는 주도적인 힘은 사적 자본주의 부문이었으며 그것은 소수의 독점자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었다.

인도의 독점재벌의 급속한 경제력 집중은 인도경제의 독자적 발전에 좋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소수 독점자본의 집요한 이윤추구는 국가부문 경제의 원활한 수행을 저지했으며 국가의 외화위기를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협소한 농촌시장과 극소수 도시 중간층 소비자층의 증대에 힘입어 소비재산업이 기형적으로 발전되었으며, 이는 또한 수입수요를 자극하여 국제수지는 계속 악화되었다. 이러한 독점재벌들의 경제력집중 강화로 인한 여러가지 부작용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국민의 불신이 증폭해서 국민회의파의 정치적 입지가 어렵게 되자, 인디라 간디 수상에 의한 일련의 재벌규제대책이 마련되었으나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독립 후 독점재벌의 팽창과 더불어 급속히 진행된 인도 독점자본과 외국자본의 결합은 자본 및 기술면에서 외국자본의 지배를 더욱 강화시켰다. 또한 앞에서 보았듯이 외국원조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는 사적 자본 진출을 피하는 것이었으며, 각국의 원조금 중과 더불어 외국자본의 대 인도진출이 급속히 팽창되었다.

외국 독점자본은 인도의 정치적 독립 후에도 여전히 그 사회경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그 의의는 더욱 증대하고 있다. 전후 사회주의 세계체제의 성립과 구식민지체제의 붕괴에 직면하여 심각한 시장문제를 안게 된 선진독점자본은 경제원조를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의 후원을 받으면서, 관세장벽내에서 현지법인의 설립을

통하여 자본의 논리를 관철시켰다. 전후 선진독점자본의 인도 침투는 특히 1957년 이후 주로 기술집약적인 중화학공업부문을 중심으로 하여 자회사의 설립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선진독점자본은 인도내에서 인도자본과 동등한 지위의 보장, 제국주의국의 적극적인 원조 하에서 전횡적으로 인도산업을 지배하고 있다. 그것은 간접적으로 인도내의 대리인을 이용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료기구내에 대표자를 파견함으로써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독점자본의 기술수출은 상품 자본수출의 연장과 다름없으며 그것은 고도로 발달한 선진기술을 기초로 한 독점자본 지배의 변형된 형태로 되고 있다. 선진독점자본의 엄격한 기술지배체제는 인도의 선진기술 흡수에 기본적인 한계를 부여하고 있다. 선진독점자본에 의한 인도 경제의 수탈은 인도에서 제국주의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부의 유출현상에서 가장 잘나타나고 있으며 인도 독점자본은 주로 외자체육의 형태로 선진독점자본과 협력종속되면서 인도의 자립적 발전보다는 외국자본과 그 동맹관계를 깊게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외 독점자본은 자본주의적 제관계의 유지 확대에 그 기본적인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이병천, 1977:219-20).

이상에서 우리는 17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영국의 식민정책 전개과정에 조응한 인도 경제 사회의 동태 분석 및 독립 후 1960년대까지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공업화과정에서 야기된 사회 경제 구조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우리는 이 글을 통해 영국자본주의의 발전단계에 따라 타율적인 변화과정을 겪어온 식민지 인도의 상황을 추적해 보고 독립 후 부르주아 회의과 권력이 추구해온 '사회주의형 사회' 건설의 허구성과 외국자본에 의한 국가경제 자립성의 약화 및 이에 편승한 소수 독점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가져온 사회 경제적 모순을 구명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필자들의 능력부족과 시간 및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해방 후 토지개혁과 이의 실패에 따른 농민운동의 전개, 그리고 농업생산력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온 녹색혁명의 전개와 이에 따른 농촌 구조의 변화, 노동자계급의 생성 및 조직화과정 등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생략되어 있다. 이런 점들이 본 연구가 가지는 중요한 한계이며 바로 우리들의 당면 연구과제이기도 하다.

〈참 고 문 헌〉

이병천

1977 「자개발국 경제발전과 국가자본주의」,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Agarwal, S.N.

1944 *The Gandhian Plan of Economic Development for India*. Bombay.

Baden-Powell, B.H.

1892 *The Land-Systems of British India*, I. London: Oxford.

Bagchi, A.K.

1972 *Private Investment in India, 1900-39*. London.

- Banerjee, B.N., G.D.Parikh and V.M.Takunde,
 1944 *People's Plan for Economic Development of India*. Delhi.
- Bettelheim, C.
 1968 *India Independent*. New Delhi:Khosla & Co.
- Bhatia, B.M.
 1967 *Famines in India: A study in some aspects of the Economic History of India; 1860-1965*. Bombay
- Bose, A
 1965 "Foreign Capital", V.B.Singh, *Economic History of India;1857-1956*. Bombay.
- Chandra, B
 1969 *The Rise and Growth of economic Nationalism in India; Economic Policies of Indian Leadership, 1880-1905*. New Delhi.
- Chandra, N.K.
 1982(a) "Long-term Stagnation in the Indian Economy, 1900-75,"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17(14):14-16.
- 1977(b) "Monopoly Legislation 80 and Policy in India,"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8)33 Special Number.
- Chaudhuri, K.N.
 1982 "Foreign Trade Balance of Payments, 1757-1947," D Kumar(ed)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India*. Vol 2 : C 1757-1970, London.
- Cohn, B.S.
 1960 "The Initial British Impact on India," *Journal of Asian Studies*, 14(4).
- Datta, B.
 1970 "Growth of Industrial Houses," *Mainstream*, II July.
- Dutt, R.P.
 1970 *India Today*. Calcutta.
- Dutt, C.R.
 1990 *The Economic History of India*, (reprint). Delhi: Low Price Publications, Gadgil, D.R.
- 1924 *The Industrial Evolution of India in Recent Times*. Madras:Humphery Miford.
- Ghose, A.
 1974 "Joint Sector and 'Control' of Indian Monopoly,"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8 Junc.
- Government of India
 1947 *Second Census Manufacturers of India*. New Delhi
 1951-1969 *Economic Survey, Various Issues*. New Delhi.
 1953 *Indian Railways One Hundred Years,1853 to 1953*. New Delhi.

- 1956 *Second Five Year Plan*, 1956-61. New Delhi.
- 1956 *Statistical Abstract*, 1953-54. New Delhi.
- 1968 *External Assistance*; 1966-67. Faridabad.
- 1973 *Statistical Outline of India*, 1972-73. New Delhi.
- 1976 *Annual Report on the Working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Undertakings of the Central Government*, 1974-75. vol 1. New Delhi.
- Grodko, N.D.
- 1970 "From the History of India's National Debt," *Scientific Records of the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Moscow, vol 12.
- Gupta, J.N.
- 1969 *Directory of Foreign Collaboration in India*. New Delhi.
- Habib, I.
- 1963 *The Agrarian System of Mogul India 1556-1707*. London.
- Hazari, R.K.
- 1966 *The Structure of the Corporate Private Sector*, Bombay.
- Hurd, J.M.
- 1982 "Railways," D.Kumar, ed,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India*. Vol 2: C 1757~1970, London.
- Industrial Licensing Policy Inquiry Committee
- 1969 *Report of the Industrial Licensing Policy Inquiry Committee(Main Report)*. New Delhi.
- Kabra, K.N.
- 1973 "Joint Sector Concept: Evolution and Evaluation-II," *Mainstream*, 24 March.
- Levkovsky, A.I.
- 1966 "Beginning of Mass Liberation Struggle: The Swadeshi Movement," I.M.Reisener , N.M.Goldberg,(ed) *Tilak and the Struggle for Indian Freedom*. New Delhi.
- Mehta, M.M.
- 1952 *Combination Movement in Indian Industry*. Allahabad.
- Melmen, S.
- 1963 *Foreign Monopoly Capital in Indian Economy*. New Delhi.
- Maddison, A.
- 1971 *Class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India and Pakistan since the Moghuls*. London.
- Mahalanobis, P.C.
- 1955 The Approach of Operational Research to planning in India, *Sankhya*, 16(1, 2)
- Marx, K
- 1978 "India," Marx & Engels, *On Colonialism*, Moscow: Progress Publishers.

- 1978 "The British Rule in India," Marx & Engels, *On Colonialism*, Moscow: Progress Publishers.
- 1978 "The Future Results of the British Rule in India," Marx & Engels, *On Colonialism*, Moscow: Progress Publishers.
- 1990 *Capital*. 김수행 역, 『자본론』. 서울: 비봉출판사.
- Medovoy, A.I.
- 1984 *The Indian Economy*, Moscow: Progress Publishers.
- Moore, B.Jr.
- 1987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N.Y.: Penguin books.
- Morris, M.D., H.R.Luce
- 1990 "The Growth of Large Scale Industry to 1947," D.Kumar(ed)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India*, New Delhi:Orient Longman O'Malley, I.S.S.
- 1935 *Popular Hinduism*. Cambridge.
- Oza, A.N.,
- 1973 "Futility of the Monopolies Commission,"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6 January.
- 1973 "Curbing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A Critique of the New Licensing Policy,"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21 April.
- Panikkar, K.M.
- 1954 *A Survey of Indian History*. Bombay: Asia Publishing House.
- Paranjape, H.K.
- 1973 "Joint Sector and the Boa-Constrictor," *Mainstream*, 10 November.
- Patel, S.J.
- 1952 *Agricultural labourers in Modern India and Pakistan*. Bombay.
- Patil, P.H.
- 1977 "Joint Sector: Assessment of SIDCs' Role,"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9 Jan.
- Pavlov, V.I.
- 1979 *Historical Premises for India's Transition to Capitalism - Late 18th to Mid-19th Century*. Central Department of Oriental Literature, Moscow:Nauka Publishing House.
- Patil, P.H.
- 1977 "Joint Sector: Assessment of SIDCs' Role,"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9 Jan.
- Ray, R.K.
- 1979 *Industrialization in India;Growth and Conflict in the Private Corporate Sector; 1914-47*, Delhi
- Reserve Bank of India
- 1974, 1975, 1976 *Report on Currency and Finance*. New Delhi.
- 1970 *History of The Reserve Bank of India 1935-1951*. New Delhi.

Rothermund, D

1978 *Government, Landlord and Peasant in India : Agrarian Relations under British Rule, 1865-1935*. Wiesbaden.

Roy, A.

1953 *Indian Monopoly Capital*. Calcutta.

Rungta, R.S.

1970 *The Rise of Business Corporations in India 1851-1900*. London.

Sen, M.

1972 "Mixed Economy and Joint Sector," *Mainstream*, 2 December, Sengupta,N.K.

1974 *Corporate Management in India*. Delhi.

Shetty, S.L.

1978 "Structural Retrogression in the Indian Economy since Mid Sixtie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13(6, 7), Annual Number.

Sivasubramonian, S.

1977 "Income from the Secondary Sector in India, 1900-47," *The Indian Economic and Social History Review*, 14(4).

Tata Economic Consultancy Services,

1976 "Industrial Licensing Policy ; A Report Prepared by Tata Economic Consultancy Services," Popular Prakashan, Bombay.

Thakurdas, J.R.D.Tata, G.D.Birla, A.Dalal, ShriRam, K.Lalbhai, A.D.Shroff, J.Matthai

1944 *A Plan of Economic Development of India*. Delhi.

Tomlinson ,B.R.

1975 "India and the British Empire, 1880-1935," *The Indian Economic and Social History Review*, 12(4).

1979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aj, 1914-1947; The Economics of Decolonization in India*, Macmillan. Delhi.

Velayudham, T.K.

1976 "Convertible Debenture," *Reserve Bank of India Bulletin*. January.

アジア経済研究所

1966 『インドの企業 I』. 東京: アジア経済研究所.

近藤 治(Konto Osamu)

1972 "インド資本主義形成の特質", 中村平治 編, 『インド 現代史の展望』. 東京: 青木書店

金田近二(Kaneda Kinji)

1960 『インドの經營代理制度』. 東京: アジア経済研究所.

大杉一雄(Oosugi Kazuo)

1968 『インド-經濟と投資環境』. 東京: アジア経済研究所.

西口章雄(Nishiguchi)

1982『發展途上國經濟論- インドの國家資本主義 と 國民經濟形成』, 世界思想社.

西口章雄, 兵口恒夫編,(Nishiguchi Akio, Hamaguchi Tsuneo)

1990『インド經濟』, 世界思想社.

小谷汪之(Odani Oji)

1977 “近代インドにおける農民層分解と地主的土地所有,”『アジア經濟』, 18-1, 東京: アジア經濟研究所.

1979『マルクスとアジア的生産様式論争批判』, 東京: 青木書店.

小池賢治(Koike Kenji)

1979『經營代理制度論』, 東京: アジア經濟研究所.

松井 透(Matsui Tooru)

1974 “イギリス帝國主義とインド社會-鐵道建設を 焦點にして,”『岩波講座 世界歴史』, 22卷, 東京: 岩波書店.

伊藤正二(Ito Shoji)

1972 “獨立後 獨占資本の發展と經濟的從屬,” 中村平治(Nakamura Heiji)編,『インド 現代史の展望』, 青木書店.

1983『インド』, 伊藤正二編,『發展途上國の財閥』, 東京: アジア經濟研究所.

中村 哲(Nakamura Satoru)

1991『世界資本主義과 移行의 理論 - 東 아시아를 中心으로-』, 安秉直譯, 서울: 비봉 출판사.

芝原拓自(Shibahara Takuji)

1972『所有と生産様式の歴史理論』, 김홍식, 이영훈역, 서울:비봉출판사.

Colonization of India and Socio-Economic Changes after Independence

Jongsoo Park · Yonghwan Kim · Jwaheum Baek · Sangjin Rhee

Britain's rapid industrial development at the end of the 18th century strengthened the economic and political position of the industrial bourgeoisie. This new period in the history of British capitalism, which pushed the interest of the industrial bourgeoisie into the forefront, changed the approach to the colonial exploitation of India. The East India Company needed India chiefly as a source of cheap goods and other riches usually acquired through plunder. The industrial bourgeoisie was faced with the problem of turning India into a market for Britain's industrial output and a source of raw materials for industry.

What new elements in the system of the colonial exploitation of the peoples of India were introduced by industrial capital? The policy of trade plunder was augmented by the export of cheap industrial goods from Britain, which had a truly catastrophic effect on the Indian economy and society. India was gradually being turned into supplier of raw materials for Britain, and this process completed the final subjugation of the country to the power of industrial capital. By making India the market for their industrial goods, the colonialists undermined the organic ties between the crafts and agriculture which had existed in the communities. In this background, this paper highlights the socio-economic changes of India under the British colonial rule and modern India after independence.

박종수,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소 : (660-701) 경남 진주시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Tel : 0591-751-5744(O), 0591-746-8634(H)

Fax : 0591-54-6395

김용환, 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주소 : (609-735) 부산진구 부산대학교 철학과

Tel : 051-510-1514(O)

백좌홍, 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

주소 : (660-701) 경남 진주시 경상대학교 법학과

Tel : 0591-751-5534(O)

이상진,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소 : (660-701) 경남 진주시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Tel : 0591-751-5784(O)